

1997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 11. 18

[축산업 구조개선]

총6권중 제4권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시책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7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7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AFFIS를 통하여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정보센터(전화 02-589-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특징	5
3. 보완사항	6
4. 해설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자율사업	16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5장 보칙	25
[별표]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도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29
3. 주요골자	30
4. 해설	31
III. 시책안내	43
1. 42조원 지원계획	45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47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49
4. 농림사업 평가제도	56
[참고자료]	57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877호)	59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75호)	104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17
1. 영농규모적정화(자율)	119
2. 농약안전사용장비보급(자율)	150
3. 토양개량사업(자율)	158
(토양개량제공급, 객토)	
4. 감자원종망실재배농가지원*(자율)	179
5. 발기반정비(공공)	187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03
7. 일반경지정리(공공)	218
8. 배수개선(공공)	226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48
(농조수리시설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농조저수지건설)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297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25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347
13.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366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38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지하수개발, 지표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한우쌍자생산, 개량물꼬보급, 지역특화작목개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476
16. 농지정보화(공공)	493
17.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지원*(공공)	497
18.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공공)	502
II. 농업기계화	509
19.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511
20.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자율)	576
21. 농기계보관창고설치(자율)	596
22. 농기계사후관리(공공)	606
23.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지원(공공)	627
24.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공공)	635
III. 생산및유통개선	639
25. 미곡종합처리장(자율)	641
26. 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667
27. 직접지불제실시(공공)	675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77
28. 부적지감귤과원정비(자율)	679
29.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공공)	686
30. 한국자생란보존육성(공공)	690
31. 버섯종균집종원생산보급시설(공공)	692
32. 화훼계열화(공공)	699
II. 생산및유통개선	703
33. 과실생산유통(자율)	705
34. 시설채소생산유통(자율)	723
35. 양념채소생산유통(자율)	746
36. 고랭지채소생산유통(자율)	759
37. 화훼작물생산유통(자율)	770
38. 특용작물생산유통(자율)	791
39. 인삼생산지원(자율)	808
40. 농산물규격출하(자율)	824
41.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자율)	834
42. 과수대표생산(자율)	850
43. 인삼종합처리장(공공)	859
44.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공)	866
45.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883
46. 꽃박람회개최(공공)	896
4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897
48.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903
49.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907
50.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20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수출활성화사업, 수출홍보사업, 해외시장정보조사)	
51.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설(공공)	947
52.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952
53. 농산물물류센터건설(공공)	955
54. 농산물포장센터건설(공공)	969
55. 생산자단체출하조절(공공)	989
56. 공동규격출하지원(공공)	994
57. 출하촉진자금(공공)	1008
58.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1013
59.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1018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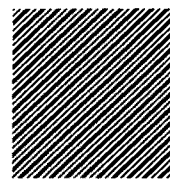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1025
60. 한우경쟁력강화(자율)	1027
61. 젓소경쟁력강화(자율)	1041
62. 돼지경쟁력강화(자율)	1051
63. 닭경쟁력강화(자율)	1061
64. 기타가축육성(자율)	1072
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율)	1081
66.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	1099
67. 축산단지조성(공공)	1129
68. 가축계열화(공공)	1140
II. 생산및유통개선	1163
69.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공공)	1165
70. 도축도매시설개선(공공)	1176
(축산물공판장건설, 위생도축시설확충)	
71. 가공판매시설및운영(공공)	1188
(가공직판장설치, 계란가공시설, 한우전문판매점설치,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	
72. 축산물품질향상및안전성강화(공공)	1223
(돼지고기품질개선, 규격돈구매자금, 축산물등급판정,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폐사축위생처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 한우고급육생산기술개발, 재래닭품질육용화, 가축개량전산망구축)	
73.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1325
74.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1334
(경영상담지도, 양축농가해외연수, 축사표준설계도개발보급, 축산자조금, 특수가축 공제시범사업, 가축박람회, 교육홍보사업, 축분처리용膨軟왕겨생산시설)	
75.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1369
76. 사료제조시설설치(공공)	1373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음식찌꺼기사료화시설)	
77.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1385
78. 학교우유급식(공공)	1391
79. 사료원료수입(공공)	1397
80. 조사사업(공공)	1401
(축산물가격및유통현황조사, 축산관측, 축산물생산조사)	
III. 소득원개발	1411
81. 축산경영자금(공공)	1413
IV. 가축개량	1417
82. 소정액생산및공급(공공)	1419
(한우개량단지운영, 한우정액생산공급, 젓소정액생산공급, 가축개량신기술보급, 가축인공수정사업)	
83. 종축등록및검정(공공)	1458
(종축등록, 젓소산유능력검정, 돼지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가축개량협의회운영)	
84. 전문종돈업육성(공공)	1476
V. 기타사업	1485
85. 수의기술교육관건립(공공)	1487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1489
86.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율)	1491
87. 농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1501
II. 기술개발및정보화	1559
88.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자율)	1561
89.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568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90. 농림수산정보화(공공)	1581
91.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1585
92. 기술지도사업*(공공)	1595
(새기술보급및환경보전농업시범사업,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농업학습단체육성및품목별전문교육)	
III. 인력육성	1627
93.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629
94. 전업농육성(자율)	1664
95. 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율)	1697
96. 농업인자녀학자금(공공)	1714
97.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공공)	1726
98. 자영농고육성(공공)	1733
99.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	1736
100.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공공)	1739
IV. 소득원개발	1743
10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745
102. 농촌특산단지육성(자율)	1810
103. 농공단지육성(공공)	1843
104. 농촌특산품판매장설치(공공)	1859
105. 한계농지정비(공공)	1867
106. 농업경영자금(공공)	1883
V. 생활환경개선	1889
107. 식생활개선교육홍보(공공)	1891
10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895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설치)1951	
109. 농촌생활용수개발(공공)	1951
VI. 기타사업	1981
110. 농업인의날행사지원(공공)	1983

제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985
111. 산림경영장비지원(차출)	1987
11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993
113. 임도시설(공공)	1997
114. 영림계획(공공)	2001
115.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2005
116.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2010
117. 임업기술보급(공공)	2012
(임업기술지도, 임업기술개발지원)	
II. 생산및유통개선	2021
118. 임목생산(차출)	2023
119. 임산소득증대(차출)	2028
(표고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 단기소득임산물생산)	
120. 임산물가공지원(차출)	2047
(임산물이용가공원자재구입,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산지가공공장설치, 평이용가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121. 표고종균생산시설(공공)	2067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070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간벌재활용장비, 임산물유통시설설치)	
123.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2086
III. 인력육성	2093
124.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차출)	2095
125.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2104
(임업기능인훈련, 임업기능인영림단장비지원)	
126.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116
IV. 환경임업육성	2121
12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123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건립및수목원조성)	
128. 산불방지대책(공공)	2130
129. 사방사업(공공)	2134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2138
(산림환경관리, 산림입지조사, 야생조수보호)	
131. 산촌종합개발(공공)	2150
V. 산림자원조성	2157
132. 해외조림사업(차출)	2159
133. 산림조성(공공)	2167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사업, 조림용묘목생산)	
134. 산림병해충방제(공공)	2199



I. 사 육 기 반 확 충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

2. 추진방향

- 전업농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확보
 - 기존축사의 개보수나 이전사업과 풀사료 확보농가에 우선지원
- 번식우 일관사육농가 위주로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기반 확충
- 한우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육성으로 규모화·브랜드화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7,000	7,478	3,636	900	500	2,000
		백만원					
사 업 비	계	802,151	408,307	99,744	56,300	28,600	100,000
	보 조	28,575	24,155	4,420	-	-	-
	용 자	533,308	264,438	62,998	39,412	20,000	70,000
	지방비	14,374	12,150	2,224	-	-	-
	자부담	225,894	107,564	30,102	16,888	8,600	30,0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한우사육농가,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협업체, 축협조합
- 지원규모 : 사업비의 소액분산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지원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개인당 3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사업
 - 기반시설 : 진입로·목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등
 - 사육시설 : 축사·관리사·창고 및 부대시설, 축사부지정리등
 - 사육장비 : 가축수송차량, 우형기, 연막소독기, 그늘막, 거세기 등
- ※ [별표1]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적용
- ※ 부지구입비·가축구입비는 지원사업에서 제외

나. '97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비 계	음 자 (농특회계)	자부담
○ 한우경쟁력강화사업	56,300	39,412	16,888

- 지원조건
 - 재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융자기간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금리 : 연리 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0-2691~2)
- 시·도 : 축산과, 농정과(축정계)
- 시·군 : 축산과·농산과(축산계)

다. '97 지원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사업 및 자격요건>

-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등 기반시설, 사육장비, 관리사, 창고, 부대시설 (신규 축사시설 설치지원 제외)
- 기존 축사시설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시설을 개체(건축법에 의한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여 현대화·자동화하는 사업,
- 기 확보된 조사료생산기반에서 생산된 풀사료로 현재 사육하는 한우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할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설치하는 사업
-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공통요건)

<우선순위 : 개별농가>

- 1순위 : 사육두수가 30두이상 50두미만인 자
- 2순위 : 사육두수가 50두이상인 300두 미만인 자
- 3순위 : 사육두수가 30두미만인자

※ 동일순위에서는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농가, 번식우사육농가, 일관사육농가, 사육경력이 오래된 농가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 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협업체>

- 1순위 : 운영실적이 5년이상
- 2순위 : 운영실적이 3년이상
- 3순위 : 운영실적이 2년이상

※ 조합 또는 법인, 협업체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적용)를 적용 함

○ 사업대상자 확정

- '97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사업대상자중 상기 요건을 갖춘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확정('97.1.10까지)

라. 사업시행

① 사업계획 수립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
- 시·군에서는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대상농가에게 통지
- 사업당년 1월말부터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②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등으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예산범위내에서는 시장, 군수의 승인으로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사업변경
-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득함
- 시·군 및 시·도의 조정 변경내용은 직 상위급 기관에 보고

③ 사업비 지원방법

- 시·도지사는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사업자금을 시·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된 대상자 및 지원 우선순위와 지역별 축산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재배정
 -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축산분과위)에서 정한 대상자 및 지원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 추진
 - 특히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대상자에게 소액 분산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추진
 - 시·도지사는 시·군이 사업자별 지원우선순위의 이행 및 소액분산지원여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 자금지원은 관계규정, 축협여신규정 및 공동지침등에 의거 집행
- ※ [붙임 1] 시도별 예산배정 내역 참조

④ 기타

- 대구·경북 재정지정리 지역은 '97년사업부터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읍자로 전환기로 하였으므로 '98예산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
 - '98년 : 보조부분의 1/2을 읍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의 전액을 읍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마.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의 한우시책 및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축협 및 지도기관(축산기술연구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 고급육생산 사양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축사 등 사육환경의 다양한 모델개발 보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양관리기술, 전산입력대상 소에 대한 계획교배 및 경영개선 지도등 실시
 - 특히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귀표를 정착하고 전산입력된 해당소에 대하여 전산등록증을 발급하여 계획교배지도 및 고급육생산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사업신청서에 “소전산화사업 참여 여부” 기입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군에서는 현장 점검하여 기록장부와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에 통보, 읍·면사무소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비 지출
- 시·도(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원자금을 시설 및 장비설치에 이용하지 않고 소 입식성 자금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전·유용등 타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이외에 사후관리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 및 「농림사업평가규정」을 동시에 적용함

나. 보고·기타

- 사업계획·대상자 확정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
 - 대상자 선정보고 : 시·도에서는 '97.1.31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 시·도에서는 '97상반기 추진실적을 7.31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 [붙임 2] 사업추진실적 보고양식 참조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시·도에서는 '97.12.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98.1.10까지) : [붙임 2]

6. '98년도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장 및 시장·군수

- 읍·면 : 산업계
- 시·군 : 축산과(산업과)

나. 지원대상사업 및 신청자격

<개별농가>

-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등 기반시설, 사육장비, 관리사, 창고, 부대시설 (신규 축사시설 설치지원 제외)
- 기존 축사시설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시설을 개체(건축법에 의한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여 현대화·자동화하는 사업
- 확보된 조사료생산기반에서 생산된 풀사료로 현재 사육하는 한우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할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설치하는 사업
- 3년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공통요건)

<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협업체>

- 아래의 자격을 갖춘 단체로서 위 개별농가와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 축협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 한우영농조합법인 :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한우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5인이상의 한우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모임

다. 우선순위

<개별농가>

- 1순위 : 사육두수가 30두이상 50두미만인 자
- 2순위 : 사육두수가 50두이상 300두미만인 자
- 3순위 : 사육두수가 30두미만인 자
- ※ 동일순위에서는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농가, 번식우사육농가, 일관사육농가, 사육경력이 오래된 농가순으로 지원

<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협업체>

- 1순위 : 운영실적이 5년이상
- 2순위 : 운영실적이 3년이상
- 3순위 : 운영실적이 2년이상
- ※ 조합 또는 법인, 협업체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 사육두수 적용)를 적용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자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장 발행 자가 사육증명서 포함)
 - 필요시 대출신청자료,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서류등 시·군에서 사업희망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

마. 신청절차

- 농림사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읍·면장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 농림업실시규정 [별지 3호서식] 참조

바. 기타사항

- '97사업추진 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에 “소 전산화사업 참여 여부”를 기입

[별표 1]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사 업 별		지원비율(%)		지 원 단 가
		읍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진입로 개설	70	30	km당 100백만원, 선별적으로 지원(노폭 4m, 포장 3m) km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km당 5,500천원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사 육 시 설	축사	70	30	평당 30만원(두당 3평) -지붕개폐식은 평당 40만원 평당 30만원 평당 10만원
	부지정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운동장비가림시설			
사 육 장 비	가축수송차량	70	30	
	우형기			
	전자식저울			
	연막소독기			
	툽밥발효기			
	그늘막			
	거세기			

- 주) 1. 지원단가는 상한단가이며 상한단가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2.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대체 입식비(읍자 70%) 지원가능
 3. 전력인입은 한전실비 적용 가능

[붙임 1]

시·도별 예산배정내역

(백만원)

	계	용 자	자 담	비 고
계	56,300	39,412	16,888	
부 산 시	206	138	68	
대 구 시	446	311	135	
인 천 시	229	161	68	
광 주 시	213	145	68	
대 전 시	166	115	51	
경 기 도	3,600	2,519	1,081	
강 원 도	6,021	4,214	1,807	
충청북도	3,362	2,349	1,013	
충청남도	8,280	5,797	2,483	
전라북도	4,851	3,399	1,452	
전라남도	7,451	5,222	2,229	
경상북도	7,564	5,301	2,263	
경상남도	8,369	5,853	2,516	
제주도	5,542	3,888	1,654	

[붙임 2]

사업추진실적 보고 양식

1.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사업대상자 개소수(농가수)	지 원 계 획 (실적)		
		합 계	응 자	자부담

주) 1. 사업대상자란은 개소수를 표시하되()내서는 농가수를 기재

2. 농가수는 법인 및 협업체에 속한 개별농가와 축협은 1개소를 1농가로 하여 기재

2. 사업대상자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대상자 개소수 (농가수)	번 식 우 규 모 별	지 원 계 획 (실적)		
			합 계	응 자	자부담
개별농가		50두~300두 30~50두 30두 미만 소 계			
영농법인		50두~300두 30~50두 30두 미만 소 계			
협 업체		50두~300두 30~50두 30두 미만 소 계			
축협조합		50두~300두 30~50두 30두 미만 소 계			
합 계		50두~300두 30~50두 30두 미만 소 계			

3.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자 ()	사업량	지원계획 (실적)		
			합계	음자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소계) <li style="padding-left: 20px;">진입로 <li style="padding-left: 20px;">- <li style="padding-left: 20px;">-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시설 (소계) <li style="padding-left: 20px;">축사 <li style="padding-left: 20px;">- <li style="padding-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장비 (소계) <li style="padding-left: 20px;">가축수송차량 <li style="padding-left: 20px;">- <li style="padding-left: 20px;">- 					
○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농가 ○ 영농조합 ○ 협업체 ○ 축협조합 ○ 합계 					

- 주) 1. 사업대상자란()내서는 사업별로 중복지원한 개소수 또는 농가수를 기재
 2. 세부사업별 단위사업은 실시요령에 의한 사업별 구분 작성

4. 사업별 및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실적)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 대상 자	대표 자 (호수)	년령	사육 경력	사육규모		사육 장 규모	자본 액	사업별 투자계획					
					'96 ()	97 ()			사업 명	세부 사업 명	사업 량	사 업 비		
												합계	음자	자부 담
	개별 농가 별 소계													
	영농 조합 법인 소계													
	협업 체별 소계													
	축협 조합 별 소계													

- (주) 1. 대표자란 ()내서는 구성원의 호수를 기재
 2. 사육규모란내에는 전체사육두수를 기재하고 ()내서는 번식우 두수를 기재
 3. 사육규모란에는 조사료생산기반을 제외한 주사육장 시설규모를 기재
 4. 사업명 및 세부사업명에는 사업시행지침에 구분된 내용에 따라 가급적
 기타내용이 없도록 기재
 * 실제 서식은 A4 횡으로 작성

61 | 젓소경쟁력강화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입니다.

1. 목 적

- 낙농산업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 국내 낙농기반 유지로 원유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추진방향

- 낙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자동화등을 통한 전업농 집중 육성
- 종합지원체제를 도입하여 투자의 효율성제고 및 농가편의 도모
 -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가에 사육기반시설, 장비등 종합지원
- 원유의 위생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사양·환경등 낙농여건 개선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낙농진흥법 제5조(정부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4-'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0,689	6,249	2,040	300	300	1,800
		백만원					
사 업 비	계	575,174	207,102	139,504	28,571	28,571	171,426
	읍 자	371,042	126,478	84,564	20,000	20,000	120,000
	보 조	20,886	11,490	9,396	-	-	-
	지방비	8,392	4,650	3,742	-	-	-
자부담		174,854	64,484	41,802	8,571	8,571	51,426

※ '97부터 조사료 지원사업이 분리 됨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WTO 출범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사육기반 시설개선 등을 통한 전업농 육성

(1) 지원대상자

- 낙농가, 낙농가들이 조직한 협업체, 젓소영농조합법인
- 낙농전문 파출요원
- 지역축협·낙농(우유)협동조합

(2)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소액분산지원을 피하고, 우선순위와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투자효율성 제고
 - 개별낙농가(협업체 포함) : 개인(농가)당 3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 및 낙협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조건
 - 융자기간 : 15년(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 금 리 : 연리 5%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세부사업별 융자 지원비율 : 70%(30%이상 자부담)
 - 세부내역 : [별표 1]

(3) 지원시설의 종류

- 사육시설
 - 축사, 축사부지 정지, 자동 급이·급수시설, 착유시설, 창고, 사일로 시설, 관리사, 운동장 및 비가림시설 등
- 기반조성 : 진입로, 목로, 용수개발, 전력 등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용 자	보 조		
사육시설	개소 300	백만원 28,571	20,000	20,000	-	-	8,571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축산과(농정과)
- 시·군 : 축산과(산업과)

다. 사업시행

- 추진방식 : 농민 자율방식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를 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업낙농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축사 신·증축 및 개축의 경우 시설완료후 전업규모로 사육 가능한 자에 최우선 지원
 - 이미 지원한 농가중 전업화를 위하여 지원요구시 추가지원하여 전업농 규모로 육성
 - 소규모 다수 농가에 대한 소액분산 지원은 억제

④ 기타

-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역은 '97년사업부터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용자로 전환기로 하였으므로 '98예산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
 - '98년 : 보조부분의 1/2을 용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의 전액을 용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본 사업의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사후 관리 실시
 - 사업농가가 2년이 경과하여도 젓소계획두수를 확보하여 사육하지 않을 경우 6개월내 추가 입식토록 촉구하고, 불이행시 미입식분에 상응하는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타용도로 전용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비 고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매년 3.10한	
사업추진실적(최종)	시·도	익년 2.10	

※ 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실적 보고시는 별표 2 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

6. '98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장 및 시장·군수

- 읍·면 : 산업계
- 시·군 : 축산과(산업과)

나. 대상자 선정

(1) 신청자격

< 개별농가 >

-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등 기반시설, 급이·급수시설, 착유시설, 창고, 사일로시설등을 하려는 농가(축사건축 제외)
- 기존 축사시설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축법에 의하여 시설을 보완(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여 현대화·자동화 하고자 하는 농가
- 이미 확보된 조사료생산기반에서 생산된 풀사료로 현재 사육하는 젖소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할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젖소 두수로 사육할 수 있는 축사면적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축사면적을 늘리지 않고 운동장비가림 시설만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젖소를 3년이상 사육하고 있는자(공통요건)

<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지역축협·낙협 >

- 초지·사료포동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법인 및 조합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법인체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법인체 및 조합
- 낙농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수 있는 협업체·법인체 및 조합

※법인체의 경우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이상으로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개별농가 >

- 1순위 : 기존축사에 운동장비기립 시설만 설치하고자 하는자
- 2순위 : 사육두수가 30두~50두인 자
- 3순위 : 사육두수가 50두~100두인 자
- 4순위 : 사육두수가 30두이상인 자

※ 동일 순위에서는 도시근교 낙농목장을 낙농여건이 좋은 산간 및 농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낙농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조사료 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농가, 사육경력이 오래된 농가순으로 지원

<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지역축협, 낙협 >

- 1순위 : 운영실적이 5년이상
- 2순위 : 운영실적이 3년이상
- 3순위 : 운영실적이 2년이상

※ 조합·법인·협업체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호당평균 사육규모 참조)를 적용함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 읍·면장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림사업 지원 신청서 :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서식 참조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

마. 기타사항

- '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사 업 별		지 원 비 율 (%)		지 원 단 가
		용 자	자 부 담	
기 반 시 설	진입로개설	70	30	km당 100백만원, 선별적으로 지원 (노폭 4m, 포장 4m)
	목로개설			km당 45백만원(노폭 4m)
	용수개설			공당 30백만원
	전기시설			km당 5,500천원
사 육 시 설	축 사	70	30	평당 66만원(두당 4평)
	부지정리			
	창 고			평당 30만원
	관리사			
	운동장 비가림시설			평당 10만원
	급이·급수시설			
	착유시설			
	사일로시설			
기 타				

[붙임 2]

사업추진실적 보고 서식

1.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사업대상자 개소수(농가수)	지 원 계 획 (실적)		
		용 자	자부담	합 계

- ※ ① 사업대상자란은 개소수를 표시하되 ()내서는 농가수를 기재
 ② 농가수는 법인 및 협업체에 속한 개별농가와 축협은 1개소를 1농가로 하여
 기재

2. 사업대상자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대상자 개소수 (농가수)	규 모 별	지 원 계 획 (실적)		
			용 자	자부담	합 계
개별농가		30두~50두 50-100두 30두미만 소 계			
영농법인		30두~50두 50-100두 30두미만 소 계			
협 업체		30두~50두 50-100두 30두미만 소 계			
지역축협· 낙협		30두~50두 50-100두 30두미만 소 계			
합 계		30두~50두 50-100두 30두미만 소 계			

3.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자 ()	사업량	지 원 계 획 (실적)		
			용 자	자부담	합 계
○ 기반시설(소계) 진입로 - -	개소				
○ 사육시설(소계) - -					
○ 합 계					
○ 사업대상자별 - 개별농가 - 영농조합 - 협 업 체 - 지역축협·낙협 합 계					

- ※ ① 사업대상자란 ()내서는 사업별로 중복지원한 개소수 또는 농가수를 기재
 ② 세부사업별 단위사업은 실시요령에 의한 사업별 구분 작성

4. 사업별 및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실적)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 대상 자	대표 자 (호수)	연령	사육 경력	사육규모		사육 장 규모	자 본 액	사업별 투자계획					
					'96 ()	'97 ()			사 업 명	세부 사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합계	용자	자부 담
	개별 농가 별 소계													
	영농 조합 법인 소계													
	협업 체별 소계													
	지역 축협 낙협 소계													

- ※ ① 대표자란 ()내서는 구성원의 호수를 기재
 ② 사육규모란내에는 전체 사육두수를 기재하고 ()내서는 착유우 두수를 기재
 ③ 사육규모란에는 조사료생산기반을 제외한 주사육장 시설규모를 기재
 ④ 사업명·세부사업명에는 사업시행지침에 구분된 내용에 따라 가급적 기타
 내용이 없도록 기재 (실제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62 돼지경쟁력강화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양돈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전업 양돈농가로 육성하므로써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추진방향

- 가족 노동력위주의 전업화 또는 협업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 유도
- 축사시설을 자동화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규모화함
-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사육 기반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지원계획

(단위:억원)

구 분		'94	'95	'96	'97(예산)	'98	'99-2004	합 계
사업량(개소)		1,060	1,734	2,079	1,939	500	2,400	9,712
사업비	계	790	1,670	2,385	2,386	1,500	7,200	15,931
	용 자	553	1,169	1,669	1,670	1,050	5,040	11,151
	자 담	237	501	716	716	450	2,160	4,780

※ '97년 이후는 42조원 투융자계획 기준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대상
 - 양돈농가, 종돈업경영자,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등
- 지원내용
 - 기반시설 : 진입도로, 부지정지,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신축 및 증·개축, 급이·급수시설, 환기·보온시설 등
 - 기계·기구 : 돼지사양관리, 생산물처리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 기 타 : 창고, 관리자, 일반폐사축 소각시설(전염병에 걸린 가축처리 용은 제외) 및 기타 돼지사육에 필요한 시설 등
(단, 분뇨처리시설은 별도 사업계획으로 선정추진)
- ※운영비(가축구입, 부지구입, 사료자재등 자재구입, 임차료등)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농가당 3억원이내, 법인은 자기자금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금의 400%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종돈업의 경우는 생산능력·사육시설환경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 별표 1참조
 - 지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 균분상환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축발기금(안)			지방비	자부담
			소계	용 자	보 조		
돼지경쟁력 강화	개소 1,939	백만원 238,571	167,000	167,000	-	-	71,571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500-2689-9)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보고, 시장·군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축협등 관계기관에 보고(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이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및 사양기술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양돈전문교육기관등으로 부터 사전교육을 받도록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가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현대화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양돈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엄선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 농가에게 소액·분산 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사업자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내용 및 소액분산 지원 상황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여야 함

○ 기타

- 대구혁 재경지정리 지역은 '97년사업부터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융자로 전환키로 하였으므로 '98예산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
 - *'98년 : 보조부분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의 전액을 융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 순위로 인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실시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자금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37조에 의거 조치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종합 점검 평가하여 사업 추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조치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사업자금 집행 관리규정 및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대상자선정 결과	시·도	3. 10	별지 제1,2,3호 서식
사업추진실적(최종)	시·도	익년 2.10	별지 제2호서식

※ 사업비가 이월된 경우에도 사업실적보고에 포함하되 이월분은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

6. '98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돼지사육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축산업협동조합, 양돈협동조합 및 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또는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으로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 시·군농발심의위원회 심의후 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신청서
- 종돈업, 가축계열화 및 품질개선단지 참여농가의 경우는 관계 증빙서류
- 축사시설등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부지확보 증빙서류
- 개별농가중 번식, 육성·비육을 나누어 사육하는(2~3site) 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구성농가간 계약서류

마. 선정 우선순위

< 개별농가 >

- ① 개별농가간 번식, 육성·비육전용 시설을 각기 별도(2-3Site)로 설치하고 번식농가가 주체가 되어 비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자들로서 농가당 사육두수가 2,000두 미만인 번식농가 또는 육성·비육농가

- ② 500-1000두미만 규모 돼지 사육농가(법인체, 축협조합포함), 종돈업자
- ③ 1000두-2000두미만 규모 돼지 사육농가
- ④ 500두미만 규모 돼지사육 농가

※ 상기 동일 우선순위중에서 분뇨처리를 잘하는 농가,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 및 돼지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우선 지원

< 조합, 법인, 협업체 >

- 공동구매, 공동출하, 공동방역등 조직의 응집력이 큰 조직
- 공해문제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양돈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
-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직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바. 선정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4조 - 제22조 참조
- 유의사항
 - 양돈계열화 참여농가 및 종돈업시설은 예산 요구시 사업량, 사업비를 구분하여 신청
 - 계열주체가 참여농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지원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등에 의해 선정
 - 종돈업은 호당 지원한도 이상 지원이 가능하므로 종돈업을 지원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조사하여 일반 양돈농가 지원 소요자금과 구분 하여 신청

[별 표 1]

돼지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준

	사 업 비					비 고
	보 조		용 자	자 담	합 계	
	지방비	기 금				
< 기반시설 > ◦ 용수개발,부지정지,도로시설,전기인입 < 사육시설 > ◦ 축사신축(증),개축 ◦ 급이·급수시설 ◦ 환기시설, 보온시설등 ◦ 창고·관리사동 부대시설 ◦ 기타시설 < 기 타 > ◦ 관리용기계,기구장비등	%	%	70% 이내	30% 이상	%	◦ 돈사시설설치비 평당 : 780천원 이내 ◦ 비육돈사인 경우 평당 : 3~5두 사육 기준

- 돈사시설비는 축사표준설계도 93-돼지-자(번식) 및 93-돼지-차(비육)을 기준한 것이며, 기반시설등은 축산단지 기준에 준하고, 무창돈사등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실소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음
 - 돈사시설내용 및 면적등은 동 축사설계 개요를 참조하되 동 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 지원율은 '9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돼지경쟁력강화사업 지원계획 및 실적

	지원대상자수	사업비투자계획(실적)			비 고
		합 계	기금융자	자 담	
합 계	개소	천원			
○ 개별농가	호				
- 전업농가					
- 종 돈 업					
- 돼지계열 참여농가					
- 품질개선단지 참여농가					
- 기 타					
○ 영농법인	개소 (호)				
○ 협 업 체	개소 (호)				
○ 생산자단체	조합				

※ 기재요령 : 영농법인은 등기상 법인을 말하며, ()내에는 참여농가수를 기재

돼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천원)

		단 위	사 업 량		투 자 액		
			농가수	사업량	합 계	기금융자	자 부 담
합 계							
기 반 시 설	소 계						
	- 도로시설	m					
	- 부지정지	평					
	- 용수개발	공					
	- 전기인입	m					
사 육 시 설	소 계						
	- 축사신·중· 개축	평					
	- 급이·급수	두분					
	- 환기·보온	"					
	- 내부자동화	"					
부 대 시 설	소 계						
	- 창고신축	평					
	- 기타시설	평					
기 계 · 장 비	소 계						
	- 관리용기계	대					
	- 관리용장비	대					
	- 기타기구류	대					

※ 기재요령 : 합계란의 농가수는 1농가에 2-3개 단위사업에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1농가로 소계란의 농가수는 1농가에 2개사업이상 지원된 경우 각 해당사업에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육규모별 지원계획 및 실적

(단위:백만원)

현재사육규모	사업량	투 자 액			비 고
		합 계	지 원 액	자 부 담	
합 계					
1,000두 이상					
500 - 999두					
300 - 499두					
300두 미만					
기 타					

※ 기재요령

- 사업량 : 농가(협업)기준
- 기타 : 사육농가이외의 사업 “예”생산자단체의 생산물 처리시설등

63 | 닭경쟁력강화사업(자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양계경영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지원하여 생산비절감등 양계업 경쟁력 제고
-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품질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가족농 중심의 양계 전업농을 중점 육성
- 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환경제어시설 및 각종 기계기구 등을 종합지원
- 정부지원이 사육수수 증가와 연결되지 않도록 중축보다는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우선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년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예산안)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개소 508	526	765	300	200	400	2,699
사 업 비	계	68,245	79,273	109,286	109,289	98,600	528,700	990,404
	국 고	-	-	-	-	-	-	-
	국고융자	11,320	-	-	-	-	-	11,320
	기금보조	-	-	-	-	-	-	-
	기금융자	32,610	52,900	76,500	76,500	69,000	370,000	677,510
자 부 담	24,315	26,373	32,786	32,789	29,600	158,700	301,574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내용
 - 기반시설 : 용수개발, 부지정지, 도로개설, 전기인입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신·증·개축, 급이·급수시설, 환경개선 시설(자동환기장치, 열풍기, 온도조절기 등), 각종 축사내부시설, 부화시설(건물, 부화 장비 등)
 - 유통시설 : 계란집하장 시설(건물, 운반장비, 계란선별기 시설 등), 계란 저온저장 시설(건물, 냉장시설 등), 계란가공시설
- 기계, 기구, 장비 : 트랙터, 로더, 소독장비, 부산물처리장비 등
 - ※부지구입 및 가축구입비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별도의 공해방지 시설사업으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 <별표 1> 참조
- 지원대상
 - 닭 사육농가 또는 종계장, 부화장 경영자
 - 양계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축협, 자생적인 협업체 등
- 지원규모
 - 농가 : 호당 3~5억원이내(육계 3억원, 산란계 5억원)
 - 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 및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단 종계장, 부화장, 계란집하장 시설등은 사업규모,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증액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5%
 - 지원비율 : 융자 70% 이내, 자담 30% 이상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 계	응 자	보 조		
닭경쟁력 제고사업	300호	109,289	76,500	76,500	-	-	32,78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다. 사업시행

- 추진방식 : 농어민 자율방식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보고, 시장·군수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기타

- 닭 경쟁력제고사업은 농가자율사업으로서 사업신청자가 자율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업임.
- 사업대상자가 규모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수 농가에게 소액 분산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야 함
- 시·군은 사업착수전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양관리 기술 등의 교육 실시
- 축사등의 신축시 시설부지는 수해등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토록 지도

라. 기타

- 대구·경북 재정지정리 지역은 '97년사업부터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융자로 전환키로 하였으므로 '98예산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
 - '98년 : 보조부분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의 전액을 융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을 감안, 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지원자금의 회수 또는 취소된 자가 새로이 사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에 의거 조치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종합 점검·평가하여 사업 추진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조치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사업자금 집행 관리규정 및 사후관리지침에 의하여 조치) 기해야 함.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농림사업 평가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825호, '95.7.26)에 의거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일 자	서 식	기 타
대상자선정결과	시·도	3.10	별지 제 1,2,3호 서식	계획대비 실적
사업추진실적 보고(최종)	시·도	익년 2.10	“	“

6. '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농촌지도소

나. 대상자선정

(1) 신청자격

<전업농, 종계·부화업>

- 양계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시·도지사에 종계업, 부화업 등록이 되어 있고 생산실적이 있는 종계장, 부화장 경영자

<축협, 법인, 협업체 등>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축협조합
-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법인과 양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5인이상 농가가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로서
 - 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고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 구성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협업체

(2) 선정 우선순위

<개별농가>

- ① 50천수 미만 사육농가로서 사육수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시설을 대체하여 현대화, 자동화 하거나 기반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② 10천수~30천수 규모 사육농가
- ③ 30천수~50천수 규모 사육농가
- ④ 10천수이하 규모 사육농가

※ 동일 순위일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우선 순위 선정

- ① 종계업, 부화업, 닭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계열사업 참여농가는 계열주체의 추천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
- ② 전업규모 이상을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화된 자동시설을 갖추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
- ③ 농과계 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④ 전산관리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자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우선지원될 수 있도록 함 (조합, 법인, 협업체 포함)

<조합·법인·협업체>

- 조합·법인·협업체도 구성농가를 평가하여 상기사육규모별 우선순위 적용
- 구매, 출하, 방역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응집력이 큰 단체
- 공해문제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서 양계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3)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 희망자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
- 시·군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5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계열주체는 지원이 필요한 계열농가 내역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기타사항

- '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지 원 기 준

	재원별 투자비율			비 고
	기금용자	자 담	계	
	%	%	%	
<기반시설> ○ 용수개발, 부지정리, 도로개설, 전기인입시설 등 <사육시설> ○ 축사신축·증축·개축 ○ 급이·급수시설 ○ 환경개선시설(자동환기장치, 열풍기, 온도조절기 등) ○ 각종 축사내부시설 <기타시설> ○ 부화시설(건물, 부화장비 등) ○ 유통시설 - 계란집하장시설(건물, 운반장비, 계란선별기, 시설 등) - 계란저장시설(건물, 냉장시설 등) - 계란가공시설 <기계, 기구, 장비> ○ 트랙터, 로다, 소독장비, 부산물처리장비 등	70이내	30이상	100	○ 계사신축시설비 - 산란계 : 평당 620천원 이내 - 육 계 : 평당 340천원 이내 ※무창계사, 계란집하장 등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실소요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등은 축산단지 기준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닭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선정 및 지원계획(실적)

	지원대상자수 (농가,업체)	투 자 계 획			비 고
		합 계	기금융자	자 담	
개별농가 - 전업농가 - 종 계 업 - 부 화 업 - 계열화 참여농가	호	천원			
영농법인	개소				
생산자단체	조합				
합 계					

- ※ 기재요령 : 1. 참여농가수는 농가(업체) 개념으로 기재
 (1개농가(업체)가 2~3개 세부사업을 지원 받더라도 1
 농가로 기재)
 2. 육계, 산란계 구분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닭경쟁력강화사업 세부사업별 내역

		단 위	사 업 량		투 자 계 획		
			농가수	사업량	합 계	기금음자	자 담
합 계							
기 반 시 설	소 계						
	- 진입도로 - 부지정리 - 용수개발 - 전기인입 시설	m 평 공 m					
소 계							
사 육 시 설	- 축사신축 - 축사 중·개축 - 급이·급수시설 - 환경개선시설 (환기,온풍기등) - 내부자동화시설 - 창고신축 - 부대시설 신축 - 기타시설	평 평 천수분 “ “ 평 평 평					
유통 시설	- 계란집하장 - 계란저장시설	개소 “					
기타	소 계						
기계 · 장비	- 관리용 기계 - 관리용 장비 - 기 타 기 구	대 대 대					

- ※ 기재요령 : 1. 농가수는 1농가(업체)가 2개이상 사업에 대상이 될 경우 각 해당란에 기재할 것
2. 육계, 산란계 구분작성

사육규모별 지원 계획(실적)

사육규모	지원대상자수 (농가,업체수)	투 자 계 획			비 고
		합 계	기금융자	자 담	
	개소	천원			
30천수 이상					
20~30천수					
10~20천수					
10천수 이하					
기 타					
합 계					

- ※ 기재요령 : 1.육계, 산란계 구분 작성
 2.지원대상자수는 농가(업체) 개념으로 기재
 3.기타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64 기타가축육성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단, 경주마육성지원 사업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소, 돼지, 닭 이외의 기타가축 사육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므로써 지역별 특수가축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발전 도모
-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 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도 제고

2.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수가축사육의 전업화 유도
- 사육시설과 생산물의 가공·판매시설 지원으로 부가가치 제고
-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예산)	'98	'99-2004
사 업 량		4,456	749	1,066	1,241	200	1,200
사업비	계	백만원 286,589	32,917	38,887	43,285	42,900	128,600
	음 자	205,361	24,000	27,393	33,968	30,000	90,000
	보 조 자부담	200 81,028	200 8,717	- 11,494	- 9,317	- 12,900	- 38,6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이외의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전업화(생계수단으로 사육)하거나 전업규모로 늘이려는 농가(말,산양,면양,노새,당나귀,토끼,친칠라,개,밍크,사슴,여우,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꿀벌,관상용 조류)
 - 영농조합법인, 축협(업종조합포함) 및 자생적인 협업체, 경주마 생산자협회
- 지원내용
 - 사육, 가공(혹염소 중탕시설비 포함), 판매·유통시설, 저장시설 및 기타 가축사육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붙임 1 참조)
 - 단, 가축구입비(종빈마 도입자금은 제외), 부지구입비, 임차료, 사료비 등 경영비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규모 및 조건([별표 1] 참조)
 - 기타가축육성사업은 농가호당 1억원이내, 경주마 생산농가는 호당 3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등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축협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 단, 종압장, 부화장, 가공·판매장 시설은 사업장규모, 생산능력등을 감안하여 실제 필요한 소요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음자	보조		
계	1,241	43,285	33,968	33,968	-	-	9,317
기타가축	1,241	37,428	29,398	29,398	-	-	8,030
경주마		5,857	4,570	4,570	-	-	1,287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 균분상환

(단, 종빈마도입자금 및 혹염소가공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4-9431-3, 500-2688)
 축산경영과(02-504-9434-5, 500-2689-9)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구 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축산계)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업양축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농가에게 소액 분산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지원사업대상 가축별 사육두수 비율등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경주마생산지원사업 별도 추진)
- 기타
 - 대구·경북 재경지정리 지역은 '97년사업부터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융자로 전환키로 하였으므로 '98예산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

- *'98년 : 보조부분의 1/2을 용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의 전액을 용자로 전환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 순위로 인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조치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기타가축육성사업대상자선정결과 (경주마 별도 작성)	시·도 (도)	매년 3월10일까지	별지 제2호 별지 제1호
기타가축육성사업추진실적 (경주마 별도 작성)	시·도 (도)	사업익년 2월10일 -12월31일현재 기준	별지 제2호 (별지제1호)

6. '98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나. 신청자격

- 기타가축을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흑염소 가공시설의 경우 염소 100두이상 사육농가
-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 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등
 - 조합법인의 경우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이상된 단체로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 시·군·구 농발심의위원회 심의후 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신청서

마. 선정 우선순위

- 기타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고자 하는자

	1순위	2순위	3순위
염소	50~100두 미만	100두 이상	50두 미만
사슴	30~50두 미만	50두 이상	30두 미만
오리	1,000~3,000수 미만	3,000수 이상	1,000수 미만
양봉	50~150군 미만	150군 이상	50군 미만

- 기타축종의 경우 사육두수가 많은자(사업신청기준)
- 경주마생산지원사업의 경우 초지, 방목장(600평 이상)을 많이 확보한 농가
- 농발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되 동 순위자 중에서는 자부담을 많이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바. 선정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4조 - 제22조 참조

[별 표 1]

기타가축 육성사업 지원기준

	세부사업	투자비율		비 고
		지 원	자 담	
<기 사육·저장 생산시설	타가축 : 소, 돼지, 닭이외 ◦ 축사신·증·개축 ◦ 목책시설 ◦ 급이·급수시설 ◦ 저온·저장시설 ◦ 꿀벌사육시설 ◦ 채밀시설·장비 ◦ 절각장시설 ◦ 기타시설	의 가축> 용자 70% 이내	30%이상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
가공·판매시설	◦ 냉동·냉장기 ◦ 건 조 기 ◦ 농축기계 ◦ 유압시설 ◦ 포 장 기 ◦ 예 열 기 ◦ 가공·판매장설치 ◦ 기 타			(단, 흑염소 가공 시설의 경우 3년 거치 5년상환, 연 리 5%)
기 타	◦ 부화시설 ◦ 기타			

* 지원율은 '9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별 표 2]

경주마 생산시설 지원기준

구 분	세 부 사 업	투 자 비 율		비 고
		지 원	자 담	
○ 종빈마	종빈마	용자 100%	-	○ '97년 용자 100% 두당 단가 9백만원 ○ '98년 두당 단가 10백 만원 용자 90%, 자담 10%
○ 기반시설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용자 70	자담 30	○ km당 100백만원 - 노폭 4m, 포장 3m ○ km당 45백만원 - 노폭 4m ○ 1개공당 30백만원 ○ km당 5.5백만원 * 한전 산출실비 적용 가능
○ 사육시설	마사, 창고, 패독 약욕장, 목욕장, 실내마장			
○ 육성조련시설	주로, 자동보행기, 마필, 수송차량, 조 련장비			
○ 주로관리장비	포그레인, 트랙터, 그레이더, 주로정지 기동			
○ 조사료생산장비	트랙터, 부속작업기동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으로 지원		
○ 초지조성	초지조성 기성초지보완			

※ '98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경주마생산지원사업대상자선정결과

(단위:천원)

사업별	대 상 자					투 자 액			
	합계	농가	조합	협업체	기타	합계	보조	융자	자담
○ 종빈마도입	개소	호	개소	개소	개소				
○ 사육시설									
○ 육성조련 시설·장비									
○ 기반조성									

[별지 제2호 서식]

기타가축육성사업대상자선정결과

(단위:천원)

사업별	대 상 자					사업량	투 자 액			
	합계	농가	조합	협업체	기타		합계	보조	융자	자담
합 계 ◦ 사육시설 - 축사 ◦ 가공시설 ◦ 판매시설 ◦ 흑염소가공시 설 ◦ 기타시설	개소	호	개소	개소	개소					
< 염 소 > ◦ 사육시설 - 축사 ◦ 가공시설 ◦ 판매시설 ◦ 흑염소가공시 설 ◦ 기타시설										
< 사 슝 > ◦ 사육시설 - 축사 ◦ 가공시설 ◦ 판매시설 ◦ 기타시설										
< > ◦ 사육시설 - 축사 ◦ 가공시설 ◦ 판매시설 ◦ 기타시설										

※ 축종별로 사업내용을 기재할 것

65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함

2. 추진 방향

- 경쟁력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조사료생산기반 확대조성 역점 추진
-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5-'96	'97 (예산안)	'98	'99-'04	계
총사업비	61,600	63,333	75,000	416,665 (83,333)	616,598
보 조	19,700	19,000	22,500	125,000 (25,000)	186,200
음 자	17,900	19,000	22,500	125,000 (25,000)	184,400
지 방 비	8,500	9,500	11,200	62,500 (12,500)	91,750
자 부 담	15,500	15,833	18,800	104,165 (20,833)	154,248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사업

- 조사료의 생산 이용에 필요한 용수개발, 전력인입, 도로시설등 기반 시설 지원
 -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등을 종합적 지원
 - 조사료생산 구조개선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조사료생산장비, 조사료 저장용Silo 설치, 초지영구목책 설치
 - 조사료생산 : 신규초지조성, 기성초지 보완, 사료작물재배
 - 볏짚 사료화 : 볏짚수거기 보급, 볏짚암모니아 처리
- ※ [별첨 1] 참조

나. 지원대상

- 한우·젖소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협업체 및 축협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 단, 총 출자액 1억원이상·구성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지원분(경쟁력강화사업등 포함)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3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등 지원비율은 [별첨 2] 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야함.
 - 융자 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금리 : 연리 5%

라. 사업 시행 체계

- 집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 신청(사업희망자 →시·군) →사업내용검토 및 심의 (시·군 시·도 농발위)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시·도예산배정(농림부)→시·군예산배정(시도)→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마. '97 사업비 내용

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소 계	음 자	보 조		
백만원 63,333	38,000	19,000	19,000	9,500	15,83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정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및 예산 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예산액을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
- 사업당년 1월하순부터 사업시행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의 사업 승인으로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의 사업승인으로 변경
 -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함.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 기관에 보고
- 사업비지원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지원금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3) 기타사항

- 지방 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협조
 - 사업의 지도·감독 및 평가실시
- 축협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비료, 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구매 알선 및 지도(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 [별첨 3] 참조)
- 지도 기관 및 단체
 - 사업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군에서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추진 기록장부와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용자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비 지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타용도로 전용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 이외에 사후관리 사항은 농림사업실시 규정을 적용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전기·수도·도로시설	시설설치	12년	매매·양도	○ 사업자의 질병, 사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 시설·기자재의 화재, 손상·망실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사후관리를 해제할 수 있음.
영구목적	시설설치	15년	“	
- 콘크리트재	“	10년	“	
- 철 재	“	5년	“	
- 목 재	“	5년	“	
사일로시설	시설설치	15년	“	
- 철근콘크리트재	“	10년	“	
- FRP재	“	10년	“	
트랙타(트레일러포함)	구 입	5년	“	
경운기(트레일러포함)	“	5년	“	
기타 조사료용 부속작업기	“	5년	“	

나. 보고

- 사업계획·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및 추진 실적 보고
 - 대상자 확정 보고 : '97. 1. 20일 (시·도 → 농림부)
 - 추진 실적 보고 : 상반기는 7.20, 하반기는 익년1. 20일
(시·도 → 농림부)
- 사업 정산 결과 보고
 - 시·도에서는 사업완료후 익년 2.20일까지 정산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완료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6. '98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제출기관 : 시·군(읍·면), 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5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모임.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구비 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사업실시 규정 관련 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마. 선정우선순위

< 농 가 >

- 초지, 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자.
- 초지·사료포부지를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할 수 있는 자.
- 한우 및 젖소경쟁력강화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자.

<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 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

바. 선정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발위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다. 기타사항

- '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세부사업내용

1. 기반 시설 사업

가. 용수개발, 전력인입, 도로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력인입 : 건조 및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인입이 필요한 지역
- 도로건설 : 필요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 지원우선순위
 - 휴경지, 한계지의 단지화 지역
 - 대상면적이 넓고 참여농가가 많은 지역

2. 조사료생산기반시설

가.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한하여 지원하되 2~3개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지원우선순위
 - 휴경지, 한계지의 단지화 지역
 - 대상면적이 넓고, 참여농가가 많은 지역
 - 조사료생산기계화 단지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나. 조사료 생산장비

- 조사료 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조합 및 농가들이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조사료생산장비를 구입 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조건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단지화되고 전업규모 이상의 소 사육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조사료생산단지를 구성하여 농기계의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전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 신규초지의 조성 또는 기성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 등에 의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유휴(한계)농지를 활용하여 초지나 사료작물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 단지 및 사업규모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 15ha 이상
 - 소사육농가 : 5농가 이상(한우 및 젃소농가를 구분하지 않음)
 - 농기계구입
 - 기본장비(동력원) : 중대형 트랙터
 - 부속작업기 : 사료작물재배, 수확(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작업기 일체
 - 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 공동보관용 창고 50평 내외
 - 지원규모 : 단지별 실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되 단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단지조성 및 정관작성
 -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의 합의에 의한 단지의 구성 및 사업계획서의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단지운영정관에는 임원의 선정·임무, 기계의 구입, 보관, 수선, 교체, 이용 및 회원의 임무·책임등 단지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함.

- 기계구입
 - 기계구입시에는 단지회원 등으로 하여금 구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방법, 절차, 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개 입찰방법 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구입
 - 단지의 실정에 적합토록 구입기종 및 기종별 구입량은 구입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기계는 단지공동 소유로 하며 성능이 보장된 우량품을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가 용이한 제품을 구입

- 단지운영요령
 - 농기계의 보관은 회원공동의 창고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기계의 이용은 사업목적대로 조사료생산 작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일반농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별 이용료 규정과 이용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하고 단지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부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여 배부하고 단지별로 비치 기재토록하고 기 조성된 단지를 포함한 모든 단지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분석
 - 농기계사용료는 단지운영비와 기계의 감가상각에 따른 기계 대체를 위한 기금적립등 단지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료생산장비의 운영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인근 농가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위탁작업 실시

- 조사료생산장비는 공동활용분이나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개인은 예산의 여분이 있을 경우에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초지나 사료작물재배지가 3ha이상일 것.

- 조사료생산장비 구분
 - 생산장비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등
 - 처리장비 : 수확기, 곤포기, 포장기, 집초가,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다. 조사료 저장용 Silo 설치

- 대상자 우선순위
 - 젖소 10두이상,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중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농
 - Silo시설이 없거나 간이 Silo(토굴형)를 영구 Silo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지원기준 : 호당 2기 이내(50톤 x 2기)
 - Silo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또는 FRP Silo
 - Silo 용량(1기당) : 50톤(78m³) 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맞도록 30 ~ 100톤 내외 조정 가능.
 - ※ 연간 2모작에 의한 ha당 생산량 : 100톤
 - 옥수수 60톤, 호맥·연맥등 40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토목기술관련부서 및 농촌지도기관의 협조아래 Silo설계 및 이용에 관한 기술 보급
- 축협중앙회장은 기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사업지도

라. 초지 영구목책 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영구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우선순위
 - 기성초지관리자 및 신규초지조성자
 - 불경운초지 및 임간초지
 - 경사도, 요철 및 석력함량으로 방목이용이 불가피한 지역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 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 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3. 조사료생산

가.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지구 고시 및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 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cm이하	31%이하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 잡목 등은 축사, 목책등 부대 시설로 활용하고 타처반출 제한
- 자재공급
 - 목초종자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제시하는 목초종자 소요량 (신규초지 및 기성초지보완 등으로 구분) 등을 조사하여 축협조합장에게 통보
 - 축협중앙회장 및 축협은 별첨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 석회 및 비료
 - 농촌지도기관의 토양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비료는 초지조성용 복합비료를 기준하되, 가격이나 비용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비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축협을 통한 일괄구매 또는 구매처 알선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 지도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 을 집행하여야 함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하급초지에 한하여 지원
- 유휴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과 연계추진

다.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

- 종자공급 : 별첨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 비료공급

- 시장·군수는 재배농가별 비료수요량을 조사하여 농·축협조합을 통하여 재배농가에 공급. 단,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생산업 허가(또는 등록)를 받은 자가 생산한 비료에 한함.
- 보조금은 농·축협조합에 직접 지급토록 하며 농가에게는 현물로 보조
- 사료작물용 비료를 일반 농사용 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
- 사료작물재배용 비료소요량 : 시장·군수가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농촌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장·군수는 농촌지도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

○ 주요 사료작물의 파종량 및 시비량(예시)

(단위 : kg/ha)

작물명	파종량	시비량(질소-인산-가리)	유기질비료
호맥	180	150-100-100	5,000
이탈리안라이그라스	40	200-150-150	"
수수, 수단그라스	50	200-150-100	"
연맥	180	150-150-100	"
유채	20	150-150-100	"
옥수수	30	200-200-150	10,000

4. 볏짚사료화

가. 볏짚수거기 보급

- 지원기준 : 농가는 1대, 생산자단체는 2대이내를 원칙으로 함
- 대상우선순위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 젓소(착유우) 10두, 한우 20두이상 사육농가

나. 벚짚암모니아처리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벚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결정(일괄계약 체결)
 - 일괄계약에 의한 사업단가가 지원단가 이상일 경우 자부담으로 함.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장·군수와 축협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 추진

[별첨 2]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사업별		지원비율 (%)				지원단가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부지정지 영구목적시설 진입로개설	20	50 (30)	20 (40)	10	km 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km 당 5,500천원 ha당 5백만원 ha당 3백만원 km 당 100백만원, 선별적으로 지원(노폭 4m, 포장 3m)
조사료 생 산	초지조성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50 50 50	50 50	50	ha당 단비:경운 3,130천원 불경운 2,290천원 임간초지 1,980천원 ha당 1,080천원 ha당 종자대 104천원, 비료대 198
벗짚사 료 화	벗짚수거기 벗짚암모니아처리	20 (10)	30 (10) 50	40 (50)	10 (30) 50	실제 구입단가 암모니아가스 주입비(실제 계약단가)
장 비 기 타	조사료생산장비 (트랙터,부속작업 기 등) Slio시설	20 (10)	30 (10)	40 (50)	10 (30)	실제 구입단가 1기(50톤)당 5백만원

- 주) 1. 지원단가는 상한단가이며 그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2. 기반시설·벗짚사료화 중 벗짚수거기, 장비지원 사업중 ()밖의 지원 비율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협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내의 지원비율은 상업인 또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
 3.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별첨 3]

정책사업용 종자공급 요령

<종 자 공 급 원 칙>

종자신청 · 보조사업자가 지역축협에 직접 신청

종자공급 · 지역축협이 보조사업대상자에게 직접공급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축협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정산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사업대상자(초지조성 및 관리, 사료작물재배) 명단을 축협에 통보
- 종자신청지도
 - 사업대상자가 직접 지역축협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축협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농가의 종자 인수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축협중앙회(도지회)에 촉발기금 지급 요청

□ 조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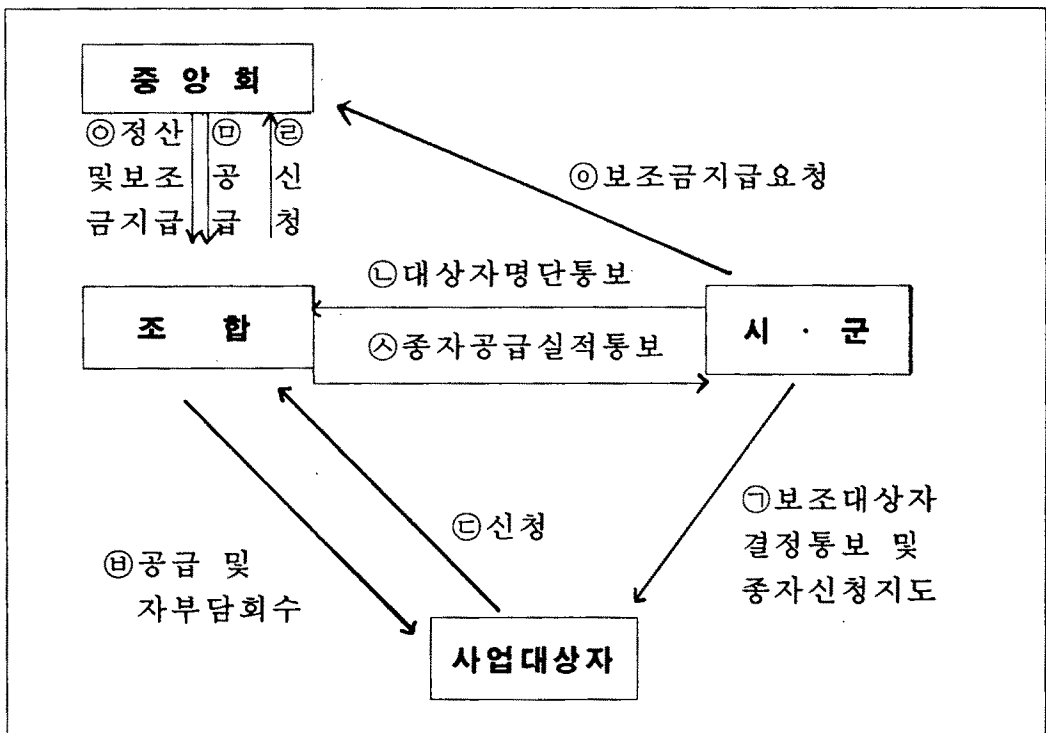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로부터 인수
 -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 신청 접수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 대상자로부터 신청 접수.

- 종자공급
 - 지역축협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 인계전에 대상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축협중앙회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검사 실시
- 구입된 종자를 지역축협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시·군의 보조금 지급요청에 의거 종자공급 조합에 보조금 지급

종자공급체계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방지
- 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절감
-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

2. 추진방향

- 무방류시설인 퇴비화·액비화등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중점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농가 자원화시설 우선지원
- 자원화시설 중점지원에 따른 수분조절재(톱밥, 왕겨등) 수급을 위한 톱밥 제조기, 왕겨분쇄기 적기 지원
- 변경된 지원기준에 의거 기 지원시설중 과소지원시설 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개소 36,691	9,696	8,600	8,950	18,950
사 업 비	계	백만원 1,847,485	330,185	135,300	158,250	167,50	1,056,250
	보 조	885,808	119,758	59,050	81,125	85,750	540,125
	용 자	641,496	177,316	59,180	46,275	49,050	309,675
	지방비	-	-	-	-	-	-
	자부담	320,181	33,111	17,070	30,850	32,700	206,45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개별시설 : 비료화시설, 액비살포시설등 자원화시설과 부대시설
 - 비료화 시설 : 저장액비화, 퇴비사, 건조장, 톱밥축사(개폐식우사 포함), 화력건조시설, 통풍식·교반식·건조식 축분발효시설 및 기타 적절한 비료화 방법
 - 부대시설 :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퇴비처리장비
 - 퇴비처리장비 : 소형톱밥제조기, 왕겨분쇄기, 목재파쇄기, 액비탱크, 고액분리기, 스키드로다 등
 - (2) 공동시설 :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부산물 비료제조시설 : 축분발효시설
 - 부대시설 :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뇨공동 저장탱크, 분뇨 운반장비(바큘카, 살포차량등)등
 - (3) 정착촌구조개선사업 : 나환자 정착촌에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한 축분발효시설, 공동저장탱크, 공동퇴비사등
 - (4) 톱밥제조시설 : 공동시설에 수분조절재 수급을 위한 톱밥제조시설
 - (5) 지원대상자
 - (가) 개별시설
 - 공동시설에 속하지 않는 개인 축산농가
 - (나) 공동시설, 톱밥제조시설
 - 축산단지,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열주체등 축산농가로 구성되어 공인된 단체
- ※ 법인의 경우 해당축종 경쟁력제고사업의 법인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다) 정착촌 구조개선
 - 나환자 정착촌

(6) 지원규모 및 조건

(가) 총사업비 산출기준

- 개별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사업의 총사업비는 아래의 축종별 축사면적 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

구 분	돼 지	한 우	젓 소	닭	
				평 사	케이 지
축 종	74,000원/m ²	30,000	33,000	21,000	34,000

-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으로 함.(경쟁력 제고 사업 등 신규 축사 신축시 계획면적 포함)

(나)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

구 분	돼 지	한 우	젓 소	닭	
				평 사	케이 지
개별시설	3억	2억			
공동시설	15억	8억		10억	
정착촌구조개선	4억				
툰밥제조시설	1.5억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가 상이할 경우 적은 금액의 사업비를 지원대상 총사업비로 함
- 닭케이지의 경우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하여야 함.

(다) 지원조건

- 개별시설, 공동시설, 툰밥제조시설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융자조건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3%
- 정착촌 구조개선 : 보조 100%

(라) 부대시설의 단가

- 1) 퇴비처리장비 : 10백만원
- 2) 분뇨공동저장탱크 : 50백만원
- 3) 분뇨 운반장비 : 30백만원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8,600	백만원 158,250	127,400	81,125	46,275	-	30,850
개별시설	8,500	117,750	94,200	58,875	35,325	-	23,550
공동시설	80	35,000	28,000	17,500	10,500	-	7,000
정 착 촌 구조개선	10	4,000	4,000	4,000	-	-	-
툽 밥 제조시설	10	1,500	1,200	750	450	-	300

※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후 7년 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1) 개별시설 : 시장·군수·구청장
- (2)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 툽밥제조시설 : 시·도지사

※ 사업 주관기관은 본 규정에서 별도의 업무지정이 없는경우, 대상자선정,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업시행 및 사업시행상의 지도·감독, 사후관리 및 평가, 보고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수행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02- 504-9431~3)
- 시·도 : 농림수산물국 축산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축산과)

다. 사업시행

(1) 사업기간 : 1년

(2) 사업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의 유용 또는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의 투자계획이 과다 책정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한도로 사업비를 삭감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 사업비중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자부담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하게 하고
 - 상기 사항 이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게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자금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지급하게 하여야 함. 그러나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자금집행은 예산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융자취급기관(축협)의 여신관리규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것과 시장·군수의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에 따라 집행

○ 용자 및 보조금의 병행 집행

- 보조와 용자를 동시에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용자지원을 자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음.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비(자담포함)에 충족되는 시설이 투자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철저

- 시설 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후 집행하는 방안 강구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사업주관기관은 당해년도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대상자 선정

- “8. 다음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준용

마. 기 타

(1) 시설 설치상의 주의사항

- 오·폐수법령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퇴비화·액비화시설(툽밥발효축사, 개폐식 툽밥우사, 퇴비사, 저장액비화 방법)의 설치권장
- 저장 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부속된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 등을 확보한 농가에 한하여 설치지도
 - 액비살포시설의 저장용량, 살포기준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 『축산폐수정화시설표준설계도(’95.11)』 참고
- 툽밥 우사의 경우 환기가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개방식·개폐식 우사에 설치 지도
- 툽밥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툽밥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 또는 툽밥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공법 권장

- 수분조절재로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하는 경우 발효된 수분조절재를 재차 수분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스키드로다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하되 구입기종은 가급적 중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중량 1톤미만의 장비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
- 트랙타 부착용 스키드로다는 반드시 트랙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소형톱밥제조기 및 왕겨분쇄기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타등 장비의 가동동력을 보유하고 톱밥 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농가에 지원
- 고액분리기는 분리된 노를 2차처리(정화후 방류 또는 저장후 액비살포)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농경지를 보유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2) 농지 조성비 감면

- 관련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별표 2 제18호
- 내 용 : 국내에서 생산된 축산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비료시설
- 감면비율
 - ┌ 농업진흥지역 : 3,300㎡까지 50% 감면
 - └ 농업진흥지역밖 : 전액감면
- 감면대상인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3)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제작·배포 내역

- 환경부('95. 11)
 - 종류 : 저장액비화, 통풍식 및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톱밥토양여과상, 희분식활성오니법, 산화구법
 - 배부처 : 시군 환경보호과
- 농림부, 환경부 합동('92. 7)
 - 종류 : 톱밥발효우사, 톱밥발효돈사, 건조식·통풍식·교반식 톱밥 발효시설
 - 배부처 : 일선 시군 및 읍면, 축산단체등
- 축협중앙회('91. 5)
 - 종류 : 간이정화조(저장액비화, 퇴비사)
 - 배부처 : 지역 축협 및 시군청

○ 환경부('88. 6)

- 종 류 : 저장액비화, 매립처분, 퇴비화, 토양칩투, 살수여상, 산화구
- 배부처 : 일선 시군 및 읍면 사무소

(4)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4-9431, 500-2688)
- 도 : 농림수산물국 축산과
- 군 : 산업과(축산과)

(5) 축산폐수배출시설관련 규제·단속 기관

- 중앙 : 환경부 생활오수과(☎02-504-9255, 500-4296)
- 도 : 환경관리과
- 군 : 환경보호과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내용

- 사업 주관기관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등을 년 1회 정기점검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그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함.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 및 읍자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 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시 자금회수등 적절한 조치
- 사업주관 기관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준공전, 준공후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함.

(2) 변경승인 사항

○ 개별시설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사항 : 사업장소 및 대상자 변경

- 시·도지사 승인사항 : 시·군간 보조·융자금 내역변경, 공법변경등 주요한 사항 변경

○ 공동시설등

- 시·도지사 승인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장소변경, 및 공법변경

- 농림부장관 승인 : 시·도간 보조·융자금 내역변경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 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 축산분뇨 처리시설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

나. 기타사항

(1) 보고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비고
사업완료(준공) - 개별시설 - 그외시설	완료후 1월이내 완료후 1월이내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공동시설 및 톱밥 제조시설완료후 운영실적	매년도 익년 1월말까지	사업주관기관	"	
정기점검평가 보고	매년도 익월	사업주관기관	"	농림사업실시 규정 서식
민원보고 변경승인보고	매분기 익월 매분기 익월	사업주관기관 변경승인기관	" "	

※ 사업추진실태의 점검, 평가의 내용, 서식 및 절차는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

(2) 준용 등

- 본 지침에 정함이 없는 사항과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 실시규정중 일반규정의 해당사항을 준용하고 동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6. '98년도 사업 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개별시설 : 읍·면·동 경유 시·군·구
- 그외시설 : 시·군·구 경유 시·도

나. 신청자격

- 개별시설 : 공동시설에 속하지 않는 개인 축산농가
- 공동시설 : 축산단지,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계열주체등 축산농가로 구성 공인된 단체
- 정착촌 구조개선 : 나환자 정착촌
- 톱밥 제조시설 : 공동시설대상자

다. 신청절차

(1) 개별시설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별시설 사업신청서를 요약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전년도 2월말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여 다음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후 예산확정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군별 사업배정 내역을 전년 12월 말일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은 자체사업계획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2)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 톱밥제조시설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내지 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사업시행 전년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물량 및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 전년 3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후 예산확정 즉시 시·도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별지 제5호 내지 7호 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위 신청절차에 준하여 늦어도 사업전년 10월말까지는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 내지 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구비서류(별첨)

- 사업대상자가 사업주관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간이 중앙정부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사업주관기관에 시설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첨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이에 따르는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별도의 서식 및 구비서류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사업 실시규정의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용함(예, 농림수산 정책자금 융자신청자료, 신용조사 의견서, 경영장부(I,II) 사업추진실태 점검평가서등)

마.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개별시설

- i) 당해년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선정농가에게 우선지원 및 동시선정
- ii) 일반지역내 농가보다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특정한 수질관리지역, 지하수보전지역,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내 농가에 대하여 우선지원
- iii) 돼지사육농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지원
- iv) 사업규모가 큰농가 우선지원
- v) 발효톱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Recycling System), 톱밥을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 우선지원
- vi) 농업인후계자등 객관적으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농가 우선지원
- vii) 축사시설을 개선한 농가 및 축사시설과 연계성이 우수한 분뇨처리시설을 선택하는 농가 우선지원
- viii) 신규지원 대상농가는 추가지원 대상농가보다 우선지원
- ix) 환경부, 특허청, 공진청, 농진청등 국가기관이 공인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대상자에 우선지원

- 공동시설, 정착촌 구조개선 및 톱밥제조시설

- i) 축산단지의 경우 2년차에 지원하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인 단지에만 지원하되 다른대상자에 비해 우선지원
- ii)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있고 단체 구성원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단체 우선지원
- iii) 공동시설과 관련 농지전용, 비료제조업허가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단체 우선지원
- iv) 퇴비화시설의 경우 톱밥등 수분조절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 톱밥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시설설치 단체 및 축사시설을 자원화가 용이하도록 설계·시공한 단체 우선지원
- v) 액비살포시설의 경우 자기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타인 농경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살포대상지를 확보한 단체 우선지원
- vi) 관계법령에 의거 직접적으로 축산분뇨의 처리의무가 있는 단체에 우선지원
- vii) 신규지원대상 단체는 추가지원 대상단체보다 우선지원

추가지원

- . 기존에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축사면적 단위당 단가에 의거하여 추가지원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지원 가능

. 추가지원금은 기존시설의 보완, 변형, 노후시설의 대체 또는 기존시설의 부대장비 구입자금으로 사용

. 추가지원의 경우 일반적 사업 우선순위를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거함

- i) 기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우수농가 우선지원
- ii) 기지원 년도가 시간적으로 오래된 농가 우선지원
- iii) 시설노후화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시설에 우선지원
- iv) 기지원시설로 현재 분노발생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농가 우선지원

○ 선정절차

- 개별시설

대상자 및 예산신청(시·군) → 지원물량 및 예산신청(시·도) → 지원물량 및 예산확정(농림부) → 지원물량 및 예산시달(시·도) → 사업대상 확정(시·군)

- 단체공동사업

대상자신청(시·군경유) → 대상자검토(시·도) → 사업대상자 물량 및 예산배정 신청(시·도) → 사업물량 및 예산확정(농림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시·도) → 시·군

사업지원 신청서(개별, 공동시설 및 정착촌구조개선사업)

신청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농장명 (단체명)									
	주소									
	축산경력	년	최종학력	년	월	학교(과)	졸업·중태			
농장현황	축종	축사형태		부지면적		축사면적		종업원		
	두			m'		m'		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예정지 면적			m'		
	기 자금지원 내역	시설명		지원금						
		보조	용자		자담					
사업내용	시설명	구체적 공법		시설업체명						
	일일분뇨처리 능력		M/T		부자재종류 및 일일시용량		M/T			
	사업비 (천원)		계		보조		용자		자담	
	시설내역	시설명		금액		시설명		금액		
				천원				천원		
<p>농림사업 실시요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대표자)</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날인)</p>										
<p>(사업주관기관) 귀하</p>										
<p>※ 첨부서류 :</p>										

사업지원 신청서(툽밥제조시설)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명				전화		
	주소						
일반현황	관내산림면적			m'	관내 연간 간벌재량		
	농업진흥지역 여부				툽밥예상가격		
	소유기자재 종류						
	관벌재등 수집방법						
	툽밥 축산농가 보급방법						
사업내용	시설업체명				기자재 회사명		
	일일툽밥생산능력			M/T	사업예정지 및 면적	M/T	
	사업비 (천원)	계		보조	용자	자담	
	시설내역	시설명	금액		시설명	금액	
			천원			천원	
	<p>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대표자)</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날인)</p>						
(사업주관기관) 귀하							
※ 첨부서류 :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주관기관 사업 신청서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사업구분(개별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 개선)

우선 순위	대상자	소재지	특정 지역 여부	축종	축사 형태	축사 면적 m'	사육 두수 (두)	시설 내역	시 설 업 체 명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보조	용자	자담		
계															

※ 작성요령

- 시설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별로 구분함.
- 축사면적은 건축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함.(경쟁력제고사업등 신규 축사 신축시 계획면적 포함)
- 특정지역여부는 해당 축사가 특정지역의 종류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기재(예 :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 시설내역은 교반식 발효시설, 통풍식 발효시설, 화력건조시설, 기타 발효시설, 화학처리시설, 액비살포시설, 정화시설, 기타시설로 구분 기재
- 축사형태는 슬러리, 스크레파, 개폐식, 후리스톨, 톱밥, 재래식, 기타로 구분 기재

※ 시·군별로 작성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 전년 3월말일까지 보고

※ 톱밥제조시설의 사업주관기관 사업신청서는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서와 동일함.

개별시설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명 및 사업목적

2. 농장현황

- 농장명 : 종업원수 :
- 성 명 : 나이(세)
- 축종 및 사육규모
- 축사면적 농장부지면적
- 축사형태
- 일일분뇨발생량
- 기자금지원 내역(없을 경우 생략)

3. 세부사업계획

- 가. 사업예정지 및 지목
- 나. 처리공법 및 분뇨처리체계도
- 다. 동 시설의 일일 분뇨처리 능력
- 라. 부자재 종류
- 마. 시설별, 1자원별 투자계획

항 목	규 격	금 액	사 업 비			
			계	보 조	용 자	자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구축물○ 기계설비○ 부대시설○ 기 타						

4. 시설 운영계획

- 가. 수분조절제 구입방법
- 나. 비료(퇴비, 액비)생산 및 처분계획
- 다. 사업수익성 판단

5. 기대효과

- ※ 첨부서류 : 토지대장등 토지사용전 관련서류
- ※ 사업내용과 특성에 따라 위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공동시설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2. 단체현황

- 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단지원(조합원)의 축산현황

농장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	축 종	축사면적	사육두수	축산경력	비 고
				m ²	두	년	

- 일일 분뇨발생량 : M/T
- 단체 자산 및 부채내역

3. 가축사육계획 (연도별)

축 사 신 축			사 육 규 모 (돼지의 경우)			
동 수	축사면적	축사형태	계	모 돈	자 돈	육성돈
			두			

- 일일 분뇨발생량 : M/T
- 축사 완공예정일 :

4. 시설설치계획

- 사업예정부지 확보여부 :
- 예정부지 지목
- 부지면적, 건축면적
- 일일 처리능력(5시간 기준) : M/T
- 일일 비료생산능력 : M/T
- 처리공법 및 분뇨처리 체계도
 - ※ 필요시 설계도면 첨부
- 처리공법 설명

5. 시설별·재원별 투자계획(예시)

항 목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투 자 계 획 (백만원)			
					계	보 조	용 자	자 담
○ 건축물								
- 발효시설								
- 원료창고								
- 제품창고								
- 관리사								
- 기타(내역기재)								
○ 구축물								
- 액비저장조								
- 건조장								
-								
○ 기계설비								
- 발효기								
- 혼합기								
- 포장기								
-								
○ 운반장비								
- 지게차								
- 스키드로다								
- 페이로다								
- 운반트럭								
-								
○ 동력설비								
○ 기타								

6. 시설별 공사 추진일정

7. 자담금 조성 및 용자금 상환계획

8. 시설 운영계획

- 원자재(툽밥, 생석회, 왕겨, 질석등) 구입
- 비료 생산 및 판매계획
- 관리인력 확보방안등

9. 사업 수익성 분석(향후 5년간 예상 수익·비용 대비표)

10. 기대 효과

※ 첨부서류

- 시설설치 예정부지 관계서류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측분발효시설에 한함)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법인등기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
 - 계열주체, 축산단지 : 시도지사의 지정문서 사본

정착촌구조개선 세부사업 계획서

1. 정착촌 일반현황

- 농장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농장 일반현황 : (세대수, 주민수)
- 가축사육두수 : (축종별 사육호수, 두수, 축사면적등)

2. 축산분뇨 처리현황

- 일일 가축분뇨발생량 : M/T
- 현 축산분뇨 처리형태
- '91~'96까지 정부 지원내역
- 농장 자산 및 부채내역

3. '97 사업계획

- 사업기간 :
- 설치장소 :
- 설치예정부지 지목 및 소유자
- 시설명
- 처리공법
- 일일 처리능력 : M/T
- 축분발효시설의 경우 일일 비료생산량
- 정착촌 생활하수 및 축산분뇨 처리 체계도

5. 시설별·자원별 투자계획(예시)

항 목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투 자 계 획 (백만원)			
					계	보 조	용 자	자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시설 - 원료창고 - 제품창고 - 관리사 - ○ 구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비저장조 - 건조장 - 분뇨이송로 - ○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기 - 혼합기 - 분쇄기 - 포장기 - ○ 운반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 스키드로다 - 페이로다 - 운반트럭 - ○ 동력설비 ○ 기타 								

5. 시설 운영계획

- 원자재(톱밥, 생석회, 왕겨, 질석등) 구입
- 비료 생산 및 판매계획
- 관리인력 확보방안등

6. 기대효과

※ 첨부서류

- 시설설치 예정부지 관계서류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축분발효시설에 한함)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 : 법인등기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
 - 계열주체, 축산단지 : 시도지사의 지정문서 사본

툽밥제조시설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2. 단체현황

- 단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조합원현황
- 현보유시설 및 장비내역
- 기지원시설 내역 및 금액현황

3. 관내 산림등 현황

- 수목별 산림면적
- 간벌재 현황 및 이용계획
- 전년도 간벌재 이용현황
- 기타 툽밥원자재 수급계획

4. 시설설치계획

- 사업예정지 및 그 지목 :
-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 일일 툽밥생산능력 : M/T
- 처리공법 및 툽밥생산 체계도
※ 필요시 설계도면 첨부
- 시공업체, 기자재 모델 및 제조업체

5. 시설별·재원별 투자계획

가. 시설별 사업비

시설내역	규격	수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용자	자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 ○ 톱밥제조기 ○ 집진시설 ○ 디젤엔진 ○ 포장장치 ○ 연마기 ○ 용접기 ○ 후양 ○ 콘베이어 ○ 톱날 ○ 계량장치 ○ 포장장치 ○ 팁 ○ 완충시설 및 보호막 장치 ○ 기타 							

나. 공사추진일정

다. 자부담금 조성계획

라. 용자금 상환계획

6. 시설별 공사 추진일정

가. 톱밥원자재 구입

나. 톱밥판매

다. 사업수익성 분석(향후 5년간 예상수익비용 대비표)

7. 기대효과

※ 첨부서류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인서등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기타 사업대상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의 건 서

1. 사업명 : 공동시설

2. 단체별 요청내역

(단위 : 백만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공법	투자계획			
				보조	용자	자담	계

3. 단체별 사업계획 검토 의견

- 부지확보, 확보된 부지의 공장용지 전용가능여부, 민원해소방안
- 사업의 필요성, 전망, 기대효과
- 자기자본 조달능력 및 단체 구성원의 신용상태
- 축사형태 및 지역여건에 맞는 발효공법의 연계여부와 단체의 시설경영능력등

199 . .

○ ○ 도지사 (인)

농림부장관 귀하

의 건 서

1. 사업명 : '97정착촌구조개선사업

2.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공법 및 시설명	투 자 계 획			
				보조	지방비	자담	계

3. 사업계획 검토 의견

- 부지확보, 확보된 부지의 공장용지 전용가능여부, 민원해소방안
- 사업의 필요성, 전망, 기대효과
- 축사형태 및 지역여건에 맞는 처리시설의 선택여부와 단체의 시설운영능력등

199

사단법인 한성협동회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의 건 서

1. 사업명 : 톱밥제조시설

2. 요청내역

(단위 : 백만원)

단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공법	사 업 비			
				보조	용자	자담	계

3. 검토 의견

- 부지확보, 민원해소방안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자부담 조달능력

199 . .

○ ○ 도지사 (인)

농림부장관 귀하

67 축산단지조성사업 (공공)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한우단지는 축산물 유통과) 입니다.

1. 목 적

- 가축사육시설을 단지화하여 규모화의 잇점을 살리고 시설 현대화 추진
- 기자재의 구매, 생산물의 판매, 방역, 분뇨처리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생산 비절감과 생산성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사육시설의 현대화에 의한 사육여건 개선
- 공동관리 및 운영에 의한 경영개선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년차별 지원계획

(단위:억원)

구 분	'95까지	'96	'97 (예산안)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83 개소	71	77	20	120	377	
사 업 비 자 담	계	2,721	880	1,007	3,600	9,571	17,779
	기금보조	220	61	70	360	905	1,616
	기금용자	1,791	553	627	2,340	6,241	11,552
	지방비	145	50	34	180	490	899
	자담	565	216	276	720	1,935	3,712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기반시설 : 부지정지, 진입도로, 목도,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등
 - 건물설치 : 축사, 창고, 관리사, 인공수정실, 연구실 등의 건물시설
 - 기계·기구 : 축산물생산(사료급이기·급수기등), 운반처리용 차량·기계·기구, 환기·온도·습도등 환경조절시설, 가축방역용 장비류등
 - 기타시설 : 계란가공시설, 기타가축사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
- ※ 단, 분뇨처리 관련사업은 별도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지원
- ※ 운영비(가축구입비, 부지구입비, 사료비, 임차료등 경영비)는 축산단지 조성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우,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이전 (당해 축종의 기존축산농가에 한함)하여 전업규모화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자
 - 이미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확정 조성된 단지로서 시설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자
 - 기존의 가축집단사육지역에 시설을 보완하여 단지화하고자 하는 자
- 단지구성 요건 : 한우는 3호이상, 돼지·닭은 5호이상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액
 - 일반농가 : 호당 3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비율 : 축산단지 지원기준 참조[별표 1]
- 지원조건(융자)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

나. '97사업비(예산안) 내역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 계	융 자	보 조			
합 계	129	100,710	69,658	62,645	7,013	3,405	27,647	
한우	신규1년차	5	1,294	860	692	168	288	146
	계속2년차	27	14,378	10,660	9,014	1,646	130	3,588
양돈	신규1년차	4	2,362	921	881	40	113	1,328
	계속2년차	27	56,860	41,053	40,173	880	-	15,807
양계	신규1년차	5	2,370	742	701	41	229	1,399
	계속2년차	8	10,244	7,596	7,294	302	60	2,588
젖소	계속2년차	1	990	693	693	-	-	297
제주도마을 공동목장조성	51	9,078	4,308	2,476	1,832	2,585	2,185	
한국형축산단지	1	3,134	2,825	721	2,104	-	30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각 도축산과, 광역시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다음 사항이 계획되어야 하며 계획대로 미 이행시에는 대상자선정을 취소하고 기존단지의 경우에는 지원된 자금을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의거 회수조치.
 - 사업계획신청시 사업대상 토지는 단지구성원이 자체로 확보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었거나 매매계약서등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법적제한 사항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되어야 함.
 - ※ 매매계약등의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한 자는 농림부에 예산신청할 때 까지는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규모는 자금능력, 경영능력, 축산분뇨처리능력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조성하여야 하며, 양돈단지의 경우 단지당 총사육두수는 15천두 이내로 함.
 - 단지 참여농가의 현황과 자금부담능력, 담보능력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지내에 공급하는 사료는 계약생산등 동일 사료로 통일하여야 함.
 - 생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돼지의 경우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육가공(수출)업체, 계열주체와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하여야 함.
 - 출입차량, 출입인의 소독 또는 통제시설, 방역시설과 자율방역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건축물, 부지정지, 전기인입시설, 용수원 등 건축·토목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지원단가가 없는 경우는 설계서등의 자료에 의거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축산단지조성사업 예산신청 1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를 받은 후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전심사 요령은 “가축계열화사업실시요령”에 준하여 실시
- 기반시설(도로, 부지정지,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등)은 토목설계에 의거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영사업단, 농어촌진흥공사등의 기능을 이용.

- 기반시설비중 지방비(20%)는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및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지방비 지원비율을 증가할 수 있음.
 -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 기타
 -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역은 '97년사업부터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융자로 전환키로 하였으므로 '98예산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
 - *'98년 : 보조부분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의 전액을 융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실태를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점검(신규 및 기존단지포함)
- 시·도지사는 축산단지 사후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하고 관리
- 기타 세부요령은 축산발전기금 운영요령등에 의함.

나.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식
○ 축산단지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결과보고	시·도	매년2월20일까지	별지제2호서식
○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 실적보고('91이후 미완료업체)	시·도	익년2월10일 완료 후 1개월이내	계획대비 실적 (사진첨부)

6. '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사업대상축종 : 한우, 돼지, 닭(젓소는 제외)
- 단지구성농가의 현 사육규모의 2배이내(단, 한우는 현사육두수 이내)로 하되 총사육계획두수는 돼지 15천두, 닭 300천수 이내로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자
 - 단지조성시 과도한 사육규모 증가(확대)로 시설자금의 자부담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여 단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단지조성 부지를 확보한 자
- 민원소지가 없는 자
- 공동사육하는 단지(단지구성원의 개별운영은 제외)
- 단지구성요건 : 한우, 닭 3호이상, 돼지 5~10호이내

※법인체의 경우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으로

-구성원의 2/3이상이 해당분야 사육경력 3년이상일 것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 참조

라. 구비서류 : 축산단지조성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마. 선정 우선순위

- ① 돼지의 경우 번식·육성·비육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2-3 Site 사육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②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자
- ③ 시설비 자부담 능력과 시설후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된 자
- ④ 사육경력이 오래된 자
- ⑤ 이전 명령을 받은 자
- ⑥ 상습수해등 피해 예상지역에 위치한 축사시설을 안전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 경우

바. 선정절차

- 사업구분 : 지방공공사업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지여건을 조사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심사요청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요청
 - 시·도지사는 농림부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

마. 기타사항

- 젖소 단지는 '97년부터 신규조성 제외
- '97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축산단지를 조성코자 할 경우 현행 보조비율의 50%를 융자로 전환
 - '99년부터는 보조지원비율을 100% 융자로 전환
- 축사시설은 “논”보다는 가급적 산지나 밭기반정비 구역등에 설치토록 유도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논”에 축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밭, 산지보다 후순위

[별표 1]

축산단지조성사업 지원기준

	재원별투자계획					지원단가
	보조		용자	자담	합계	
	지방비	기금				
○ 기반조성					%	
- 진입도로	20	70	-	10	100	○ 1km당 1억원이내 선별 지원(노폭 4m, 포장 3m)
- 목도	20	70	-	10	100	○ 1km당 45백만원이내 (한우 : 노폭 4m)
- 용수개발	20	70	-	10	100	○ 1개공당 : 30백만원이내
- 전기인입	20	70	-	10	100	○ 1km 당 5,500천원
- 부지정지	-	-	70	30	100	
○ 축사등 건축물 시설						<축사시설설치비:평당> ○ 한우사 : 300천원이내(개 폐식은 400) ○ 돈사 : 780 “ ※ 비육돈의 경우 평당 3-5두 수준 * 축사표준설계도 - 93-돼지-자(번식) } 연계 - 93-돼지-차(비육) } ○ 계사 - 육계 : 340천원이내 - 산란계 : 620 “ * 축사표준설계도 - 육계 : 92-10000-파 - 산란계 : 92-30000-타
○ 기타시설 및 기계, 기구 차량 등 장비						“해당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등 관련사업 지원기준과 동일

- ※ 1. 축사설치비중 돼지, 닭의 경우 예시된 축사표준설계시설을 기준한 것이며, 무창축사등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실소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음.
 -축사시설내용 및 면적등 동 축사설계개요를 참조하되 동 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2. 지방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원비율의 상향가능
 3. '98년은 예산편성시 지원조건(보조율)이 변경될 수 있음.
 4. 전기인입시설비용은 한전 산출실비를 적용하고, 용수개발비는 설계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축산()단지 조성계획

1. 단 지 명 : ()

2. 사업장위치 :

3. 대표자 및 구성원내역

	성 명	생년월일	현 사 육		양축경력	현 사업장위치
			축종	두수		
대표자						
구성원						

4. 단지조성계획

- 대상지의 입지조건
 - 위치, 면적, 인·허가여건(타 법의 제한사항여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여건등)
- 투자계획
 - 사유 및 시설규모(시설후 단지 총규모, 농가별규모, 시설규모, 능력)
 - 자원별투자계획(개별사업, 공동사업, 세부사업별, 년도별 등 구분)
 - 시설배치도(개별시설, 공동시설, 용도별 등 구분)
 - 추진일정(세부사업별로 작성)

- 경영계획
 - 경영방법
 - 사업비조달 및 상환계획
 - 생산물 판매계획(생산, 출하계약 포함)
 - 축산분뇨처리방법 및 계획
 - 방역계획
 - 사료공급계획(사료통일 여부 포함)
 - 수지분석

- 구비서류, 기타
 - 시설부지 확보내역(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등), 부지에 대한 법적제한 여부 확인서류, 주민동의서등
 - 자본능력(자부담 및 운영비조달) 및 담보능력 증빙서류
 -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결과(요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내역 포함)기타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축산단지조성사업대상자선정결과보고

1. 단 지 명 : (축종 :)
 2. 사업장위치 :
 3. 대 표 자 : (전화 :)
 4. 사업규모

부지면적	축사면적	부대시설	참여호수	사육목표	비 고
평	동/평	동/평	호	두(수)	사업기간 :

5.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 명	사업 량	1년차			2년차			합 계				
		지방 비	기금		지방 비	기금		지방 비	기금		자부 담	합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6.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인·허가 및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7. 첨 부 : 단지별 사업계획서 1부.

68	가축계열화사업(공공)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 주체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 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므로써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추진방향

- 사전심사 강화 및 준비철저로 계열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계열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계열사업 체계화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년차별 지원계획

구 분	'96까지	'97~'98	'99~2004	합 계
○ 돼 지	13개소	7	5	25
○ 닭	16	4	3	23
합 계	29	11	8	48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 사업기간 : '97 ~ '98
-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 대상축종 : 돼지, 닭
- 가축계열사업형태 : 완전계열화, 부분계열화, 조합형계열화
- 자금지원대상자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 자금지원방법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돼지·닭경쟁력강화사업 또는 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열농가가 이미 다른 축산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가당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한도범위내에서만 지원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내용과 용자조건에 의함.

- 지원조건
 - 지원액 : 사업계획 기간내에 분할차등 지원
 - 지원비율 : 용자 70%이내, 자담 30%이상
 -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연리 5-8% ([별표 1]참조)
 - ※ 금리 : 생산자단체 연리 5%, 기타 연리 8%

나. '97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개소, 백만원)

	신규사업		계속사업 2년차		기존사업 보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돼지	1	790	1	4,500	-	-	2	5,290
닭(육계)	3	4,090	2	2,273	2	1,183	7	7,546

※신규 및 보완사업에 대하여는 업체별 지원액 별도 통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의 수립

- 기존보완과 신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에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계열사업완성년도, 년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이상
(1.5천두×2회×15호)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이상 (종계 40천수×100수)
농가확보 : 25호이상
- 사업추진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
 - 돼지 : 상기 규모이상의 자돈 또는 모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양돈시설
 - 닭(육계) :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과 부화장 (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확보
 - 축산기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등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 2명이상을 확보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조정 :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2)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

- 협의체 구성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별로 계열사업 참여농가등으로 가축계열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관계공무원이 협의체에 참가하여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등을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 계열업체 의무
 - 계열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열사업자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육두수 조절 및 수매·비축등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 계열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추가지원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의 변경등은 사업주관기관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기타
 -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역은 '97년사업부터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융자로 전환키로 하였으므로 '98예산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
 - *'98년 : 보조부분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의 전액을 융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목표달성 여부점검
 - 시설계획 및 사업목표 달성등 규정된 사항 이행여부
 - 계열농가 및 계열주체의 경영지도
 -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 생산비 및 유통마진 절감 추진
-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 확정된 사업계획대로 매년사업이 추진 않될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차년도 예산지원에서 제외하고 기 지원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사후관리는 '91년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로 하며 자금상황이 만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 지원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는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농특회계융자사후관리지침, 농림부사업 자금관리 기본규정에 의한다.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대출금을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

의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때등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은 축협중앙회,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액의 과다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된다.
- 사후관리대상자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의해 향후 5년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자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년 2회이상 계열화사업자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내에 보고를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지시를 한다.
 - 2차에 걸친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한다. 다만 이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보고

- 계열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별지 제7호서식) : 7.20, 1.20일
- 계열농가 협의체 구성현황(별지 제8호서식) : 1.20일

6. '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1월31일까지 관할 시·군→시·도→축산기술연구소→시·도(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예산신청

다. 대상자선정

(1) 신청자격

- 축산법, 축협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등록된 축산업, 부화업, 종축업, 도축(도계)업, 육가공업,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및 축산업협동조합(지역, 업종) 및 중앙회

-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 사업장 건설대상토지가 확보(사전심사후 예산신청전까지) 된자
-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중 1종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돼지 : 비육용 자돈 또는 모돈생산시설, 배합사료공장, 도축장, 육가공장
 - 육계 : 종계장,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육가공장
- 기 타
 -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주민동의서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
 - 육계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실적(사업신청 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 완전계열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생산물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자
 - 자부담을 많이 하고자 하는 자
 - 조합 형태로 계열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기타의 경우

(3) 신청절차

-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격요건 및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사업예산 신청 1개월이전까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장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본사업 추진요령 시행이전에 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본 요령에 의거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사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학계, 축협, 업계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사전심사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수립한 요령에 따라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한다.
- 심사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경우 “적합”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소요액을 신청하고,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로 부터 보완하게 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동 사유가 충족되기 이전에는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없다.

(5) 계열화사업자 지정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축산법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한다.
-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라 기타사항

- 대상 축종 : 돼지, 육계(산란계 신규는 제외됨)
- '97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생산기반시설	○ 종계장, 자돈 및 모돈생산 시설, 종돈장, 부화장 시설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 8%(축협 등 생산자단체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주체직영 비육돈·육계 사육시설	“	수출용가축을 직접도축,도계 및가공하여 수출하는 계열주체만 지원
3.계열농가생산시설	- 축사 및 부대건물 - 사육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지원내용과 동일
4.도계시설	- 도계장 및 부대건물 (오폐수처리시설포함)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8%(축협등 생산자단체 5%) -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수출용닭을(2.5~3.0kg)도계하여 수출하는 주체에만 지원
5.가공시설(육가공공장등)	- 가공장시설 및 부대건물 (오폐수처리시설포함)	“	
6.유통·판매시설	- 유통·판매장 및 부대건물 - 냉장·냉동·물류등 유통·판매시설	“	임대료는제외
7.사료제조시설		자부담으로 추진	
8.기타		“	

[별지 제1호 서식]

가축계열화사업계획서(작성요령)

가. 계열화 사업자현황

- 일반현황(소재지, 대표자경력, 회사연혁)
- 최근 3년간 축산관련사업 추진실적
- 인력 및 자산, 시설보유현황(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의 규모, 생산 및 용도별 처리능력을 기재

나. 계열화생산 사업계획(향후 5년이상)

- 사업개요
- 연차별 신규시설 확보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
 - 사업장건설일정(사업자의 추진계획기간 : 2-3년간)
 - 사업완료일정(년도) 및 계열농가 구성현황, 농가별 사육규모, 생산물처리계획등
- 생산자재 공급 또는 축산물수매·비축용 지원자금 운용계획
- 생산자재 공급방법(자축,사료,연료,약품등)
 - 농가와와의 계약내용
 - 농가선정기준 및 확보지역과 방법(연차별 확대계획)
 - 농가지도인력, 장비 확보 및 농가지도 방법
- 생산물의 수집, 도축(도계)·가공 및 판매방법(연차별 계획)
 - 수집(수수료, 수매등)
 - 도축(자가,임대,위탁등)
 - 가공(부분육, 육가공 등 구체적으로)
 - 판매(수출대리점, 직판, 체인점, 대형소비처등 구체적으로)
- 생산된 축산물의 브랜드화 계획
 - 제조 형태별, 제품종류, 상품명등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연차별, 재원별로 구분([별표1]에 의한 세부사업별 투자내역)
 - 자부담은 자부담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자금상환계획(연차별 원리금상환계획)
- 손익추정분석
 - 기업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에 따라
 - 사업개시년도로부터 완료후 5개년이상
- 계열생산농가의 생산비절감 효과 및 소득추정(규모별 구분)
- 사업추진체계도
 - 자축생산 및 생산자재공급 → 생산물수집 → 도축·가공 → 유통·판매까지

다. 첨부서류

- 농가와 계열사업자간의 계약서
- 계열농가별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전화번호 포함)
- 사료, 자축등의 생산자재중 외부로부터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 도축(도계), 가공, 유통·판매등을 외부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서 사본
- 판매조직 확보 현황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 영농조합법인등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 증빙서류
- 시설토지 확보 및 법적제한사항 유무 증빙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
- 사업장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제기 유무 증빙서
-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금 담보능력 및 자부담금 조달능력 증빙서류
-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별지 제 2 호 서식]

계열화사업 소요자금 신청서

1. 계열업체현황

- 업체명
- 대표자 (전화 :)
- 주 소
- 사업장위치

2. 자금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 량	1 년차		2 년차		합 계		
		음자	자담	음자	자담	음자	자담	합계

3. 첨부 :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사업 장소 재 지			
주사업내용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199.

사업주관기관의 장 (인)

[별지 제 4 호 서식]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보고

1. 현황

- 지정 년 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 투 자 계 획			()년도				()년도			
			합계	음자	자담	합계	음자	자담	진척 도(%)	합계	음자	자담	진척 도(%)
종 돈 장													
종 계 장													
부 화 장													
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도계장													
육가공 공장													
계란 집하장													
판 매 장													
저 장 시 설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 사업만 기재, 추가 지원분 등은 공란에 추가 기재

※ 사업장건설 완료년도까지의 계획 작성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향후 5년간)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비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 재 공 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 열 생 산											
	외 부 구 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 체 유통											
	상 인 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양돈의 경우 자축공급은 모든공급 두수를 기재

[별지 제 5 호 서식]

계열화사업 추진실적 보고(기 지정 사업자용)

1. 현황

- 지정 년 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 실적(년 월 일 현재 기준)

사 업 명	사업량	완료일 (예정일)	총투자계획			현재까지 실적				비 고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진척도(%)	
종 돈 장										
종 계 장										
부 화 장										
농가생산 시 설										
축분처리 시 설										
도 축 · 도 계장										
육 가 공 공 장										
계 란 집 하 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 사업만 기재, 추가 지원분 등은 공란에 추가 기재

3. 년차별 계열화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누 계	
		사업 량	금액	사업 량	금액	사업 량	금액	사업 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 재 공 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양돈의 경우 자축공급은 모돈공급 두수를 기재

계열화사업자관리대장

1. 현황

- 지정년도 :
- 축종 :
- 상호 :
- 대표자성명 :
- 주소 :

2. 사업장 건설 상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추진상황 (점검일 및 진척도)						
			합계	용자	자담	일	일	일	일	일	일	
종돈장						%	%	%	%	%	%	%
종계장						%	%	%	%	%	%	%
부화장						%	%	%	%	%	%	%
농가생산 시설						%	%	%	%	%	%	%
축분처리 시설						%	%	%	%	%	%	%
도축· 도계장						%	%	%	%	%	%	%
육가공 공장						%	%	%	%	%	%	%
계란 집하장						%	%	%	%	%	%	%
판매장						%	%	%	%	%	%	%
저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 사업만 기재, 추가 지원분 등은 공란에 추가 기재

2. 계열화사업 추진상황(연도)

구 분		계 획		추진 상황													
		사업량	금액	점검일()			점검일()			점검일()			점검일()				
				실적	비율	금액	실적	비율	금액	실적	비율	금액	실적	비율	금액		
계열농 가 확 보	호 수																
	총사육 규 모																
자 재 공 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양돈의 경우 자축공급은 모돈공급 두수를 기재

계열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추진실태점검)

1. 현황

- 지정 년 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 실적(기간 : -)

사 업 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 계획			당 기 실 적				누 계 실 적				비 고
			합계	음자	자담	합계	음자	자담	진척 도 (%)	합계	음자	자담	진척 도(%)	
종 돈 장														
종 계 장														
부 화 장														
농가생산 시설														
축분처리 시설														
도축· 도계장														
육 가 공 공 장														
계 란 집 하 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 사업만 기재, 추가 지원분 등은 공란에 추가 기재
 ※ 사업장건설 완료시까지 보고 또는 점검

3. 계열화사업 추진실적(기간 : -)

구 분		()년도 계획		당 기 실 적			누 계 실 적			비 고
		사업량	금 액	사업량	비율	금액	사업량	비율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 규모									
자 재 공 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양돈의 경우 자축공급은 모돈공급 두수를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계열농가 협의체 구성현황

1. 계열업체명

2. 대표자 및 임원구성

구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비고는 농가, 비농가(직업) 표시

3. 운영실적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토의내용	기타

4. 구성원 명단

가. 비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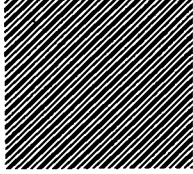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비고

나. 농가

성명	주소	사육규모	참여일시	전화	기타

여 백

Ⅱ. 생 산 및 유 통 개 선



여 백

69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
-----------	------------------------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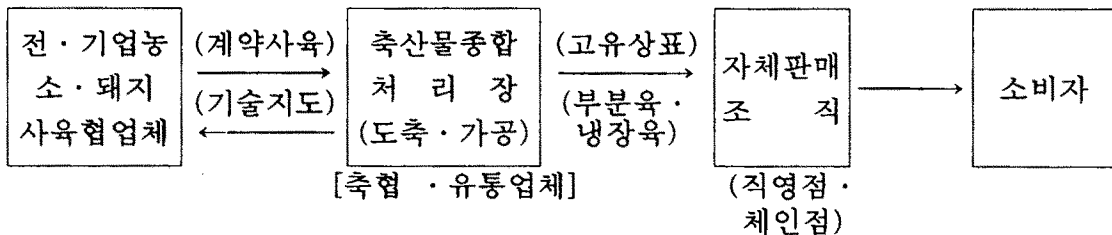
1. 목 적

-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의 계열화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육류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생산·유통 모델



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한우고기·돼지고기 유통량의 30~40% 공급
 - '97~'99 : 대규모 5개소 또는 중규모 10개소
-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시설규모
 - 대규모시설 : 1일 소 100두, 돼지 1,500~2,000두 도축 및 가공
 - 중규모시설 : 1일 소 50두, 돼지 750~1,000두 도축 및 가공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0	5	5	10	10	10
사업비	계	백만원 147,749	18,071	15,367	24,955	54,858	34,498
	축발기금	117,010	14,279	12,345	19,851	43,330	27,205
	자부담	30,739	3,792	3,022	5,104	11,528	7,293

※ 사업량(계속사업) : '95~'98 : 3개소, '96~'98 : 2개소, '97~'99 : 5개소
 ※ '97 신규사업 : 5개소(대형기준)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체제

- 백화점·슈퍼체인등 기존 육류판매망을 확보한 유통업체와 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선진국 수준의 도축시설을 설치
-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운영주체는 한우전업농·협업체 및 돼지품질개선단지등 양축농가와 계약사육 생산체제 구축
- 소·돼지를 부분육·냉장육으로 도축·가공, 상표를 부착하여 자체판매조직(직영점, 체인점육점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2) 축산물종합처리장 신청자격 및 의무사항

< 신청자격 >

- 참여대상 : 생산자단체(축협, 영농조합법인등), 농축산물유통업체,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수출업체, 축산물판매점 단체, 기존·신규 도축시설 경영자

○ 자격요건

- 도축시설 운영주체 : 상기참여 대상업체
- 가공시설 운영주체 : 상기참여대상업체중 다음의 자격이 있는 업체
 - 직영점, 체인 정육점, 음식점등 자체판매조직을 5개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일 소 5두이상, 돼지 30두이상 판매능력을 보유한 업체(돼지전문가공업체는 1일 100두이상 판매능력 보유) - 컨소시엄 구성으로 참여가능
 - 소·돼지 사육농가와 계약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상기판매물량의 생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 업체

< 의무사항 >

○ 도축시설 운영주체

- 선진국수준의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냉장육유통에 필요한 위생관리
 - 도축후 지육표면의 세균수를 최소화(1cm²당 10³이하 유지)
- 도축된 모든 지육은 가공시설 운영주체에게 인도(지육으로 외부반출금지)

○ 가공시설 운영주체

- 부분육·냉장육으로 가공하여 고유상표를 부착, 자체 판매조직에 공급 및 수출
- 종합처리장건설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전업농·협업체등 양축농가와 계약생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브랜드를 붙일 수 있도록 필요조치 완료
- 종합처리장건설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총 도축물량을 자체 판매조직에 공급할 수 있는 판매조직 확보

○ 위생관리 책임자 운용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주체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시설·설비·소독·해충구제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3) 지원내역

-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도축시설, 육가공시설, 오폐수처리시설비, 기타 부대시설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 지원

- 지원기준 : 도 축 장 : 용자 80%, 자담 20%
 오·폐수시설 : 용자 100%
 육가공시설 : 용자 70%, 자담 30%
- 표준사업비
 - 대규모시설 : 총 15,332백만원(용자 12,091백만원, 자담 3,241백만원)
 - 중규모시설 : 총 8,000백만원(용자 6,320백만원, 자담 1,680백만원)
- 지원조건 : 년리 5%(생산자단체 3%), 5년거치 10년상환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0	백만원 24,955	19,851	-	19,851	-	5,104
'94 선정사업	3개소	12,130	9,569	-	9,569	-	2,561
'95 선정사업	2개소	5,160	4,237	-	4,237	-	923
'97 신규사업	5개소	7,665	6,045	-	6,045	-	1,620

※ '97년 신규사업 용자금액은 총 용자금액중 10%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유통과(500-2691~2)
- 시·도 : 축산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산업과)

다. 대상자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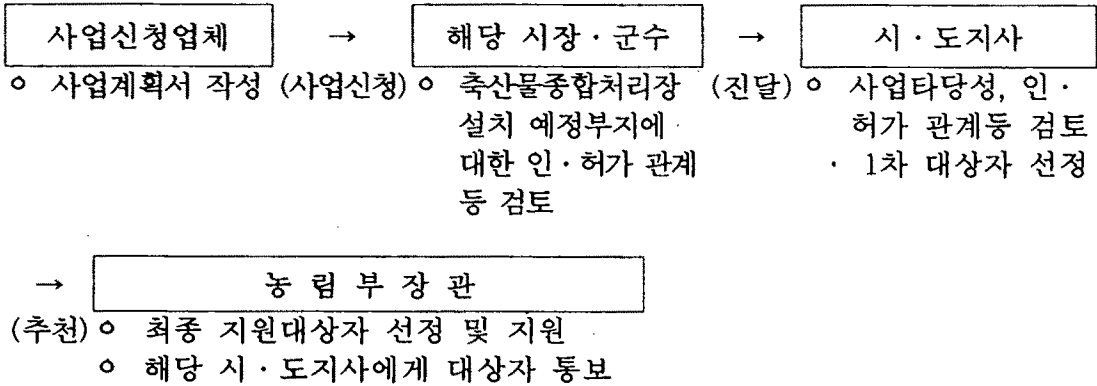
1) 선정기준

- 시·도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를 전문연구기관에 평가용역의뢰하여 각 시·도 별로 “2)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평가한 후 최고 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① 1개 시·도 대형 1개소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대형신청이 없고 중형시설 신청이 있을 경우는 중형시설 선정
- ② 신청대상자를 일괄평가하여 신청지역별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중 최고득점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며, 대형시설 1개소에 중형시설 2개소 비율로 선정

2) 우선순위

- ①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희망업체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사업장 예정소재지)로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도축장, 육가공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신청업체
- ③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가능한 업체(자치단체장의 의견서 첨부)
- ④ 가공시설 운영주체가 직영점, 체인점육점등 자체 판매조직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
- 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쇠고기, 돼지고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공시설 운영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
- ⑥ 가공시설 운영주체가 많은 수의 소·돼지 생산농가와 계약생산체제(기술지도포함)를 확립하고 있거나 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자치단체장 의견서 첨부)
- ⑦ 돼지고기 수출단지와 수출업체가 가공시설 운영주체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
- ⑧ 기존 도축장경영자 또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기존도축장을 폐쇄하고 도축시설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 ⑨ 총 사업비중 자부담비율이 높은 업체

3)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참여업체의 개괄적인 현황(1일 도축·가공·판매상황등)
 - 업체별 구체적인 참여방법 및 유형(중형, 대형)
- 도축·가공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 사업예정부지의 위치, 면적, 도축시설·가공시설 설치허가 가능여부(시·도 확인)
 - 건물 및 시설설치 세부계획(추진일정포함), 총 자금투자 및 자부담 조달 방법, 융자금 담보방법, 융자금 상환방법
 - 냉장육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위생관리계획
 - 특히 지육 1cm²당 세균수 10³이내로 유지
- 가공시설 운영주체와 소·돼지 생산농가간의 계약생산체제 구축현황 및 향후 확대계획(계열농가에 대한 사육기술지도 체계확립계획 포함)
- 가공시설 운영주체의 직영점, 체인정육점등 자체판매조직 현황 및 향후확충 계획
- 사업신청 :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

2)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냉장육유통을 위한 시설 및 위생관리내용이 필히 반영되어야 함
- 도축시설 운영주체와 가공시설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설규모는 동 요령에서 정한 중규모, 대규모시설을 기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대상자선정과정에서 심사를 받게되므로 사업계획서에 수록된 사항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고,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 것

3) 사업비 지원방법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시·도지사의 기성고 확인후 축협중앙회에서 자금집행

<행정사항>

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사항

1) 시·도 및 시·군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

- 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 희망업체는 부지구입, 사업계획수립등 본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에 해당 시·도 축산과장과 시·군 축산과장(산업과장)에게 협조요청
- 이경우 해당 시·도 축산과장과 시·군 축산과장(산업과장)은 적극 협조
※ 본 사업은 해당 시·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성공이 어려움

2) 사업추진사항 보고

- 사업대상자는 전분기의 사업추진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해당도에 보고
- 시·도는 전분기의 사업추진상황을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3) 시·도에 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도 담당국장
- 위 원 : 축산과장, 공업과장, 농어촌개발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과장, 복합민원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 및 시·군 담당과장
 - 축산물종합처리장 대상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
 - 기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학계 및 도축업계의 전문가

○ 지원위원회 기능

- 축산물종합처리장의 도축 및 가공시설 설계안 심사
- 부지확보 및 도축장, 육가공공장 설치허가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 지원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

나. 세부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마감(시·도) : '96.12월말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마감(농림부) : '97.1.15
- 대상자선정 용역의뢰 : '97.1.16~2.15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자금지원시작) : '97.2.16~2.28

[별첨1]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자는 다음의 준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동 준칙은 고급육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위생도축 기준인 바 기타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미국 육류가공장 지침서의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사업대상자 선정후 농림부에서 시달)에 준하여 따라야 한다.

1. 도축 및 가공시설 기준

- (1) 소 및 돼지의 전용 계류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류장 바닥은 불침투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고 내수성의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① 계류장 면적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의 도축능력 기준으로 설치하되 소는 1두당 3.3m², 돼지는 4두당 3.3m²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계류장에는 생축의 수세를 위한 냉온수의 살수시설과 자연급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생축하차시 가축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용하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돼지 전용 계류장에는 자동물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도축방법은 소는 에어건에 의한 타격법, 돼지는 전살법이나 CO₂ 개스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현수도축 및 방혈을 위한 전용레일을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 (4) 도축실 및 가공실 천장에 반드시 자외선 살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도축후 모든 지육에 대해 예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축시설 능력에 상응하는 예냉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 냄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설운영 및 위생관리기준

(1) 계류장의 운영요령

- ① 생축은 도축전 반드시 전용 계류장내에서 소는 7시간이상, 돼지는 5시간이상 계류시켜야 하며 항시 계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계류중에는 자연 급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축 전과정은 도축후 방혈관계부터 현수에 의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방혈과정

- ① 방혈은 경동맥 절단방혈이 원칙이며, 절단용 칼은 개체별로 각각 사용하고 사용한 칼을 소독할 수 있는 온수(83℃)소독조를 설치하며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 ② 충분한 방혈을 위해 방혈레일은 길이·속도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육오염의 최소화(10^3 이하/ 1cm^2)를 위하여 지육세척을 실시하고 자외선 살균등을 24시간 점등한다.

(5) 도축 및 가공실의 위생유지를 위하여 월 2회이상 작업중인 지육, 예냉실에 보관중인 지육, 숙성실에 보관중인 지육의 표면과 육가공장의 작업대에서 세균수 검사를 실시, 기록을 유지·보관해야 한다.

(6) 축산물종합처리장의 도축시설 운영주체나 가공시설 운영주체는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작업장은 위생관리인의 책임하에 위생관리를 실시하며 위생관리인은 관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7) 도축된 모든 도체는 등급사의 도체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8) 육가공실은 세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와 완전차단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가공작업중의 실내온도는 15°C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별첨2]

축산물종합처리장 주체의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위 반 회 수 별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행위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2.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별첨1) 불이행	주의통고	경 고	음자금중 일정 금액 회수	음자금 전액 회수
3. 지육외부반출금지 불이행	“	“	“	“
4. 부분육의 고유상표화 불이행	“	“	“	“
5. 총도축물량의 부분육 자체판매조직 2년내 미확보	“	“	“	“
6. 양축농가와 계약사육 및 사양기술지도체계 미확립	“	“	“	“
7. 기존도축장 폐쇄 미이행	음자금전액 회수			
8. 행정지시 위반	주의통고	“	“	“

- ※ 1. 본 기준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5년동안 적용한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음자금중 일정금액이라 함은 당초 지원한 음자금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70	도축도매시설 개선 (공공)
-1	(축산물공판장 건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1. 목적

- 생산자단체의 육류수급 및 가격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 도모
- 도축시설 개선으로 위생적인 육류 공급 및 공판장 운영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축산물공판장 건설목표 : 6개소 (설치완료 : 5개소)
 - 부천공판장 건설 추진('95~'99)
- 기 설치된 공판장의 도축 시설을 개선하여 부분육가공과 연계 도모
 - 고령공판장, 제주공판장의 도축시설 개선 및 자동화라인 설치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2 (7)	7(2)	2(2)	3(1)	1(1)	1(1)
사 업 비	계	백만원 88,982	54,456	15,142	7,129	8,933	3,322
	보 조	47,711	32,908	5,215	3,460	4,467	1,661
	용 자	20,078	14,451	1,686	1,490	1,786	665
	지방비	9,371	-	5,494	1,426	1,786	665
	자부담	11,822	7,097	2,747	753	894	331

※사업량 : 신규건설+개선, ()는 계속사업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사업개요

- 부천공판장 건설 : 수도권의 원활한 육류수급을 위하여 육류공급기지 건설
- 시설규모

사업 기간	규 모		처리능력 (1일)	
	부 지	건 물	도 축	경 매
'95~'99(5개년)	평	평	소 : 100 돼지 : 1,000	소 : 100 돼지 : 1,000
	11,313	3,500		

- 투자계획

구 분	계	'96까지	'97	'98	'99
	백만원				
보 조	9,520 (50%)	1,614	1,778	4,467	1,661
읍 자	3,808 (20%)	500	857	1,786	665
지방비	3,808 (20%)	604	753	1,786	665
자 담	1,904 (10%)	302	377	894	331
계	19,040(100%)	3,020	3,765	8,933	3,322

- 고령공판장 시설개선 : 기존 시설에 돼지 도축시설(탕박라인) 설치
- 사업기간 : '97년
- 제주공판장 시설개선 : 예냉실·급냉터널(실) 및 냉장·냉동 기계시스
템, 계류장 증축
- 사업기간 : '97년

지원대상자 : 축협중앙회 및 제주축협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용자 20%, 지방비 20%, 자담 10%
 - 지방비 미확보시는 자담으로 충당
- 용자조건 : 년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	백만원 7,129	4,950	3,460	1,490	1,426	753
○ 부천공판장	1	3,765	2,635	1,778	857	753	377
○ 고령공판장	1	1,164	815	582	233	233	116
○ 제주공판장	1	2,200	1,500	1,100	400	440	260

※ 용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경기, 경북, 제주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02-504-9436/7)
- 시·도 : 축산과
- 시군자치구 : 축산과 (산업과 축산계)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방법

< 부천공판장 >

- 경기도와 협조하여 건설 대상부지 확보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로 공판장 건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집행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비는 감리회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경기도(부천시)의 확인을 받아 집행

<고령, 제주공판장 >

- '97.1월말까지 경북도 및 제주도에서는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우리부에 제출
- 사업비는 경북도 및 제주도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집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 1차 책임(축협중앙회, 제주시), 2차 책임(축협중앙회, 제주도)
- 반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실시 : 시·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공판장 시설 및 장비	'97	2002	사업완료후 5년	

나. 보고 기타

-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20일 이내 (시·도 → 농림부)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 (사진 첨부)

6. '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나. 신청자격 : 축협중앙회

다. 신청절차

- 축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중앙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및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라. 기타사항

- 동 사업은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지방비 확보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 제출

70 -2	도축도매시설 개선(공공) (위생도축시설 확충)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 입니다

I. 도축·도계소독시설 지원

1. 목 적

- 도축장·도계장에 가축수송차량과 닭 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지원하여 농장간 질병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
- 가축 수송시 야기되는 환경오염요인 감소

2. 추진방향

- 도축장 및 도계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위생시설을 현대화한 작업장에 대하여 소독설비 및 장비지원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개설자 또는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함.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업장 시설비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 업 량		120	-	-	40	40	40
사 업 비	계	백만원 16,128	-	-	5,376	5,376	5,376
	대 출	11,292			3,764	3,764	3,764
	보 조	-			-	-	-
	지방비 자부담	- 4,836			- 1,612	- 1,612	- 1,612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배경 : 주요 가축전염병근절대책위원회 건의에 따라 추진대책에
작업장 소독시설 지원계획 포함
- 지원대상자 : 도축장·도계장 경영자(도축장 118개소, 도계장 62개소)
- 지원규모
 - 도축장 : 개소당 32백만원이내(차량 세척·소독시설)
 - 도계장 : 개소당 280백만원이내(차량 세척·소독시설, 닭 수송용기,
수송용기 자동세척·소독설비)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이상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대 출	보 조		
계	개소 40	백만원	3,763.5	3,763.5			
○ 도축장	30	960	960	960	-	-	-
- 차량세척·소독시설	30	960	960	960			
○ 도계장	10	2,803.5	2,803.5	2,803.5	-	-	-
- 차량세척·소독시설		320	320	320	-	-	-
- 수송용기	(15천개)	388.5	388.5	388.5	-	-	-
- 수송용기 자동세척 ·소독)		2,100	2,100	2,100			

※ 시설별 단가

- 차량세척·소독시설 : 45,000천원
 - 토목설비 : 20,000천원(100m², 방수벽, 차량 세차독크등)
 - 전기설비 : 2,500천원(판넬, 배선공사)
 - 배관설비 : 2,000천원(세척수 인입라인)
 - 폐수라인 설비 : 4,000천원(정화시설 연결배관 및 콘크리트 포장)
 - 물탱크 설비 : 5,000천원(10m², 철근콘크리트 지하설비)
 - 고압세척기 : 9,000천원(4,500천원 × 2대)
 - 부가세 : 2,500천원

- 닭 수송용기 : 55,500천원(수송차량 10대기준)
 - 37천원(개당) × 1,500개

- 닭 수송용기 자동세척·소독설비 : 300,000천원
 - 상하차용 유압 프래트홈 : 41,000천원
 - 체인 콤베아 : 47,300천원
 - 디스택커 : 35,500천원
 - 자동세척기 : 66,050천원
 - 용기 적재장 : 40,950천원
 - 스택커 : 34,200천원
 - 토목공사등 설치비용 : 35,000천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가축위생과 (전화 02-504-9438)
- 시·도 : 축산과(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광역시는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과(산업과 축산계)

다.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장
- ② 도축·도계물량이 많은 작업장
- ③ 도계장의 경우 자체 수송차량을 확보하고 주간 도계를 하는 업체
- ④ 작업장 시설을 현대화한 업체

2) 선정절차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사업내용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시군 및 시도)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시군 및 시도)

3) 사업신청

- 신청기관 : 시군 축산과(산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 농림사업지원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의 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97 사업계획 신청기한
 - 시군 : '97. 2. 15까지
 - 시도 : '97. 2. 28까지
 - 농림부 : '97. 3. 8까지
- 대상자 확정통보 : '97. 3. 22까지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지원대상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내용에 명시된 시설 및 장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사업대상자로 선정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소독시설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 시·도지사에게 사업완료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설이 사업계획대로 설치되었을 경우 축협중앙회장에게 사업자금을 지출토록 통보

마. 사업자 준수사항

- 소독시설 및 장비구입을 완료한 도축·도계장 경영자는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요령(’97 농림부 고시예정)”에 의거 해당 시설을 운영토록 할 것.
-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자금을 용도외 사용하거나 해당 시설 설치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자금을 일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조치

바. 행정사항

- 사후관리 : 1차(시장·군수), 2차(시·도지사)

[별지 제1호서식]

도축(도계) 소독시설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2. 업체현황

- 축산물작업장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일일도축(계) 능력 :
- 일일평균 도축(계) 물량 :
- 일일평균 출입차량
 - 자체차량 : 톤, 대
 - 지입차량 : 톤, 대
 - 기타차량 : 톤, 대
- 작업장 시설 현대화 내역

3. 시설설치 계획

4. '96년도 월별 도축(계) 실적

(단위: 두수)

월 별	두 수 계	자 가	위 탁	비 고

5. 시설별·재원별 투자계획

가. 시설별 사업비

시설내역	규 격	수 량	단 가	비 고		
				계	용자	자담
		개	천원			

나. 시설별 공사 추진 일정

다. 자부담 조성 계획

라. 용자금 상환계획

6. 소독시설 운영계획

7. 기대효과

II. 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부산물처리시설 지원

1. 목 적

- 도계시설 현대화로 위생도계육 공급 및 계육 유통구조개선
- 도축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털, 내장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위생 기여 및 부산물의 자원화로 활용

2. 추진방향

-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방지로 위생적인 식육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계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임

3. '97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물량

	'96		'97예산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도계장처리현대화	3개소	1,700	3	1,800	
도계도축부산물처리시설	6	1,710	2	600	
합 계	9	3,410	5	2,400	

나. 사업내용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자금수요자 : 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도축(계)부산물처리시설을 하고자하는 도계 및 도축장 경영자
- 지원내용 : 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도축.도계부산물처리시설 설치시 융자지원

다. 지원구분

- 융자비율 : 융자 70%이내
- 융자조건 : 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4.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 : 02-504-9438~9439
- 시·도 : 농정과 또는 축산과

71	가공 판매시설 및 운영(공공)
-1	(가공·직판장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I.가공·직판장설치

1. 목 적

- 수출업체 육가공장의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생산공급
- 생산자단체의 돼지고기 부분육 및 브랜드육 유통참여 확대유도

2. 추진방향

- 육가공장시설개선을 통한 냉장육 공급
- 위생적이고 안전성 있는 균일화된 규격품 생산
- 부분육 및 브랜드육 유통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지원계획

		계	'92-'95	'96	'97(예산)	'98	'99-2004
사 업 량(개소)		83	19	15	7	10	28
사업비	계	백만원 59,759	13,959	11,300	4,500	7,500	22,500
	대 출	39,774	7,744	7,850	3,150	5,250	15,750
	자부담	20,015	6,215	3,450	1,350	2,250	6,75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대상
 - 가공장 : 무역업등록이 된 돼지고기 수출업체로서 가공장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자 또는 시설개선후 수출할 계획이 확실한자(수출조건부지원)
 - 직판장 : 생산자단체(돼지고기품질개선단지 또는 축협조합)
- 지원내용
 - 가공장 : 육가공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건축비, 기계·기구·장비구입 및 설비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직판장 : 직판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임대료, 냉장·냉동시설, 육절기등 설비 및 기계·기구 구입자금지원(단, 원료육구입자금 및 차량 구입비는 제외)
- 지원기준
 - 가공장시설규모 : 돼지가공능력 300두/일(연간 90천두/300일기준)
 - 직판장규모 : 20평이상
- 지원조건
 - 가공장시설 : 융자 70%(업체당 700백만원이내), 자담 30% 이상
 - 직판장설치 : 융자 70%(업체당 350백만원이내), 자담 30% 이상
 - ※ 임대료의 경우 설치지역에 따라 차등지원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균분 상환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융 자	보 조		
계	개소 7	백만원 4,500	3,150	3,150	-	-	1,350
가공장	2	2,000	1,400	1,400	-	-	600
직판장	5	1,500	1,750	1,750	-	-	7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504-9434-5, 500-2689)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세부계획(수출이행각서 첨부)을 수립하여 추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통보하고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연 1회이상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 시·도지사는 시설개선후 돼지고기 수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 조치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철저(타용도 전용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나.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2월말까지, 사업완료 결과를 익년 1월말까지 보고 [별지 제1호서식]

6. '98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직판장설치사업은 '97년까지만 지원하고 '98년부터는 냉장육전문판시설개선사업과 통폐합 지원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과 또는 농정과

나. 신청자격

< 가공장시설개선 >

- 돼지고기를 직접 가공·수출하는 업체로서 무역업등록을 필한 자
- 1일 100두(돼지) 이상을 작업하는 업체로서 시설개선후 300두 규모로 늘리고자 하는 업체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도(축산과 또는 농정과)에 제출

라. 구비서류(사업계획서)

< 가공장 >

- 회사개요
- 사업계획서(투자계획, 수지분석, 원료돈구매계획, 수출실적 및 계획, 가공판매계획등)
- 수출업체 증빙서류(업체명의로 직접수출해야 함)
- 무역업등록증 사본
- 사업대상부지 확보증명서(이전, 확장의 경우)
- 수출이행각서

마.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 가공장시설개선 >

- 돼지고기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돼지고기 품질개선 및 규격돈 구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 선정절차

- 시·도지사는 가공장 사업대상자 선정시 관할지역의 돼지생산동향, 육가공업체수, 경영능력, 수출능력, 시설내용(냉장육작업시설등)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서식]

가공·직판장 사업추진실적

○ 업체명 및 대표자 :

○ 주 소 :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계								

○ 완료보고서 제출사항

< 가공장 >

- 수출실적 및 계획(5년간)
- 원료돈 구매계획(월간, 연간, 단지 및 조합명 기재)
- 원료육 생산계획(월간, 연간), 수출용, 내수용 구분작성
- 수출잔여육 판매계획
- 기타 사진첨부

< 직판장 >

- 원료돈 구매계획
- 월, 연간 판매계획

II. 축협중앙회 유가공시설

1. 목 적

- 생산자 조합의 원유처리 능력을 확충하여 우유수급안정에 기여
- 개방화 추세에 대응한 유가공시설 보완으로 생산성 향상 유도

2. 추진방향

- 우유 유통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축협중앙회의 유가공장지원 육성
 - 영세조합과의 상호 보완적 기능 수행으로 축협중앙회가 낙농조합의 중심체 역할 담당
- 시장개방 이후 생산자 단체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로 낙농가 보호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년차별 지원계획

구 분		'95까지	'96	'97 (예산안)	'98	'99-2004	합 계
사 업 량		-	-	1개소	-	-	1개소
사 업 비	계	-	-	130	-	-	130
	기금보조	-	-	-	-	-	-
	기금융자	-	-	91	-	-	91
	지방비 자 답	-	-	39	-	-	39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내용 및 사업개요

- 생산가공시설 : 시유, 발효유시설, 분유가공시설
- 우유유통장비 : 보냉케리카, 보냉고

나. 지원대상자 : 축협중앙회

다. 지원조건

- 축협중앙회는 사업추진계획을 1월말까지 작성하여 제출
- 지원비율 : 기금융자 70%; 자담 30%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

다. 사업시행

-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액 결정
- 축협중앙회가 사업추진
- 기성고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사업비 집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자체로 반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 실시

나. 보고기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20일 이내(축협중앙회→농림부)
-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보고

71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공공)
-2	(계란가공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계란을 가공하여 소비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확대
 - 상인중심으로 되어있는 계란유통을 가공품생산을 통한 견제기능 부여

2. 추진방향

- 계란의 유통단계 축소 및 계란의 상품성제고를 위해 계란가공유통시설 지원확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0개소	2	3	1	3	
사 업 비	계	백만원 24,596	3,295	8,672	4,056	3,000	
	보조						
	유자 지방비 자부담	16,191 8,405	5,300 3,568	5,952 2,720	2,839 1,217	2,100 9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지원배경

- 계란은 가공소비형태가 단순하여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낮아 생산물에 대한 소비확대 및 상품 개발 소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가공시설, 냉장(동)시설, 폐수, 발전시설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산란계계열업체, 계란가공업체, 농가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이내 융자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계란가공업체 8%)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1	백만원 4,056	2,839	-	2,839	-	1,21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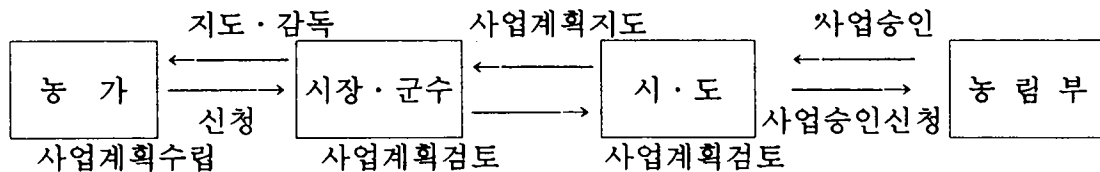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02)504~9436)
- 시·도 : 축산과(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사업대상자 선정시 다음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
 - ① 계란의 자가생산량이 많은 업체(농가 및 생산자단체)
 - ② 판매망(판매계획)을 다수 확보한 업체(농가 및 생산자단체)
 - ③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해 자체브랜드를 등록(특허청)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브랜드 등록계획이 있는 업체(농가 및 생산자단체)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을 해당 시·군의 지도하에 추진
 - 사업기간 : 1~2년
 - 사업계획은 통합실시요령 제1권 별지1호 서식 참조
- 사후관리 : 시·도지사
- 보고 : 사업추진실적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하고, 사업완료보고는 완료후 15일 이내

71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공공)
-3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및 젓소고기등 기타 쇠고기의 시장차별화로 한우의 경쟁력 제고
- 한우전문판매점에서 신선냉장육을 판매토록 설치지원하여 국내 냉장육유통 보급확산 유도

2. 추진방향

- '99까지 한우고기 공급량의 30~40%를 동 판매점을 통해서 유통되도록 설치지원 확대
-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예산안)	'98	'99	합 계
사 업 량	226개소	119	105	80	90	85	705
사 계	60,000	25,500	22,500	14,000	22,500	21,250	171,750
업 용 자	60,000	25,500	22,500	14,000	22,500	21,250	171,750
지방비							
자 담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설명

(1) 지원대상자

- 축협중앙회, 축협조합, 농협중앙회, 한우생산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한냉장(주), (주)한국축산유통, 축산관련협회, 백화점협회 및 (주)코스카 상역 회원사, 일반식육판매업소(신규포함)

(2) 지원단가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광역시급이상) : 축협중앙회 600백만원, 한냉(주) · (주)축산유통 450, 축협회원조합 300, 농협중앙회 · 축산관련협회, 한우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250, 일반식육판매업소등 기타 200
- ※ 광역시급 미만지역은 광역시급이상의 사업비에서 50백만원 차감

(3) 지원조건

- 지원재원 : 축산발전기금, 융자조건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금리 : 축협, (주)축산유통, 한냉(주), 농협중앙회, 축산관련협회, 한우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 5%, 민간 : 8%
- 시설기준(사업대상자는 다음 시설 및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 판매장면적 : 15평이상
 - 쇼케이스 4m이상, 숙성실 3평이상, 냉동실 1.5평이상, 냉장육절기
- ※ 축산물(가공품 포함) 판매면적이 총판매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소비자 휴식공간은 축산물판매 매장면적에 포함
- ※ 육류(제2차 축산물가공품제외)판매 및 관련시설 면적이 최소한 10평이상이어야 하며, 축산물판매면적이 30평이상일 경우에는 총판매면적에 대한 축산물 판매면적 비율제한은 없음

○ **취급품목**

- 육류(쇠고기는 한우육만), 기타 축산물 및 가공품, 농수산물과 식료품
(국내산에 한함)
-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등은 가급적 브랜드화된 국내산을 판매

(4) **지원내용**

- 판매장의 시설비, 임차료, 한우구입 원료육등 운영자금 지원
- ※ 임차료는 사업계획서 신청년도 임차한 것부터 지원

나. '97 사업비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계	개소 80	백만원 14,000	14,000		14,000		

※ 총사업비 20,000백만원('97 : 14,000, '98 : 6,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0-2691)
- 시·도 : 축산과(도), 농정과(광역시), 농수산유통과(서울시)
- 시·군·자치구 : 산업과, 축정과

다.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 한우고기 시장차별화에 의지를 가지고 식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을 원하는 개인·단체·법인

(2) 우선순위

- ①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브랜드화(상표등록)하여 판매하는 축협, 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 ②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브랜드화(상표등록)한 개인 및 단체
 - ③ 축협조합, 한우농가 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 ④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자
 - ⑤ 한우농가협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의 한우고기 원료육공급을 계약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식육판매업소
 - ⑥ 한우고기 시장차별화에 공헌한 자 및 공헌할 수 있는 자
- ※ 법인 및 협업체의 자격요건 : 설립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의 2/3이상인 한우사육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함

(3)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청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 시·도에 보고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자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우선순위 결정시 사업신청자의 한우고기 원료육 조달능력 과 한우고기 차별화에 공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
- 농림부장관은 기초자치단체수, 인구수, 사업추진성과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에서 신청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투융자계획, 년차별 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융자금 상환 시까지), 한우구입처 및 구입방법등을 기재(한우고기 구입처 및 구입방법 : 별첨 1)
 - 투융자계획 수립시 지원기준
 - 시설자금 : 지원액 한도범위내에서 전액 지원
 - ※ 시설자금 : 판매장의 신축·증설 및 개축비, 판매장 구입비, 냉장육절기 및 유통정보기기등 기계장치 구입비, 숙성실등 설비비, 판매시설비, 인테리어비등
 - 임차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임차보증금은 신규로 한우전문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만 지원
 - 운전자금 : 쇠고기 구입자금, 노무비, 일반관리비, 판매비용
 - 운전자금은 지원한도액의 30%를 넘지 못함
 -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융자금 투자계획은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운전자금순으로 투자
- 사업대상자는 제반사업추진 공정을 세부항목별 추진일정계획 수립 (사업계획서에 첨부)
- 사업대상자는 당초 투융자계획, 판매장 설치장소, 한우원료육 구입처 및 구입방법등을 변경할 경우 판매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투융자 변경시만 농림부 및 축협중앙회에 보고(통보)
- 사업대상자는 판매시설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사업비 지원방법

- 시·도지사는 한우전문판매점의 시설 및 간판등이 규정대로 설치되었을 경우 축협중앙회에 동사업자금을 지출토록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의 지출통보에 의하여 동사업자금의 투자실적을 확인한 후 대출 실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제1차 : 시장·군수·구청장, 제2차 : 시·도지사
- 사후관리책임자는 사업자가 서약서대로 판매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서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는 위반업체 적발시 위반조치기준(별첨4)에 의거 조치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경우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함과 아울러 지정서 회수 및 지정간판 철거
 -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회수시까지 축협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자에 대하여 현지확인 점검후 시·도지사의 지정서 발급(지정서발급요령 : 별첨2)
-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를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 시·도지사는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간판부착 지시(기본간판규격: 별첨3)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과 전문판매점 지도·점검실적, 판매점별 판매실적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판매실적보고 : 전문판매점 경영자 → 판매장 관할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보 고 내 용	보 고 기 간
사업추진실적 월별 지도·점검실적 업소별·월별 육류 판매실적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상·하반기 익월 10일까지 완료후 20일 이내

6. '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판매장 개설지역 해당 시·군·구(산업과, 축산과)에 신청

나. 신청자격

- 식육판매업소를 개설하고 있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
 - 신청대상자 : 축협중앙회, 축협조합, 농협중앙회, 한우생산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한국냉장(주), (주)한국축산유통, 축산관련협회, 백화점협회 및 (주)코스카상역 회원사, 일반식육판매업소

다. 신청절차

-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기관에 5월말까지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투융자계획, 년차별 판매계획서, 수지예산(융자금 상환시까지), 한우구입처 및 구입방법 기재)

마. 기타서류

- 신규로 판매장을 개설할 경우는 건물 건축시는 설계도, 판매장 임차를 하였을 경우 임차계획서 첨부
- 브랜드 상표등록한 업체는 상표등록 사본 첨부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한우전문판매점을 지정받아 영위함에 있어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성실히 운영함으로써 소 및 쇠고기 가격안정과 축산물유통체계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만일 아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우전문판매점 간판을 부착하겠습니다.
2. 지정된 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를 제외한 어떤 쇠고기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3.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위별로 구분하여 항상 진열하겠습니다.
4. 한우고기는 지정된 구입처에서 성실히 구매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겠습니다.
5. 양질의 한우고기를 취급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국내산 축산물 및 가공품(식료품과 농산물 포함)만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따르겠습니다.

19

상호명 :

주 소 :

성 명 :

○ ○ ○ 시 장(도지사) 귀 하

한우전문판매점 지정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반규정 및 서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행치 못하였을시
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 ○ ○ 시 장(도지사) 귀 하

< 구비서류 >

1. 식육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추진 및 지도실적 보고

○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 업 자	판매점주소	한우구입처	구입방법	지정도축장	자금집행액

※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자금집행액란에 간략히 기재(계약상황, 사업추진공정 비율등)

※ 한우구입처 : 도매시장명, 지정한우고기집배센타명, 지역축협명

※ 구입방법 : 가축시장, 지역축협 및 한우고기집배센타와 구매계약, 도매시장

○ 판매실적 보고

(단위 : 원)

사 업 자	품 목	월		연간(누계)		비 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고기(kg) ○ 돼지고기(kg) ○ 닭고기 ○ 기타 축산물 ○ 농산물 ○ 식료품 ○ 계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고기(kg) ○ 돼지고기(kg) ○ 닭고기 ○ 기타 축산물 ○ 농산물 ○ 식료품 ○ 계 					

※ 월별 판매실적을 구분 상·하반기 보고

※ 비고란에는 원료육 구입처 기재

○ 한우전문판매점 지도·점검실적

업 소 명	점 검 내 용	조 치 사 항	비 고

※ 비고란에는 점검 및 조치일자 기재

[별첨 1]

한우고기 구입처 및 구입방법

< 구입처 >

- 한우전문판매점 경영자는 한우 원료육 구입방법과 구입처, 지정도축장등, 구입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곳에서 한우구입과 도축을 하여야 함
 - ※ 시·도지사는 승인후 승인사항을 농림부에 보고하고, 동 판매점 관할구역(광역)이외에서 한우를 구입 및 도축할 경우 판매장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 동 판매점경영자는 도매시장, 임의로 정한 구매예정 지역축협(2개시·군이내), 지정된 한우고기 집배센터등 구입처를 정하여 구매해야 함(구입처는 2개소내에서 선정)
 - ※ 동 집배센터는 도매시장, 지역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자기책임하에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동 판매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
 - ※ 농가협업체 및 지역축협은 자기회원 및 조합원의 한우판매가능, 자기가 사육한 한우는 직접 판매가능

< 구입방법 >

- 도매시장에서 원료육을 구매할 경우 중매인 또는 매참인을 통하여 구매
 - 도매시장에서 발부한 축산물공급명세서에는 중매인(매참인) 약호, 구입처의 상호, 소의 품종(한우)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전문판매점은 동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 ※ 도매시장은 지육출고전에 전문판매점이 한우를 구입하는지를 점검하는등 점포별 관리를 해야 함

- 신고한 시·군의 지역축협과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당해 지역축협의 가축 시장(농가에서 직구매시도 포함)에서 구매하는 경우
 - 지역축협은 계약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회원농가와 계약등으로 한우전문판매점에 한우육의 원활한 공급에 책임
 - 당해 지역축협 가축시장(농가직구매시 포함)에서 한우를 구입할 경우 해당 축협조합장은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상의 축종(한우)과 매수인과의 사실여부를 확인

- 시·도지사(도축장 검사원)는 도축검사 증명서의 [종류]란에 도축우의 품종(한우)를 명시하여야 함

- 전문판매점은 가축매매수수료 영수증과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제출요구시는 언제든지 제시해야 한다.
 - 판매점 관할 행정기관과 한우구입 및 도축장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2조등 고려)

[별첨 2]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서 발급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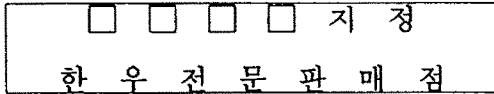
- ① 시·도지사는 대상자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자, 지정번호,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 ③ 지정번호는 공문서수신기호표 상의 각 시·도의 고유번호를 먼저쓰고 발급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 서울시 : 지정번호 서울시 제 01-1호
- ④ 한우전문판매점 영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장기적으로 전문판매점 영업을 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축산물유통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한 지정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 한우전문판매점 대상자가 판매부진등에 따른 판매장을 이전 및 신체건강상의 문제등으로 일정기간 판매점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장 휴업사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휴업기간을 정하여 지정서를 회수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점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토록 축협중앙회에 통보
 - 한우전문판매점 경영자는 판매장을 휴업사유 발생시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판매점 지정서의 명의변경은 개인(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포함)일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게만 가능하고, 법인·주식회사등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판매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은 불가함
 - 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의 지정서 명의변경은 정관상 임원과 회원간의 직계 비속은 가능함

[별첨 3]

간판의 내용 및 규격

< 내부간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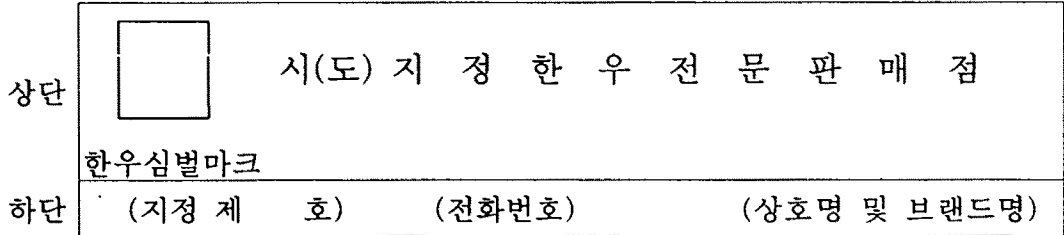
-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우전문판매점(예 : 서울시)
- 규격 : 30cm × 70cm(가로 또는 세로)



- □□□□는 광역행정기관명(예 :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등)
-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1/2크기로 하여 중앙에 위치토록 할 것
 - 색상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 단 한우는 적색

< 외부간판 >

- 일반식육점의 유사전문판매점과의 구별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간판 통일
- 간판 기본규격



※ 간판을 세워서 설치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크기
 - 간판크기는 판매점의 건물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함
 - 색깔
 - 전체바탕색은 주위환경을 어울리는 색깔 활용
 - 상단글씨는 청색(단, 한우는 적색), 하단글씨 자율적으로 선택
 - 상·하단 면적비율
 - 상단의 면적은 4/6이상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 한우심벌마크
 - 한우심벌마크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브랜드화된 한우고기 판매시 브랜드 한우마크 사용
- ※ 기본규격 간판은 반드시 주간판으로 하고 판매점당 의무적으로 1개이상 부착

[별첨 4]

한우전문판매점 점검사항 및 조치기준

점 검 사 항	조 치 기 준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 판매점에서 젓소고기(교잡우 포함), 수입쇠고기 판매행위	지정취소 (지정간판철거 및 지정서회수) 음자금 회수 세무조사 의뢰		
○ 판매점을 명의변경없이 타인에게 임대 및 전매할 경우 (직계존·비속은 신고하여 명의변경 가능)	지정취소 (지정간판철거 및 지정서회수) 음자금 회수		
○ 판매점내에서 젓소고기(교잡우 포함), 수입쇠고기 보관행위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 회수	
○ 승인된 구입처 및 도축장이외에서 한우육을 구입 및 도축할 경우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회수
○ 판매점을 휴업신고를 않거나 신고않고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회수	
○ 판매점 개설후 음자금 및 지정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 고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 정산보고 및 판매실적 미보고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음자금 회수
○ 육질둔갑판매 행위	경 고	경 고	"
○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 고	경 고	"

※ 조치기준에서 위반횟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계횟수임

71	축산물 가공판매시설 및 운영 (공공)
-4	(냉장육 전문판매점 시설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적

- 소매단계에서의 냉장육유통 및 판매기반 구축
-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등급별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표시 판매 정착
- 브랜드육 판매업소를 확대하여 브랜드육의 유통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일반 식육판매업소(신규업소 포함)의 냉장육 판매시설 개선
- 축협, 한냉 종합육가공장의 냉장육판매 가맹점 설치
- 일반 브랜드 육가공업체의 냉장육판매 직판점 및 가맹점 설치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2,318	153개소	248	167	250	1,500
사 업 비	계	백만원 124,486	3,563	10,538	10,635	14,250	85,500
	보 조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요
 - 일반 식육판매업소 및 브랜드 육가공업체 가맹점의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동 업소에서는 육류를 냉장육으로 등급별·부위별 및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별표시 판매토록 함
- 세부사업 종류
 - 일반 식육판매업소의 시설개선
 - 축협·한냉종합육가공장의 가맹점 설치
 - 브랜드 육가공업체의 직판점 및 가맹점 설치

<일반 식육판매업소 시설개선>

- 지원대상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된 식육판매업소(신규업소 포함)
 - 단, 현재 매장면적 8평이상이거나 시설개선후 8평이상일 것
- 사업량 및 사업비 : 42개소, 1,260백만원
- 지원단가 : 개소당 30백만원
- 지원조건 :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8%
- 자금용도 :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진열시설 및 인테리어

<축협·한냉 종합육가공장 가맹점 설치>

- 지원대상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된 식육판매업소(신규업소 포함)
 - 단, 현재 매장면적 12평이상이거나 시설개선후 12평이상일 것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개소, 7,500백만원
- 지원단가 : 개소당 75백만원
 - 12평기준에 의한 단가이며, 12평이상일 경우는 100백만원까지 사용 가능

- 지원조건 :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
- 자금용도 :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진열시설 및 인테리어

<브랜드육가공업체 직판점 및 가맹점 설치>

- 자기상표를 등록한 육가공업체가 직판점 및 가맹점을 설치하여 냉장육 판매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동 업체 및 가맹점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 브랜드 육가공업체에서 지원대상 가맹점을 선정
 -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 지원대상자
 - 브랜드업체 : 상표법에 의거 상표등록을 하고 육가공장을 운영중인 업체
 - 진공포장 냉장육 생산시설을 구비한 업체
 - 가맹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된 식육판매업소(신규업소 포함)
 - 단, 현재 매장면적 12평이상이거나 시설개선후 12평이상일 것
- 사업량 및 사업비 : 25개소, 1,875백만원
 - 1개 업체당 직판점 및 가맹점을 5개소까지 설치(1개업체당 375백만원)
- 사업비 : 개소당 75백만원
 - 12평기준에 의한 단가이며, 12평이상일 경우는 100백만원까지 사용 가능
- 지원조건 :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
- 자금용도 :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진열시설장비 및 인테리어 등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용 자	보 조		
계	개소 167	백만원 10,635	10,635	10,635	-	-	-
○ 일반식육업소	42	1,260	1,260	1,260			
○ 축협·한냉 가맹점	100	7,500	7,500	7,500			
○ 브랜드업체 직판점·가맹점	25	1,875	1,875	1,875			

※내역별 예산은 [별첨1]과 같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일반식육판매업소 시설개선 : 시·군
- 축협·한냉 종합육가공장 가맹점 설치 : 농림부(시행기관 : 축협, 한냉)
- 브랜드육가공업체 직판점 및 가맹점 설치 : 시·도 (브랜드업체 소재지역)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02-504-9436/7)
- 시·도 : 축산과 (농수산유통과, 농정과)
- 시·군·구 : 축산과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 적합여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 자체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량이 배정되면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순위별로 대상자 확정

우선순위

- 일반 식육판매업소 및 축협·한냉·브랜드업체 가맹업소
 - ①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는 업소
 - ② 식육처리기술교육 수료자가 운영하는 업소
 - ③ 업소 매장면적이 큰 업소
 - ④ 사업비중 자부담이 많은 업소
- 브랜드육가공업체
 - ① 진공포장 냉장육 가공설비를 가동중인 업체
 - ② 돼지고기 수출업체, 계열화업체
 - ③ 기존 판매망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망을 확장하는 업체
 - ④ 사업비의 자부담이 많은 업소

선정절차

- 일반식육판매업소 : 기신청업소중 선정기준등을 고려, 배정물량내에서 선정
- 축협·한냉 가맹점 : 기신청업소중 선정기준등을 고려, 배정물량내에서 선정
- 브랜드업체 및 가맹점 : 신청업체중 선정기준등을 고려하여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제출
 - 일반 식육판매업소 :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확정하여 보고(시.도→우리부)
 - 축협.한냉 가맹점 : 축협, 한냉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우리부에 보고
 - 브랜드업체 직판장 및 가맹점
 - : 브랜드업체에서 직판점 및 가맹점 설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우리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여신규정에 의거
 - 일반 식육판매업소 : 시.군.구의 기성고 확인통보에 따라 자금집행
 - 축협, 한냉 종합육가공장 가맹업소 : 축협, 한냉의 기성고 확인 통보
 - 브랜드업체 직판점 및 가맹점 : 시.도의 기성고 확인 통보에 따라 자금집행

마. 기타 사항

- 브랜드업체 가맹점 지원사업은 '97년 첫 시행되므로 '97.2월말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완료 계획임
 - 브랜드업체 가맹점 지원 신청 : 시.도에 신청('97.1월말까지)
 - 시.도의 사업검토 및 대상자 보고 : 농림부에 신청 ('97.2.15까지)
 - 농림부의 대상자 선정 및 예산 배정 : '97.2월말까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주관기관은 반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실시 (의무사항 준수여부)
- 기 간 : 지원자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 사후관리 기관
 - 일반 식육판매업소 : 시.군.구
 - 축협, 한냉종합육가공장 가맹점 : 축협, 한냉
 - 브랜드 육가공업체 직판점 및 가맹점 : 시.도 및 브랜드업체

나. 보고 기타

-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보고(별지1호 서식) : '97.3월말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6. '98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일반 식육판매업소 : 시·군·구
- 축협, 한냉 가맹점 : 축협, 한냉
- 브랜드업체 가맹점 : 브랜드업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시·도에 신청

나. 신청자격

- 일반 식육판매업소 : 매장면적 8평이상인 업소
- 축협, 한냉 가맹업소 : 축협, 한냉의 사업계획서에 의함
- 브랜드업체 가맹업소 : 브랜드업체의 사업계획서에 의함

다. 신청절차

- 일반 식육판매업소 : 희망업소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 축협, 한냉 가맹점 : 희망업소 → 축협, 한냉 → 농림부
- 브랜드업체 직판점 및 가맹점 : 브랜드업체(사업계획서 수립)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관련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기타 필요한 서류

마. 기타사항

- 브랜드업체 가맹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은 '97년부터 첫 시행되므로 신청기한이 '98년도 사업신청시기와 유사하므로 사업신청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람

[별표 1]

'97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 지원계획

구 분	시·도 등	물 량	지원사업비	비 고
○ 일반 식육판매업소		개소	백만원	○ 개소당 단가 : 30백만원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2	60	
	대전	-	-	
	경기	5	150	
	강원	4	120	
	충북	-	-	
	충남	-	-	
	전북	13	390	
	전남	1	30	
	경북	9	270	
경남	8	240		
제주	-	-		
	소 계	42	1,260	
○ 축협·한냉 가맹점	축 협	50	3,750	○ 개소당 단가 : 75백만원
	한 냉	50	3,750	
○ 브랜드업체 가맹점	5개 업체	25	1,875	○ 업체당 5개소 ○ 개소당 단가 : 75백만원
계		167	10,635	

[별지 제1호 서식]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일반 식육판매업소>

1. 신청업소 현황 : 신청업소 → 시.군.구

○ 업소 개요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예정)	업소면적 평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행 : 개선후:		

○ 사업계획

세부시설명	수량	규격	단가	사업비			비고
				계	융자	자담	
계							

○ 운영계획

원료육 구입방법		원료 구입처		판매량		월 판매 예상액	비고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두/월			

※자격기준 여부 및 우선순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2. 대상자선정 보고양식 : 시도 → 농림부

대상자			매장 면적 평	사업비			세부시설내역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계	융자	자담	
			천원				○ 세부시설명 및 금액 기재 예)숙성실(5,000),냉장 고(4,000) 등

<축협, 한냉 가맹업소 대상자선정 보고> : 축협, 한냉 → 농림부

1. 지원대상자 개요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예정)	업소면적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평 현행 : 개선후 :		
계					

2. 사업비 투자현황

업소명	대표자	사 업 비			비 고
		계	응 자	자 담	
		백만원			
계					

※ 사업자별 세부시설내역 첨부

<브랜드업체 가맹업소>

1.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목	가공 능력		브랜드명
				일반가공	진공포장	

※상표등록증 및 진공포장가공설비 사진 첨부

2. 가맹점 설치계획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매장 면적	사업비			비고
				계	유자	자담	
계							

※가맹업소별 세부시설 투자내역 첨부

3. 운영계획

가맹업소 수	이용 도축장	공급제품 종류	월 공급량	업소마진율
			Kg	%

4. 기타

-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

72	축산물품질향상 및 안전성강화(공공)
-1	(돼지고기품질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입니다.

1. 목적

- 비육용 출하돼지의 규격화 생산 지원으로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양돈 산업 발전 도모

2. 추진방향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돼지고기 생산
- 수출용 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수출산업 기반마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지원계획

- 사업비 : ('95)9,250 → ('96)10,800 → ('97)12,000백만원
- 사업량 : ('95)1,542 → ('96)2,700 → ('97)3,000천두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97.1.1-12.31)
- 지원대상
 - 돼지고기품질개선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 단지구성원이 아닌 자로서 농·축협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을 통하여 육가공업체와 규격돈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육가공업체와 단지 또는 조합간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출하(지원 기준에 적합한 돼지)한 농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비육돈 후기사료 또는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기준

- 도체중이 박피기준 67-77kg(탕박기준 77-88kg)인 돼지
-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돼지(TLC 검사에 합격한 돼지)
- 숫돼지의 경우 거세된 돼지
- 규격돈 출하1두당 지원단가 : 4천원(단지 및 조합 공통)

나. '97 사업비(예산)내역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돼지고기 품질개선	천두 3,000	백만원 12,000	12,000	-	12,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504-9434-5, 500-2689)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 : 축산과 또는 산업과(축산계)

다. 생산 및 판매계약체결

-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대표가,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단지참여 농가로부터 월별생산 및 출하계획서를 제출받아 육가공업체와 돼지의 생산 및 출하계약을 체결.
 - 계약체결기한 : '97.1.20일까지
 - 계약내용 : 회원농가별 월별, 생산 및 출하계획두수, 공급가격, 출하돼지의 기준대금 지급방법등

- 단지의 대표, 조합 및 육가공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동 내용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각각 단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1월말까지 보고
- 시·도지사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익년도 2.20까지 현지조사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고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별지제1-1호서식]

< 단 지 >

- 단지대표는 매월 농가별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농가별 출하계획대비 실적을 점검
- 단지구성농가에 종돈 및 사료가 통일되도록 지도 실시

< 단지 및 조합 >

- 사육규모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육가공업체 >

- 육가공업체는 TLC 검사시설을 갖추고 자체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도체중 측량 전자저울이 설치되어 측량자료가 자동으로 출력되어야 함.

- 생산농가가 계열화 업체인 경우에는 계열주체와 수탁사육 농가간에 상호 협의하여 지원자금에 대한 배분기준등을 명시
- 계약체결 내용변경 및 승인
 - 계약체결 대상자가 확정된 후 계약농가의 탈퇴, 추가계약대상자 발생 등으로 기존 계약체결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단지 및 육가공업체의 계약체결내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하며 단지 및 육가공업체에 통보하고 시·도의 신고 수리후 계약사항 이행

라. 돼지의 출하 및 검사

- 육가공업체는 출하한 돼지에 대한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TLC)와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기준 검사결과를 매월 5일 이내에 계약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내역은 5년간 비치하여야 함.

- 육가공업체 식품위생관리인(자체검사원)이 동물검역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유해잔류물질검사(TLC)를 실시
 - 도체중 검사는 도체중 측정시 전자저울로 측정결과가 자동적으로 계측되어 출력되는 기계를 활용하고 계측결과 및 수태지 거세여부를 검사
- 자체검사원이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확인한다.

마. 사업비 지원요령

- 계약자는 육가공업체로 부터 [별지제2호 및 3호서식]에 의한 TLC 검사 및 지원기준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매월10일 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사업비 내용과 육가공업체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동내용을 매월 20일 이내에 사업비를 교부결정하고, 농가별 내역을 축협중앙회장과 계약자에게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의 사업비 교부결정 통지에 의거 분기별로 계약자(단지대표 또는 축협조합장)에게 사업비 교부결정액을 지급
- 단지대표 및 축협조합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비육돈 후기용 사료 또는 현금으로 출하농가에 공급(지급)
- 사업비 사용결과보고
 - 계약자는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사업비 운용내역을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계약자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반기 실적을 7.20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익년 1.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제5호서식]

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

< 단지, 농가 >

- 단지주체는 단지구성 농가에 대한 전산관리 지도실시

- 농가별로 번식돈 경영 기초자료의 입력 및 주간단위 농장 기록을 입력
- 동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주간작업 지시 및 월간생산 분석 자료를 출력하여 농가별 지도
- 단지구성 농가의 종돈 및 사료통일 지도
- 비육돈후기(휴약사료) 사료를 급여하고 월1회 이상의 기술교육 실시
- 단지주체와 원료돈 생산·공급 계약체결 사항 이행

< 육가공업체 >

- 계약자와 원료돈 생산·공급 계약체결 사항의 이행
- 지원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공정한 검사실시
- 계약자에게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급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계약자 및 시·도지사에게 기한내 제출
- 사업비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작성 보관
- 육질이 불량한(색깔,연도,삼출물등) 돼지고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도축·가공 기술향상 및 계약단지에 대한 사양관리 기술지도 실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단지(조합) 및 육가공업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수시 지도·확인 실시
 -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조치
- 육가공업체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단지(조합)에 통보 및 시·도에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차년도 계약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육가공업체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함.

나. 보고

보고 내용	보고 기 한	보고 기 관
○ 돼지생산 및 판매계약체결 결과 [별지제1-1호서식]	'97.2월말	시·도 → 농림부
○ 사업비 운용내역 보고 [별지제5호서식]	상반기 : 7. 20일까지 하반기 : 익년1.20일까지	시·도 → 농림부
○ 사업비 정산보고 [별지제6호서식]	사업종류후 20일 이내	축협중앙회 → 농림부

[별지제1호서식]

돼지생산 및 출하계약 결과

< 단지(조합)보고서식 >

- 단지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계약체결내용

육가공업체명	출하도축 가공장명	생산농가별 계약현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약두수		
					월간	년간	
계							

주) 돼지생산공급계약서 첨부

< 육가공업체 보고서식 >

- 육가공업체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단지(조합)과 계약체결내용

출하도축 가공장명	단지(조합) 명	생산농가별 계약현황					가공계획량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계약두수		월간	년간
					월간	년간		
계								

주) 1. 돼지생산공급계약서 첨부

2. 출하도축·가공장별 생산공급계약 소계 기재
3.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TLC 검사, 지육측정, 전자저울등) 및 인력(식품위생관리인) 현황을 출하도축·가공장별로 첨부
4. 육가공업체에서 이용하는 출하도축·가공장별 소재재, 대표자, 처리능력 등 현황 첨부

[별지제1-1호서식]

돼지생산 및 출하계약 결과

(시·도 → 농림부 보고)

(단위 : 두)

		육가공업체명						합계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단지	○○단지 · (소계)							
조합	○○조합 · (소계)							
합계								

[별지제2호서식]

유해잔류물질검사(TLC) 결과

- 검사번호 : 제 호
- 검사일자 : 199. . .

	단지(조합)명	농가명	도축두수	TLC 검사두수	검사결과		비고
					부적합	적합	
수출용							
내수용							
계							

상기와 같이 유해잔류물질검사(TLC)를 실시하였음.

199 . .

검사자 (업체자체검사원) : 소속 직위 성명 (인)
 수출용확인자(검역관) : 소속 직위 성명 (인)
 내수용확인자(도지사가지정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제3호서식]

지 원 기 준 검 사 결 과

- 육가공업체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검사번호 : 제 호
- 검사일자 : 199. . .

	단지 (조합) 명	농가 명	도축두수			TLC 적합 두수	지육체중 적합두수			수태지 거세실 시두수	지원기 준합격 두수
			암	수	계		암	수	계		
수출용											
내수용											
계											

상기와 같이 지원기준 합격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

199 . . .

검 사 자 (업체자체검사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업 체 대 표) : 업체명 대표자 (인)

확 인 자 (도지사가지정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주) 유해잔류물질검사(TLC) 결과서 [별지제2호서식] 첨부

[별지제4호서식]

사 업 비 지 급 신 청 내 역

- 단지(조합)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업비 신청내용

육가공 업체명	출하도축 가공장명	사 업 비 지 급 신 청 현 황				
		농가명	출하두수	지원기준 합격두수	신청금액	비 고
계						

(주)육가공업체로부터 통보받은 [별지제2호 및 3호서식] 의 관련서류 첨부

[별지제5호서식]

()분기 사업비 운용내역

가. 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신청기준)

단지(조합)명	사 업 비 신 청				사료공급내역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지원두수	금 액	지원두수	금 액		
<단지명>	두	천원			톤	
계						
<조합명>						
계						
합 계						

나. 단지, 조합 및 육가공업체별 출하두수 및 합격내역

(단위 : 두, 천원)

단 지	○○ 단 지	출하두수 합격두수 지 원 액	○○ 업체		○○ 업체		○○ 업체		○○ 업체		합 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금회	누계
단 지	○○ 단 지	출하두수 합격두수 지 원 액										
	○○ 단 지	출하두수 합격두수 지 원 액										
조 합	○○ 조 합	출하두수 합격두수 지 원 액										
	○○ 조 합	출하두수 합격두수 지 원 액										
합 계		출하두수 합격두수										

※ [별지제4호서식] 에 의한 사업비 신청내역(단지 또는 조합) 참고로 하여 작성

[별지제6호서식]

사업비지원 실적보고

시·도	단 지 (조합)명	시·도 신청내역		집 행 실 적		비 고
		합격두수	신청금액 천원	지원두수	신청금액 천원	
경 기	단 지	두	천원	두	천원	
	·					
	(소 계)					
	조 합					
강 원	·					
	(소 계)					
	조 합					
	·					
	(소 계)					
	계					
	·					
	·					
합 계						

72 -2	축산물품질향상 및 안전성강화(공공) (규격돈구매자금)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돼지고기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높혀 국내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을 확대하므로써 안정적인 양돈경영 유도

2. 추진방향

-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증진
- 돼지고기 가공업체 육성
- 축협, 한냉의 종합육가공장 운영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지원계획

		계	'92-'95	'96	'97(예산)	'98	'99-2004
사 업 량(천두)		38,431	-	1,431	3,000	4,000	30,000
사업비	계	백만원 1,149,734	-	42,358	87,375	120,000	900,000
	용 자	459,550	-	16,600	34,950	48,000	360,000
	자부담	690,184	-	25,758	52,425	72,000	540,000

※ 종합육가공장원료구매자금 통합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97.1.1-12.31)

- 지원대상 : 돼지고기품질개선사업에 의거 단지(조합)와 규격돈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축협, 한냉의 경우 일반농가와 개별계약 체결한 경우 포함)로서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원에 한함
- 지원단가 : 규격돈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의 30~40% 용자
- 지원기준 및 조건
 - 돼지고기품질개선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돼지를 구매한 경우에 지원[도체중이 67-77kg(탕박기준77-88)인 돼지,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한 돼지, 숫돼지의 경우 거세된 돼지]
 - 단, 축협, 한냉의 경우 일반농가와 개별계약 체결하여 구매한 물량 포함

나. '97 사업비(예산)내역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안(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규격돈	천두 3,000	백만원 87,375	34,950	34,950	-	-	52,425

※ 용자조건 : 연리5%, 1년거치후 일시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한국육류수출입협회(02-515-2306)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돼지고기품질개선사업에 의거 단지(조합)와 규격돈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축협, 한냉의 경우 일반농가와 개별계약한 경우 포함)로서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원에 한함
- 동 업체중 규격돈 구매 및 돼지고기 수출계획이 수립된 업체

○ 선정절차

-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육류수출입협회(축협, 한냉은 농림부에 제출)에 제출
- 한국육류수출입협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 검토후 농림부와 사업희망업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
- 농림부는 업체별 사업비를 배정하고 시·도지사 및 협회에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비를 배정받은 업체는 세부사업계획(월별 구매·수출·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즉시 농림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는 사업비 신청내용에 대하여 업체별사업비 배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육류수출입협회장은 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타용도로 전용되거나 허위보고 또는 구매실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농림부에 자금회수 요청
- 업체별 규격돈 구매실적을 분석하여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고를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에 자금배정시 감액배정등 불이익 처분

나. 보고, 기타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취합하여 2.10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자는 분기별 규격돈구매실적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시·도지사 및 협회에 보고
 - 시·도지사는 돼지고기품질개선사업의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육가공업체에서 보고한 규격돈 합격두수 통보내역과 비교·확인후 필요한 조치 강구

- 협회는 육가공 업체의 분기별 보고내용을 분석정리하고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상반기 실적은 7.20일까지, 하반기실적은 익년 1.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6. '98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육류수출입협회(02-515-2306)

나. 신청자격 : 돼지고기품질개선사업의 단지(조합)와 규격돈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축협, 한농 포함)로서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회원에 한함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제출

라. 구비서류(사업계획서)

- 회사개요
- 돼지고기 수출실적 및 당해년도 계획(월별계획)
- 전년도 규격돈 구매계획 대비 실적(월별)
- 당해년도 규격돈 구매계획
 - 단지(조합)별 규격돈 생산·출하 계약체결사항
- 잔여육처리 및 판매계획등

마. 사업비배정 : 농림부는 사업계획 신청내용에 따라 업체별 사업비 배정

[별지제1호서식]

규격돈 구매실적(분기)

(업체보고서식)

업체명 : (대표자 :), 전 화 : 담당자 :

자금대출 : 금액 천원, 대출일 :

돼지구매실적

	연간계약 두수 (천두)	총 구매두수(두)						총소요자 금(천원)
		규 격 돈		일 반 돈		계		
		금분기	누계	금분기	누계	금분기	누계	
합 계								
<단지 >								
소 계								
<조합>								
소 계								

※ 작성요령

1. 계약두수 :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에 의거 단지·조합과 출하계약된 두수기재
2. 규격돈 : 돼지고기품질개선사업에 의거 규격돈으로 합격된 돼지
- 돼지고기품질개선지원사업비에 의거 시·도지사에 보고한 규격돈 합격두수
3. 일반돈 : 규격돈 이외에 자체에서 구매한 돼지(축협, 한냉의 경우 일반농가와 개별계약 체결하여 구매한 두수 포함)
4. 소요자금 : 규격돈 및 일반돼지를 포함하여 총구매에 소요된금액 기재

[별지제2호서식]

규격돈 구매실적(분기)

□ 업체별 구매실적

업체명	연간계약 두수 (천두)	총 구매두수(두)						총소요자 금(천원)
		규격돈		일반돈		계		
		금분기	누계	금분기	누계	금분기	누계	
합계								
○○업체								
○○업체								
○								
○								
○								
○								

72 -3	축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선 강화(공공) (축산물등급판정)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I. 등급판정소 운영

1. 목 적

- 육류도체에 육질·육량에 의한 객관적인 등급부여로 도매단계에서 상장·경매에 의한 등급별 차등가격 형성 및 소매단계의 등급별 소비자 가격제도 정착
- 양축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로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내산 육류의 품질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등급제 의무거래지역 확대 실시
 - '95년 : 광역시이상 대도시지역 및 제주도
 - '96년 : 전국 71개 시·군 지역(소 전두수 등급판정)
 - '97년 : 시·도지사 요청시 추가 확대실시계획
- 소매단계의 등급제 연계를 위해 소비자·유통종사자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4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	1	(1)	(1)	
사업비	계	27,915	13,624	6,506	7,785		
	보조	27,915	13,624	6,506	7,785		
	융자	-	-	-	-		
	지방비	-	-	-	-		
	자부담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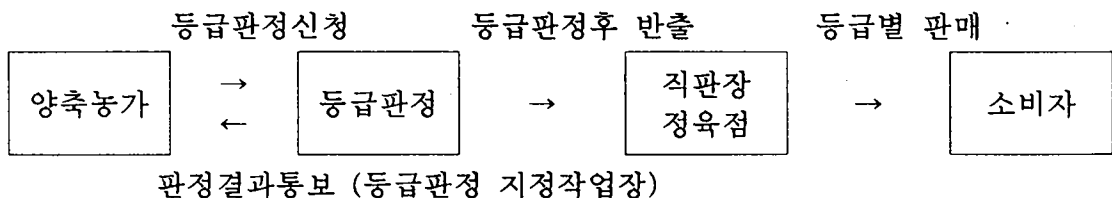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축산물등급판정을 주관하고 있는 등급판정소의 인건비, 관리비, 교육홍보비 고정자산 확보등을 지원하여 등급판정사업을 원활히 추진
 - 등급판정대상 및 등급기준 : 소, 돼지의 도체(소 10개등급, 돼지 5개등급)
 - 축산물 등급화 의무거래 고시지역 사후관리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 지원규모 및 조건 : 인건비, 관리비, 고정자산등을 기금사업으로 보조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인건비, 관리비, 고정자산등	1	백만원 7,785	7,785	-	-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Tel : 02-504-9436~7)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Tel : 02-574-2541~3)
- 등급판정절차



- 미등급판정 육류 부정유통단속 철저
 - 소도체는 전량 예냉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후 고시지역으로 반출하도록 조치
 - 미등급판정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가 고시지역으로 반입 또는 거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의법조치할 것
-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충분한 홍보·지도 실시
 -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소매단계까지 등급제의 연계를 위해 교육·홍보 및 지도강화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월별 등급판정실적을 익월 10일 이내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6 '98년 사업신청안내

- 축협중앙회 등급판정소에서 '98년 예산을 농림부에 일괄 신청

II. 우수축 출하포상금

1. 목 적

- 축산물등급제 조기정착 및 고급육 생산증대를 위하여 우수축 출하유도
- 육질에 따른 차등가격제를 유도하여 국내산 육류의 소비자인식 제고

2. 추진방향

- 우수축 출하율을 확대하여 고급육 생산 및 육질개선
 - 한우 1등급 출현율 목표 : ('95) 12.8% → ('96) 20% → (2000년) 40%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43조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4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33,317두	7,546	5,471	20,300		
사업비	계	2,357	812	602	1,056		
	보조	2,357	812	602	1,056		
	지방비	-	-	-	-		
	자부담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매시장, 공판장 및 등급판정시행도축장으로 소(암소제외)를 출하하여 등급판정 결과 A-1, B-1인 경우 출하자에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장소 : 지정 지역축협 및 농협
 - 지급기한 : 등급판정결과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장기간 미수령자 방지)
 - 사업기간 : '97.1~12월
- 지원대상 : 우수축을 출하한 도축신청 의뢰자(당일 등급판정분은 제외)
- 지원규모 및 조건 : A-1 200천원, B-1 50천원(암소제외)
- '97사업(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0,300두	백만원 1,056	1,056	1,056	-	-	-
A-1	4,060	528	528	528	-	-	-
B-1	16,240	528	528	528	-	-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Tel : 02-504-9436~7)
축산물등급판정소(Tel : 02-574~2541~3)
 - 시·도 : 축산과(농수산유통과, 농정과)
 - 시·군·구 : 축산과(산업과 축산계)
- 대상자선정
 - A-1, B-1 등급을 받은 소를 출하한 자
- 사업시행체계(포상금 신청 및 지급체계도 : 별표1 참조)
 -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소 도체등급판정결과 A-1, B-1등급이 나온 경우에는 축협 중앙회, 등급판정신청인, 출하자 주소지의 지역축협에 등급판정 결과를 즉시 통보하되 농협 계통출하분은 관할 농협에 통보
 - A-1, B-1등급을 받은 소를 출하한 자는 등급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3개월이내에 해당 지역축협 및 농협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축협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 즉시 지급
 - 포상금을 가지급한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10일간격으로 아래양식에 의거 포상금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신청

< 포상금 지급명세서 >

등급판정 장소	판정 일자	출하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급판정 결과	지급액 (지급일자)	도체번호

※ 축산물등급판정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7 동산빌딩 5층(Tel : 574-2541~3)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조속히 포상금을 지급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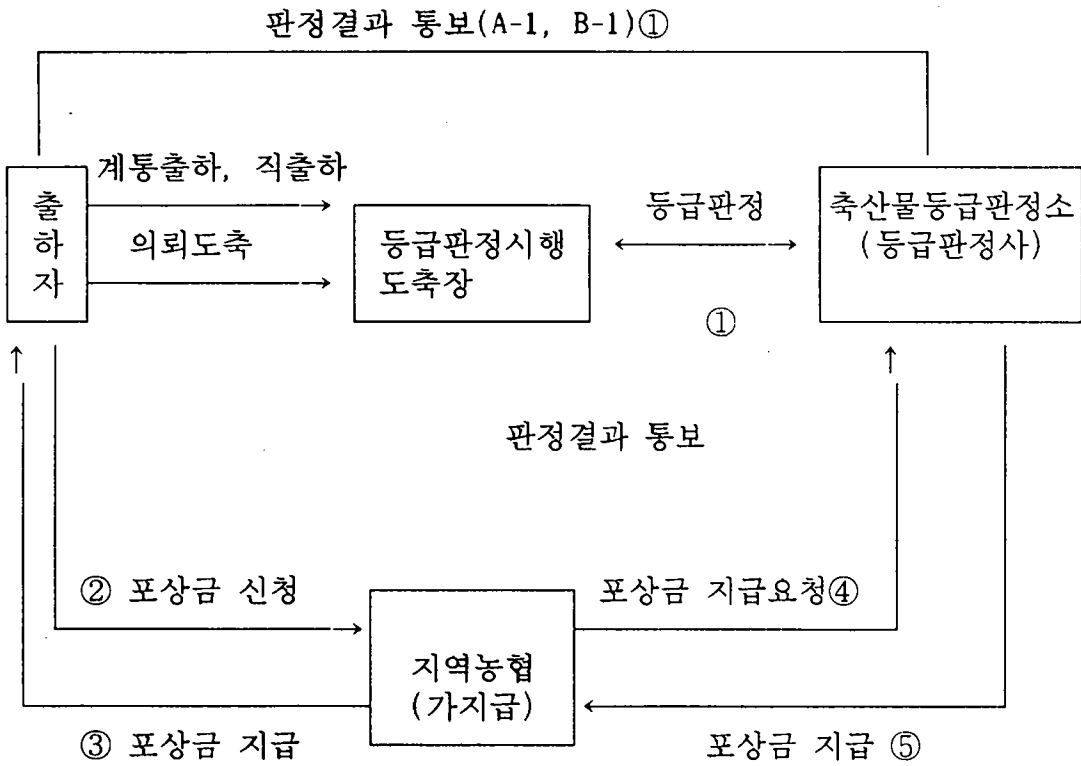
-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 포상금 지급실적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이내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후 20일이내

6. '98년사업 신청안내

- 축협중앙회 등급판정소에서 '98년 우수축 출하포상두수 및 금액에 대한 세부 예산을 농림부에 일괄 신청

[별표1]

포상금 신청 및 지급체계



72 -4	축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 (공공) (식육처리전문인력 양성)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식육의 처리, 가공,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인력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집중 양성하여 육류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 육류의 표준규격 및 진공포장 냉장육의 생산, 판매기술 개발

2. 추진방향

- 식육기술훈련원을 식육처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식육처리기술교육 실시하여 젊고 유능한 식육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육류유통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2,310	270명	180	180	240	1,440
사 업 비	계	백만원 3,945	680	450	365	350	2,100
	보 조 음 자 지방비 자부담	3,945	680	450	365	350	2,1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교육주관 : 축협중앙회
- 교육대상 : 도축장, 육가공업체, 식육유통업체, 식육판매업소 및 관련단체, 생산자단체 종사자 등
- 교육인원 및 회수 : 180명 (6회 : 1회당 30명)
- 교육기간 : 1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초반, 판매점반

- 교육방법 : 이론교육 및 실습 (실기위주 교육)
- 교육장소 : 식육기술훈련원 (경기 안성군)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지원규모 및 조건
 - 교육비는 축발기금에서 보조 : 인건비, 강사료, 사무용품, 기타 운영비용
 - 원료육 소모비, 개인장비비, 숙식비는 교육생 부담
- 교육생 수강료 : 1인당 505천원(1개월과정 기준)
 - 원료육 소모비, 개인장비 구입비 (숙식비는 별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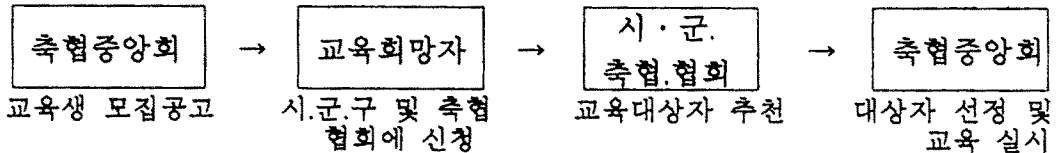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80명	365 백만원	365	365	-	-	-
○ 식육처리전문 인력 양성	180명	365	365	36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시행체계



○ 신청 접수처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 축협중앙회 유통부 식육교육팀

○ 신청방법

- 개인신청자 : 축협중앙회(도지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육가공협회, 백화점협회, 슈퍼체인협회 회원사 : 해당 협회에 신청
- 축협, 농협직원 : 소관부서장이 대상자 추천하여 축협중앙회에 신청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신청장소에서 배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02-504-9436/7)
- 시·도 : 축산과
- 시·군·구 : 축산과 (산업과 축산계)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상, 하반기 교육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기초반 : 수출육가공업체>생산자단체>도축장·육가공업체·식육유통업체 등
 - 판매점반 : 한우전문판매점>식육유통·판매업체>생산자단체 등

○ 선정절차

- 교육신청 및 추천 → 대상자 선정
 - 개인 신청자
 - 추천기관 → 신청자

라. 사업시행

- 선정된 교육대상자는 축협중앙회의 교육등록안내서에 의거, 교육생 수강료 및 교육등록을 필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에서는 교육수료자에 대한 보수교육, 동향 파악, 업계 기여도 등 사후관리를 하시기 바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 고정자산	'97년	2002년	사업완료후 5년	

나. 보고 기타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교육 및 자급집행 실적을 매분기익월 15일 이내
- 교육결과 및 정산 보고 : 교육완료후 20일 이내

72 -5	축산물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공공) (폐사축 위생처리)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 입니다.

1. 목적

농가의 죽은소 매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절박도축으로 둔갑되어 시중에 부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2. 추진방향

죽은소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죽은소는 소각하고 농가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 '97년 : 3,200백만원 (축산기금 보조), 4개소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죽은소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대형 소각로 건설을 축협중앙회(또는 지역축협) 주관 아래 실시

	설 치 장 소	적 용 지 역
서울·경기권	안성,이천,화성지역 축협중 1개소 선정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충청권	대전,청주 인근지역 축협중 1개소 선정	대전,충북,충남지역
전라권	나주공판장 건설	광주,전북,전남지역
경상권	고령공판장 건설	부산,대구,경남,경북지역

- 설치내용
 - 대형소각로(500kg/시간당) 설치 : 20억원(5억 × 4기)
- 폐사축 수송차량(무개차량) 지원(소각로당 2대)
- 무개차 8대 : 2억원(25백만원 × 8대)
 - 농가에서 소를 사육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 소각장에 신고하면 수송차량으로 운송
- 폐사축 보전금 지급
- 세부실시요령은 소각장 설치완료시 추후시달

나. '97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량
계		3,200백만원
소각로 건설	4개소	2,000백만원
수송차량 구입	8 대	200백만원
보전금 지급	3,665두	1,00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 지원형태 및 조건
 - 소각장 설치 및 무개차 구입 : 축발기금 100%보조
 - 인건비 및 운영비 : 축협부담
- 설치추진
 - 설치계획 4개소중 '96년중에 2개소를 착공 추진
설치예산 10억원 (개소당 5억원 : 건축비 포함)
- 폐사축 보전금 지급 관련 세부요령은 추후시달

72 -6	축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공공) (가축방역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 입니다.

1. 목 적

- 주요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절감,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성 제고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
- 인수공통전염병 피해예방을 위한 혈청검사·검진사업 확대실시로 국민보건 향상

2. 추진방향

-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 전염병 조기근절을 위한 예방주사 및 검진물량 대폭 확대실시
- 지역별·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
 - 지역축협, 양축농가단체, 계열주체농가, 전기업 양축농가, 공·개업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지역방역센터로 육성·지원
 - 가축방역 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및 의식교육 강화
 - 병성감정 전문인력 양성 및 정밀검사장비 지원 확대
 - 기동방역진료차량 지원으로 현지 긴급방역 조치등 초동방역 실시
- 도축장·도계장의 방역관리 강화 및 혈청검사 확대실시
 - 도축장·도계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로 발생농장 추적조사 및 신속한 방역조치
 - 가축수송차량 소독시설과 닭 수송용기를 지원하고 도축장·도계장 소독 실시 의무화로 농장간 전염병 전파방지

- 종돈장, 종계장 위생관리 강화
 - 위생·방역관리우수농장등급인증제 시행으로 종축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 근원적 차단
- 가축질병예찰업무 강화로 선진 방역대책 추진
 - 관내 공수의, 동물약품판매업소등을 적극 활용한 예찰업무 활성화
 - 양축농가에 적기 예방 실시 홍보 강화
- 병성감정실시기관 확대지정 및 진단액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질병진단 편의도모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신규개발 보급 및 품질개선으로 가축질병 피해예방 효과 거양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비용의 부담) 및 제34조(보상금)
 - 주사, 검사, 투약, 소독 실시 소요비용 : 국비 50% 이상 부담
 - 살처분보상금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시설, 장비 보조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 수당과 여비를 지급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수·건, 백만원)

구분	계	'97	'98	'99	'00	'01	'02
사업량	3,817,051	320,736	416,408	541,330	703,729	914,848	920,000
사업비	계	245,375	19,075	39,200	43,200	45,400	49,000
	국고보조	182,076	13,576	29,700	32,800	33,600	36,000
	지방비	63,299	5,499	9,500	10,400	11,800	13,100

5. '97년도 사업실시요령

<사업개요>

가. 가축방역사업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예방주사	315,617천두	6,230,850	4,265,000	1,965,850	
검진	795	886,550	502,220	384,330	
기생충 구제	2,490	1,562,000	1,093,400	468,600	
가축혈청검사사업등	1,164천건	830,430	830,430	-	
오제스키병근절사업	300	570,000	510,000	60,000	
긴급방역비	-	533,950	533,950	-	
유방염방제사업	60	180,000	180,000	-	
소 계	320,426	10,793,780	7,915,000	2,878,780	
살처분보상금	310천두(수)	3,000,000	3,000,000	-	
공수의수당등	252명	1,521,340	761,020	760,320	
수의사 연수교육	400명	40,000	40,000	-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ELISA Reader	15대	420,000	210,000	210,000	
- 소각로	16기	2,880,000	1,440,000	1,440,000	
- 기동방역진료차량	28대	420,000	210,000	210,000	
소 계	59대(기)	3,720,000	1,860,000	1,860,000	
합 계	320,736	19,075,120	13,576,020	5,499,100	

나.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1) 목적

- 예방주사 : 급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 및 공중위생 향상
- 검진 : 우결핵, 부루세라등 만성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을 실시, 양성축을 살처분 또는 도태하여 가축전염병 근절 유도
- 구제 : 가축에 기생하는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2) 사업집행기관 : 시·도지사

3) 사업시행기관

-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 : 시장·군수
- 검진·혈청검사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4) 사업시행절차

- 예방주사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약품등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대상농가의 가축에 예방주사 실시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예방약품을 해당 사업단에 지원)

※ 예방약품등의 구입은 시도 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할 수 있음.

-예방주사별 세부내역 “별첨1”(탄저, 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 오제스키병, 광견병, 진도견디스토펜퍼등(DHPPL), 뉴캐슬병)

- 검진 :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전염병별 검사 실시(채혈후 실험실 검사 또는 진단액 접종등)

-검진내역별 세부내역 “별첨2”(우결핵, 부루세라(MRT), 부루세라(Plate) 부루세라(Rose-Bengal), 소간질, 추백리)

- 구 제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구제약품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지원(지역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구제약품을 해당 사업단에 지원)

※ 구제약품의 구입은 시도 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할 수 있음

- 질병별 구제사업 세부내역 “별첨3”(소진드기, 소간질충, 꿀벌응애류)

5) 사업비 지원

- 농림부장관이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거 매월 사업비를 시도에 재배정

6) 사업실적 보고

- 보고기한 : '98. 1. 15까지
- 보고서식 : 가축방역사업 실적보고에 의함

7) 사업별 세부 실시요령
 < '97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 >

(단위 : 천두수, 천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예방주사	소	탄저·기종저(혼합)	1,600	224,000	100,800	123,200
		전염성비기관염	312	483,600	327,600	156,000
		유행열	285	584,250	399,000	185,250
		아까바네병	108	383,400	264,600	118,800
	돼지	돼지콜레라	9,000	1,260,000	567,000	693,000
		일본뇌염	1,200	420,000	252,000	168,000
		돼지전염성위장염	600	270,000	168,000	102,000
		돼지오제스키병	1,000	550,000	350,000	200,000
	개	광견병	1,500	525,000	315,000	210,000
		진도견디스토펜등(DHPPL)	12	30,600	21,000	9,600
닭	뉴캐슬병	300,000	1,500,000	1,500,000	-	
소 계			315,617	6,230,850	4,265,000	1,965,850
검진및 진단액 구입	소	우 결 핵	380	304,000	266,000	38,000
		부루세라(MRT)	120	48,000	42,000	6,000
		부루세라(Plate)	35	15,750	12,250	3,500
		부루세라(Rose-Bengal)	70	484,400	157,570	326,830
		소 간 질	10	2,000	1,000	1,000
	닭	추 백 리	180	32,400	23,400	9,000
소 계			795	886,550	502,220	384,330
기생충 구제	소	진 드 기	1,700	85,000	59,500	25,500
		간 질 충	140	112,000	78,400	33,600
	꿀벌	용애류	650	1,365,000	955,500	409,500
	소 계			2,490	1,562,000	1,093,400
가축혈청검사사업등			1,164천건	830,430	830,430	-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300	570,000	510,000	60,000
유방염 방제사업			60	180,000	180,000	-
긴급방역비			-	533,950	533,950	-
합 계			320,426	10,793,780	7,915,000	2,878,780

(가) 시·도별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량(총괄)

(단위 : 천두·수)

구분	총 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 기종 저 (혼합)	소전 염성 비기 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 까 바 네 병	돼지 콜레 라	돼지 일본 뇌염	돼지 전염 성위 장염	돼지 오제 스키 병	광 견 병	진디 도스 견템 퍼	뉴 켓 슬 병
서울	62.7	42.4	0.4	-	-	-	1	1	-	-	40	-	-
부산	454.4	438.6	2.6	-	-	-	60	50	6	-	20	-	300
대구	1,149.2	1,118.6	15	2	1	0.6	70	14	6	-	10	-	1,000
인천	613.8	586	18	3	2	1	200	24	8	10	20	-	300
광주	1,069.7	1,050.5	4	3	1.5	1	25	8	4	-	4	-	1,000
대전	2,049.6	2,027.9	1	3	0.5	0.4	10	6	2	2	3	-	2,000
경기	94,476.6	94,033	250	35	20	20	2,684	130	174	400	320	-	90,000
강원	5,822.4	5,138	120	30	10	10	250	30	20	28	140	-	4,500
충북	20,929	20,785	90	35	40	10	400	50	20	30	110	-	20,000
충남	95,428	95,159	294	40	45	15	1,500	285	100	330	150	-	92,400
전북	61,551.5	61,375	130	25	30	10	800	110	30	50	190	-	60,000
전남	10,707	10,519	160	40	35	12	800	170	70	50	170	12	9,000
경북	15,066.3	14,833	300	50	60	13	1,100	100	60	50	100	-	13,000
경남	8,014	7,587	180	40	40	15	800	182	80	50	200	-	6,000
제주	2,039.1	924	35	6	-	-	300	40	20	-	23	-	500
수과연 (중앙)	53.5	-	-	-	-	-	-	-	-	-	-	-	-
계	319,486.8	315,617	1,600	312	285	108	9,000	1,200	600	1,000	1,500	12	300,000

(단위 : 천두 · 수)

구분	검진							구제			가검 측사 혈사 청업	유방 방제 염사 업	오근 제절 스사 키업 병
	소계	우 결 핵	부루 세라 (MRT)	부루 세라 (Plate)	부루 세라 (Rose- Bengal)	소 간 질	추 백 리	진 드 기	간 질 총	골 별 용 애			
서울	2.3	0.2	2	0.1	-	-	-	-	-	8	2	-	8
부산	4.2	2	2	0.2	-	-	-	-	-	5	3.6	-	3
대구	9.1	4.8	3	0.3	-	-	1	-	-	14	3.6	0.5	3.4
인천	12	7	4	0.5	-	-	0.5	-	2	4	3.6	1	5.2
광주	4.1	2	2	0.1	-	-	-	-	1	7	3.6	0.5	3
대전	4.1	1	2	0.1	-	-	1	-	1	9	3.6	-	4
경기	268	143	41	8	-	2	74	-	21	45	21.6	18	70
강원	34	20	8	3	-	1	2	500	25	87	18	5	15.4
충북	40	20	6	3	-	1	10	-	5	55	18	4	22
충남	125.4	61	18	5.4	-	1	40	-	4	50	21.6	8	60
전북	62.5	22	9	5.5	-	1	25	-	13	56	18	5	22
전남	41	22	6	2	-	1	10	-	35	60	18	4	30
경북	59.3	36	7	3.8	-	2	10.5	-	10	117	18	5	24
경남	55	36	10	3	-	1	5	200	20	105	18	5	24
제주	74	3	-	-	70	-	1	1,000	3	28	3.6	0.5	6
수과연 (중앙)	-	-	-	-	-	-	-	-	-	-	50	3.5	-
계	795	380	120	35	70	10	180	1,700	140	650	224.8	60	300

(나) 시·도별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국비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계	탄저기종저(혼합)	소전염성비기관염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오제스키병	광견병	진디도스견탐퍼	뉴캐슬병
서울	36,633.2	8,698.2	25.2	-	-	-	63	210	-	-	8,400	-	-
부산	39,743.8	21,823.8	163.8	-	-	-	3,780	10,500	1,680	-	4,200	-	1,500
대구	57,850	22,045	945	2,100	1,400	1,470	4,410	2,940	1,680	-	2,100	-	5,000
인천	67,294	38,614	1,134	3,150	2,800	2,450	12,600	5,040	2,240	3,500	4,200	-	1,500
광주	41,052	18,167	252	3,150	2,100	2,450	1,575	1,680	1,120	-	840	-	5,000
대전	44,128	18,673	63	3,150	700	980	630	1,260	560	700	630	-	10,000
경기	1,429,592	1,031,812	15,750	36,750	28,000	49,000	169,092	27,300	48,720	140,000	67,200	-	450,000
강원	402,190	166,910	7,560	31,500	14,000	24,500	15,750	6,300	5,600	9,800	29,400	-	22,500
충북	465,920	297,820	5,670	36,750	56,000	24,500	25,200	10,500	5,600	10,500	23,100	-	100,000
충남	1,229,352	951,622	18,522	42,000	63,000	36,750	94,500	59,850	28,000	115,500	31,500	-	462,000
전북	722,565	540,240	8,190	26,250	42,000	24,500	50,400	23,100	8,400	17,500	39,900	-	300,000
전남	562,280	355,380	10,080	42,000	49,000	29,400	50,400	35,700	19,600	17,500	35,700	21,000	45,000
경북	678,285	397,850	18,900	52,500	84,000	31,850	69,300	21,000	16,800	17,500	21,000	-	65,000
경남	621,960	346,610	11,340	42,000	56,000	36,750	50,400	38,220	22,400	17,500	42,000	-	30,000
제주	301,375	48,735	2,205	6,300	-	-	18,900	8,400	5,600	-	4,830	-	2,500
수과연	530,030	-	-	-	-	-	-	-	-	-	-	-	-
(중앙)													
계	7,230,250	4,265,000	100,800	327,600	399,000	264,600	567,000	252,000	168,000	350,000	315,000	21,000	1,500,000

(단위: 천원)

구분	검진							구제			가검 축사 혈사 청업	유방 방제 염사 업	오근 제절 스사 키업 병
	소계	우 결 핵	부루 세라 (MRT)	부루 세라 (Plate)	부루 세라 (Rose- Bengal)	소 간 질	추 백 리	진 드 기	간 질 층	꿀 벌 용 애			
서울	875	140	700	35	-	-	-	-	-	11,760	1,700	-	13,600
부산	2,170	1,400	700	70	-	-	-	-	-	7,350	3,300	-	5,100
대구	4,645	3,360	1,050	105	-	-	130	-	-	20,580	3,300	1,500	5,780
인천	6,540	4,900	1,400	175	-	-	65	-	1,120	5,880	3,300	3,000	8,840
광주	2,135	1,400	700	35	-	-	-	-	560	10,290	3,300	1,500	5,100
대전	1,565	700	700	35	-	-	130	-	560	13,230	3,300	-	6,800
경기	127,070	100,100	14,350	2,800	-	200	9,620	-	11,760	66,150	19,800	54,000	119,000
강원	18,210	14,000	2,800	1,050	-	100	260	17,500	14,000	127,890	16,500	15,000	26,180
충북	18,550	14,000	2,100	1,050	-	100	1,300	-	2,800	80,850	16,500	12,000	37,400
충남	56,190	42,700	6,300	1,890	-	100	5,200	-	2,240	73,500	19,800	24,000	102,000
전북	23,825	15,400	3,150	1,925	-	100	3,250	-	7,280	82,320	16,500	15,000	37,400
전남	19,600	15,400	2,100	700	-	100	1,300	-	19,600	88,200	16,500	12,000	51,000
경북	30,545	25,200	2,450	1,330	-	200	1,365	-	5,600	171,990	16,500	15,000	40,800
경남	30,500	25,200	3,500	1,050	-	100	650	7,000	11,200	154,350	16,500	15,000	40,800
제주	159,800	2,100	-	-	157,570	-	130	35,000	1,680	41,160	3,300	1,500	10,200
수과연 (중앙)	-	-	-	-	-	-	-	-	-	-	519,530	10,500	-
계	502,220	266,000	42,000	12,250	157,570	1,000	23,400	59,500	78,400	955,500	679,630	180,000	510,000

(다) 시·도별 예방주사 검진 및 구제사업 지방비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총 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 저 기종저 (혼합)	소 전염 성비 기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 까 바 네 병	돼 지 콜 레 라	돼 지 일 본 뇌 염	돼 지 전 염 성 위 장 염	돼 지 오 제 스 키 병	광 견 병	진 디 도 스 견 템 퍼
서울	12,617.8	5,847.8	30.8	-	-	-	77	140	-	-	5,600	
부산	19,710.2	15,640.2	200.2	-	-	-	4,620	7,000	1,020	-	2,800	
대구	23,445	13,235	1,155	1,000	650	660	5,390	1,960	1,020	-	1,400	
인천	35,221	30,206	1,386	1,500	1,300	1,100	15,400	3,360	1,360	2,000	2,800	
광주	13,728	8,168	308	1,500	975	1,100	1,925	1,120	680	-	560	
대전	12,082	5,112	77	1,500	325	440	770	840	340	400	420	
경기	519,438	450,998	19,250	17,500	13,000	22,000	206,668	18,200	29,580	80,000	44,800	
강원	168,080	93,790	9,240	15,000	6,500	11,000	19,250	4,200	3,400	5,600	19,600	
충북	167,480	124,030	6,930	17,500	26,000	11,000	30,800	7,000	3,400	6,000	15,400	
충남	401,888	347,788	22,638	20,000	29,250	16,500	115,500	39,900	17,000	66,000	21,000	
전북	219,060	171,710	10,010	12,500	19,500	11,000	61,600	15,400	5,100	10,000	26,600	
전남	264,470	208,970	12,320	20,000	22,750	13,200	61,600	23,800	11,900	10,000	23,800	9,600
경북	320,265	234,300	23,100	25,000	39,000	14,300	84,700	14,000	10,200	10,000	14,000	
경남	298,540	215,040	13,860	20,000	26,000	16,500	61,600	25,480	13,600	10,000	28,000	
제주	402,755	41,015	2,695	3,000	-	-	23,100	5,600	3,400	-	3,220	
계	2,878,780	1,965,850	123,200	156,000	185,250	118,800	693,000	168,000	102,000	200,000	210,000	9,600

(단위 : 천원)

구분	검진							구제			오근 제질 스사 키업 병
	소계	우 결 핵	부루 세라 (MRT)	부루 세라 (Plate)	부루 세라 (Rose- Bengal)	소 간 질	추 백 리	진 드 기	간 질 총	꿀 벌 용 애	
서울	130	20	100	10		-	-	-	-	5,040	1,600
부산	320	200	100	20		-	-	-	-	3,150	600
대구	710	480	150	30		-	50	-	-	8,820	680
인천	975	700	200	50		-	25	-	480	2,520	1,040
광주	310	200	100	10		-	-	-	240	4,410	600
대전	260	100	100	10		-	50	-	240	5,670	800
경기	21,050	14,300	2,050	800		200	3,700	-	5,040	28,350	14,000
강원	2,900	2,000	400	300		100	100	7,500	6,000	54,810	3,080
충북	3,200	2,000	300	300		100	500	-	1,200	34,650	4,400
충남	9,640	6,100	900	540		100	2,000	-	960	31,500	12,000
전북	4,550	2,200	450	550		100	1,250	-	3,120	35,280	4,400
전남	3,300	2,200	300	200		100	500	-	8,400	37,800	6,000
경북	5,055	3,600	350	380		200	525	-	2,400	73,710	4,800
경남	4,750	3,600	500	300		100	250	3,000	4,800	66,150	4,800
제주	327,180	300	-	-	326,830	-	50	15,000	720	17,640	1,200
계	384,330	38,000	6,000	3,500	326,830	1,000	9,000	25,500	33,600	409,500	60,000

(라) '97 가축혈청검사용 진단액류 월별 생산내역(수의과학연구소)

(단위 : 두, 수분)

진 단 액 명	'96생산 이월분	'97 생산량	검 정 완 료 일 기 준				
			1	2	3	4	5
뉴캐슬병		116,800					116,800
선란저하증		116,800					116,800
감보로병		116,800					116,800
마이코플라즈마		116,800					116,800
전염성기관지염		116,800					116,800
돼지단독		88,400					88,400
위축성비염		88,400					88,400
일본뇌염		88,400					88,400
돼지마이코플라즈마병		88,400					88,400
돼지파보		88,400					88,400
돼지PRRS		6,900		6,900			
요 네 병(ELISA용)		9,800					9,800
소 간 질		10,000					10,000
부루세라병 CF항원		3,500					3,500
계		1,056,200		6,900			1,049,300

진 단 액 명	검 정 완 료 일 기 준								비 고
	6	7	8	9	10	11	12		
뉴캐슬병									○ 진단액 생산비 (국비 : 100%)
선란저하증									
감보로병									
마이코플라즈마									
전염성기관지염									
돼지단독									
위축성비염									
일본뇌염									
돼지마이코플라즈마병									
돼지파보									
돼지PRRS									
요 네 병(ELISA용)									
소 간 질									
부루세라병 CF항원									
계									

(마) '97 관수예방약류 월별 생산내역 (수의과학연구소)

(단위 : 두·수분)

진 단 약 명	생산량	검 정 완 료 일 기 준(월)				
		1	2	3	4	5
우역백신	10,000					
우결핵 진단액(PPD)	5,000				5,000	
부루세라 진단액(Tube)	20,000		5,000			5,000
요닝(피내용)	5,000			3,000		
요네병 항원(CF용)	5,000			3,000		
탄저 침강소혈청	2,000					2,000
렙토스피이라 항원	3,000			1,500		
추백리진단액	150,000			70,000		
돼지콜레라 형광항체	2,500				2,500	
광견병 형광항체	500					
살모넬라 그룹혈청(O형)	2,000					2,000
살모넬라 그룹혈청(H형)	2,000					2,000
아나플라즈마 항원	1,500					1,000
계	208,500		5,000	77,500	7,500	12,000

진 단 약 명	검 정 완 료 일 기 준(월)							비 고
	6	7	8	9	10	11	12	
우역백신			10,000					농진청 수의 과학연구소 의 예산으로 생산
우결핵 진단액(PPD)			5,000			5,000		
부루세라 진단액(Tube)								
요닝(피내용)		2,000						
요네병 항원(CF용)		2,000						
탄저 침강소혈청								
렙토스피이라 항원				1,500				
추백리진단액		80,000						
돼지콜레라 형광항체								
광견병 형광항체	500							
살모넬라 그룹혈청(O형)								
살모넬라 그룹혈청(H형)								
아나플라즈마 항원				500				
계	500	84,000	15,000	2,000		5,000		

(마) '97 관수예방약류 월별 생산내역 (수의과학연구소)

(단위 : 두 · 수분)

진 단 약 명	생산량	검 정 완 료 일 기 준				
		1	2	3	4	5
우역백신	10,000					
우결핵 진단액(PPD)	5,000				5,000	
부루세라 진단액(Tube)	20,000		5,000			5,000
요닝(피내용)	5,000			3,000		
요네병 항원(CF용)	5,000			3,000		
탄저 침강소혈청	2,000					2,000
렘토스피이라 항원	3,000			1,500		
추백리진단액	150,000			70,000		
돼지콜레라 형광항체	2,500				2,500	
광견병 형광항체	500					
살모넬라 그룹혈청(O형)	2,000					2,000
살모넬라 그룹혈청(H형)	2,000					2,000
아니프라즈마 항원	1,500					1,000
계	208,500		5,000	77,500	7,500	12,000

진 단 약 명	검 정 완 료 일 기 준							비 고
	6	7	8	9	10	11	12	
우역백신			10,000					농진청 수의 과학연구소 의 예산으로 생산
우결핵 진단액(PPD)								
부루세라 진단액(Tube)			5,000			5,000		
요닝(피내용)		2,000						
요네병 항원(CF용)		2,000						
탄저 침강소혈청								
렘토스피이라 항원				1,500				
추백리진단액		80,000						
돼지콜레라 형광항체								
광견병 형광항체	500							
살모넬라 그룹혈청(O형)								
살모넬라 그룹혈청(H형)								
아니프라즈마 항원				500				
계	500	84,000	15,000	2,000		5,000		

“별첨1”

<예방주사>

○ 탄저·기종저 혼합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0.4	25.2	30.8	56	○ 실시대상 : 6개월 미만의 송아지와 임신말기의 소를 제외한 소 ○ 실시기간 : 2-4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9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실시요령 - 농번기를 피하여 2월부터 조기 실시토록 사업준비 - 종식단계에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예방접종 철저 - 강원, 충남, 경북은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실시 - '96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소를 우선 실시
부 산	2.6	163.8	200.2	364	
대 구	15	945	1,155	2,100	
인 천	18	1,134	1,386	2,520	
광 주	4	252	308	560	
대 전	1	63	77	140	
경 기	250	15,750	19,250	35,000	
강 원	120	7,560	9,240	16,800	
충 북	90	5,670	6,930	12,600	
충 남	294	18,522	22,638	41,160	
전 북	130	8,190	10,010	18,200	
전 남	160	10,080	12,320	22,400	
경 북	300	18,900	23,100	42,000	
경 남	180	11,340	13,860	25,200	
제 주	35	2,205	2,695	4,900	
계	1,600	100,800	123,200	224,000	

○ 소 전염성비기관염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실시대상 : 소 ○ 실시기간 : 9~10월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1,5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실시요령 - 소 전염성비기관염, 바이러스성 설사 (BVD) 및 파라인플루엔자(PI3) 혼합 백신을 사용 - 영세 양축농가의 사육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기업 양축농가의 소는 자율방역 유도
부 산	-	-	-	-	
대 구	2	2,100	1,000	3,100	
인 천	3	3,150	1,500	4,650	
광 주	3	3,150	1,500	4,650	
대 전	3	3,150	1,500	4,650	
경 기	35	36,750	17,500	54,250	
강 원	30	31,500	15,000	46,500	
충 북	35	36,750	17,500	54,250	
충 남	40	42,000	20,000	62,000	
전 북	25	26,250	12,500	38,750	
전 남	40	42,000	20,000	62,000	
경 북	50	52,500	25,000	77,500	
경 남	40	42,000	20,000	62,000	
제 주	6	6,300	3,000	9,300	
계	312	327,600	156,000	483,600	

○ 소 유행열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실시대상 : 소 ○ 실시기간 : 4~5월 - 모기 출현전에 실시 완료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2,0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실시요령 - 대양축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여 사업계획 대상이외의 소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유도 - 영세 양축농가에서 사육하는 소를 우선 실시
부 산	-	-	-		
대 구	1	1,400	650	2,050	
인 천	2	2,800	1,300	4,100	
광 주	1.5	2,100	975	3,075	
대 전	0.5	700	325	1,025	
경 기	20	28,000	13,000	41,000	
강 원	10	14,000	6,500	20,500	
충 북	40	56,000	26,000	82,000	
충 남	45	63,000	29,250	92,250	
전 북	30	42,000	19,500	61,500	
전 남	35	49,000	22,750	71,750	
경 북	60	84,000	39,000	123,000	
경 남	40	56,000	26,000	82,000	
제 주	-	-	-	-	
계	285	399,000	185,250	584,250	

○ 소 아까바네병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소 ○ 실시기간 : 4~5월 ※ 모기 출현전에 실시 완료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3,5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실시요령 - 사업계획 대상이외의 소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농가에 홍보지도 강화 - 영세양축농가에서 사육중인 소에 대하여 우선 실시 - '96년도 감염우는 실시대상에서 제외
부산	-	-	-	-	
대구	0.6	1,470	660	2,130	
인천	1	2,450	1,100	3,550	
광주	1	2,450	1,100	3,550	
대전	0.4	980	440	1,420	
경기	20	49,000	22,000	71,000	
강원	10	24,500	11,000	35,500	
충북	10	24,500	11,000	35,500	
충남	15	36,750	16,500	53,250	
전북	10	24,500	11,000	35,500	
전남	12	29,400	13,200	42,600	
경북	13	31,850	14,300	46,150	
경남	15	36,750	16,500	53,250	
제주	-	-	-	-	
계	108	264,600	118,800	383,400	

○ 돼지콜레라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1	63	77	140	○ 실시대상 : 지역공동방역사업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양돈농가 우선
부산	60	3,780	4,620	8,400	
대구	70	4,410	5,390	9,800	
인천	200	12,600	15,400	28,000	○ 실시기간별 물량 - 1차(춘계) : 3~5월 (50%) - 2차(추계) : 9~11월(50%)
광주	25	1,575	1,925	3,500	
대전	10	630	770	1,400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9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경기	2,684	169,092	206,668	375,760	
강원	250	15,750	19,250	35,000	
충북	400	25,200	30,800	56,000	
충남	1,500	94,500	115,500	210,000	○ 실시요령 -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하여 시군·읍면별 양돈농가·단체의 참여 및 지역별 공동방역을 실시토록 행정 지원 및 기술지도 강화 - 종돈 및 자돈거래시에는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토록 적극계도
전북	800	50,400	61,600	112,000	
전남	800	50,400	61,600	112,000	
경북	1,100	69,300	84,700	154,000	
경남	800	50,400	61,600	112,000	
제주	300	18,900	23,100	42,000	
계	9,000	567,000	693,000	1,260,000	

○ 돼지일본뇌염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1	210	140	350	○ 실시대상 : 인구조밀지역 및 뇌염 발생 상재지, 도시인근 양돈장 돼지
부 산	50	10,500	7,000	17,500	
대 구	14	2,940	1,960	4,900	○ 실시방법 - 모든 우선실시 - '96년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하고, 기타는 건강돈에 1차접 종하고 3주후에 2차접종
인 천	24	5,040	3,360	8,400	
광 주	8	1,680	1,120	2,800	
대 전	6	1,260	840	2,100	○ 실시기간 : 4~5월 - 모기출현전에 실시완료
경 기	130	27,300	18,200	45,500	
강 원	30	6,300	4,200	10,500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300원 · 국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충 북	50	10,500	7,000	17,500	
충 남	285	59,850	39,900	99,750	
전 북	110	23,100	15,400	38,500	○ 예방주사를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백신구매 및 시군 배정 시기를 감안, 차질이 없도록 조기 조치
전 남	170	35,700	23,800	59,500	
경 북	100	21,000	14,000	35,000	
경 남	182	38,220	25,480	63,700	
제 주	40	8,400	5,600	14,000	
계	1,200	252,000	168,000	420,000	

○ 돼지전염성위장염(TGE)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실시대상 : 임신모돈 - 지역별 공동방역 참여농가 우선
부 산	6	1,680	1,020	2,700	
대 구	6	1,680	1,020	2,700	○ 실시기간 : 9~11월 - 모돈에 2회접종(분만 4주전에 1차, 2주전에 2차접종)
인 천	8	2,240	1,360	3,600	
광 주	4	1,120	680	1,800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4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대 전	2	560	340	900	
경 기	174	48,720	29,580	78,30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강 원	20	5,600	3,400	9,000	○ 사업계획 물량 이외의 임신모돈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양돈농가 홍보 지도 강화
충 북	20	5,600	3,400	9,000	
충 남	100	28,000	17,000	45,000	
전 북	30	8,400	5,100	13,500	
전 남	70	19,600	11,900	31,500	
경 북	60	16,800	10,200	27,000	
경 남	80	22,400	13,600	36,000	
제 주	20	5,600	3,400	9,000	
계	600	168,000	102,000	270,000	

○ 돼지오제스키병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실시대상 : 돼지오제스키병 발생 상 재지 또는 발생우려지역 의 돼지 ○ 실시기간 - 1차(춘계) 3~5월 - 2차(추계) 9~11월 ※ 경기·충남도 이외의 시도는 별 도 조치 시달시까지 실시보류 ○ 접종방법 : 모돈·후보돈·종돈에 접 종하되 임신모돈은 2회 접종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5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지역공동방역사업에 참여하는 농 가 우선지원 - 의심축 조기 신고한 농가, 양성축 을 조기 도태한 농가, 발생농장 인근농장 우선지원 - 예방접종은 반드시 관할 가축위생 시험소와 사전협의후 실시 - 신규입식 농가는 오제스키병 비발 생 사실확인후 또는 검사후 입식 토록 계도 철저
부 산	-	-	-	-	
대 구	-	-	-	-	
인 천	10	3,500	2,000	5,500	
광 주	-	-	-	-	
대 전	2	700	400	1,100	
경 기	400	140,000	80,000	220,000	
강 원	28	9,800	5,600	15,400	
충 북	30	10,500	6,000	16,500	
충 남	330	115,500	66,000	181,500	
전 북	50	17,500	10,000	27,500	
전 남	50	17,500	10,000	27,500	
경 북	50	17,500	10,000	27,500	
경 남	50	17,500	10,000	27,500	
제 주	-	-	-	-	
계	1,000	350,000	200,000	550,000	

○ 광견병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40	8,400	5,600	14,000	○ 실시대상 : 경기, 강원외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와 소, 인구조밀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 ○ 실시기간 - 1차(춘계 : 3~5월) : 70% - 2차(추계 : 9~11월) : 30%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을 감안 년중 실시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3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 지방비 : 100% ○ 기 타 - 예방주사 접종증명서 발급 및 표찰부착 철저이행 - 예방주사 일제접종기간을 설정, 공고하고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
부 산	20	4,200	2,800	7,000	
대 구	10	2,100	1,400	3,500	
인 천	20	4,200	2,800	7,000	
광 주	4	840	560	1,400	
대 전	3	630	420	1,050	
경 기	320	67,200	44,800	112,000	
강 원	140	29,400	19,600	49,000	
충 북	110	23,100	15,400	38,500	
충 남	150	31,500	21,000	52,500	
전 북	190	39,900	26,600	66,500	
전 남	170	35,700	23,800	59,500	
경 북	100	21,000	14,000	35,000	
경 남	200	42,000	28,000	70,000	
제 주	23	4,830	3,220	8,050	
계	1,500	315,000	210,000	525,000	

○ 진도견 디스탬퍼(DHPPL)등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전 남	12	21,000	9,600	3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대상 : 진도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도개 ○ 실시기간 : 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두에 2회접종 및 투약 (6,000두×2회= 12,000두) ○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품비 : 2,500원(디스탬퍼 1,500, 구충제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실시재료비 : 두당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 100%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예방주사 시 개체별 건강진단을 위한 혈청 검사 실시 - 영세농가 우선 실시
계	12	21,000	9,600	30,600	

○ 뉴깃슬병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부화장에서 부화된 초생추
부산	300	1,500	-	1,500	○ 실시기간 : '97. 2~12
대구	1,000	5,000	-	5,000	○ 소요경비
인천	300	1,500	-	1,500	- 약품비 : 수당 5원 · 국 비 : 100%
광주	1,000	5,000	-	5,000	○ 기 타
대전	2,000	10,000	-	10,000	- 지역공동방역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분양예정인 초생추 우선 지원
경기	90,000	450,000	-	450,000	-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철저
강원	4,500	22,500	-	22,500	(예방약 수불대장 비치, 기 사용한 예방약 공병 확인등)
충북	20,000	100,000	-	100,000	- 부화업체로 하여금 예방약 분무기 등 예방접종 장비를 자체구입, 사용 토록 유도
충남	92,400	462,000	-	462,000	
전북	60,000	300,000	-	300,000	
전남	9,000	45,000	-	45,000	
경북	13,000	65,000	-	65,000	
경남	6,000	30,000	-	30,000	
제주	500	2,500	-	2,500	
계	300,000	1,500,000	-	1,500,000	

“별첨2”

<전염병 검진>

- 우결핵(PPD)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2	140	20	160	○ 실시대상 : 소 ○ 실시기간 : 2~11월 ○ 소요경비 - 진단액(PPD) 구입비 : 두당 600원 (국비 100%)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함 - 최근 2~3년이내 우결핵 발생농장의 6개월이상 젖소 및 종축기관등에서 검사의뢰한 한육우 우선실시
부산	2	1,400	200	1,600	
대구	4.8	3,360	480	3,840	
인천	7	4,900	700	5,600	
광주	2	1,400	200	1,600	
대전	1	700	100	800	
경기	143	100,100	14,300	114,400	
강원	20	14,000	2,000	16,000	
충북	20	14,000	2,000	16,000	
충남	61	42,700	6,100	48,800	
전북	22	15,400	2,200	17,600	
전남	22	15,400	2,200	17,600	
경북	36	25,200	3,600	28,800	
경남	36	25,200	3,600	28,800	
제주	3	2,100	300	2,400	
계	380	266,000	38,000	304,000	

○ 부루세라병(M.R.T)

(단위 : 천건,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2	700	100	800	○ 실시대상 : 관내집유장에 납유하는 목장의 착유우 ○ 실시기간 : 2 ~ 11월(분기별로 구분 하여 4회이상 실시) ○ 소요경비 - 진단액구입비 : 1회용 300원 (국비 100%) - 실시재료비 : 건당 100원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에 의함 - 실시회수 : 4회이상 실시 - 건당 1~50두 정도의 우군원유를 기준하여 시료채취에 철저 -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 검사를 혈청응집반응검사(Plate)로 실시 - 타시도 소재 목장의 소에서 양성 및 의양성우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에 서는 개체별 추적검사 실시 ○ 기 타 - 유업체에서 검사를 의뢰한 가검물 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를 통보할 것. -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8조에 의거 전두수 이동제한 조치 하고 신속히 개체별 검사 실시 ※ 제주도는 별도사업 계획에 의거 실시
부 산	2	700	100	800	
대 구	3	1,050	150	1,200	
인 천	4	1,400	200	1,600	
광 주	2	700	100	800	
대 전	2	700	100	800	
경 기	41	14,350	2,050	16,400	
강 원	8	2,800	400	3,200	
충 북	6	2,100	300	2,400	
충 남	18	6,300	900	7,200	
전 북	9	3,150	450	3,600	
전 남	6	2,100	300	2,400	
경 북	7	2,450	350	2,800	
경 남	10	3,500	500	4,000	
제 주	-	-	-	-	
계	120	42,000	6,000	48,000	

○ 부루세라병(Plate)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0.1	35	10	45	○ 실시대상 - 젓 소 : MRT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 양성 목장의 전두수 및 타 시도에서 MRT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통보된 목장의 전두수 - 한육우 : 종축기관등에서 검사를 의뢰 한 종축등
부 산	0.2	70	20	90	
대 구	0.3	105	30	135	
인 천	0.5	175	50	225	
광 주	0.1	35	10	45	
대 전	0.1	35	10	45	○ 소요경비 - 진단액구입비 : 두당 250원 (국비 100%)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 (국비 50%, 지방비 50%) ※ MRT결과에 따른 진단액의 과부족에 대하여는 수의과학연구소와 협의 하여 조정토록 할 것.
경 기	8	2,800	800	3,600	
강 원	3	1,050	300	1,350	
충 북	3	1,050	300	1,350	○ 실시요령 -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함 - 동거가축 또는 의심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체별(한육우 포함)검사를 실시 - 유산등 부루세라병의 의심우군에 대하여는 개체별로 검사실시
충 남	5.4	1,890	540	2,430	
전 북	5.5	1,925	550	2,475	
전 남	2	700	200	900	
경 북	3.8	1,330	380	1,710	○ 기 타 - 유업체등에서 검사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는 검사실시후 결과통보 할 것
경 남	3	1,050	300	1,350	
제 주	-	-	-	-	※ 시험관응집반응법, 보체결합반응법등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진단 시약에 대하여는 수의과학연구소와 협의할 것
계	35	12,250	3,500	15,750	

○ 제주도 부루세라병(Rose-Bengal)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제 주	70	157,570	326,830	484,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대상 :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 실시기간 : 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검사 : Rose-Bengal - 2차 검사 : Tube Test, CF 또는 ELISA ○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액(Rose-Bengal)구입비 : 두당250원 (국비 100%) ※ 2차검사 진단액은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생산 - 실시재료비 : 총 466,900천원 (국비 30%, 지방비 70%)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부루세라병 근절계획에 의거 '97 부루세라병 검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우리부에 보고하고 추진 - 양성축과의 동거가축등에 대하여는 축주로 하여금 자진도태토록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 소간질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경 기	2	200	200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대상 : 소 ○ 실시기간 : 4~10월 ○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재료비 : 두당 200원(국비 50%, 지방비 50%) ※ 진단액은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생산 ○ 실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소간질 검진을 위하여 관내공수의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 검질결과 양성우에 대하여 구제약품 배정 ○ 사업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지역공동방역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② 영세 양축농가
강 원	1	100	100	200	
충 북	1	100	100	200	
충 남	1	100	100	200	
전 북	1	100	100	200	
전 남	1	100	100	200	
경 북	2	200	200	400	
경 남	1	100	100	200	
제 주	-	-	-	-	
계	10	1,000	1,000	2,000	

○ 추백리

(단위 : 천수,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대상 : 종계장의 종계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에 의함) ○ 실시기간 : 3~11월 ○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액구입비 : 수당 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100% - 실시재료비 : 수당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50%, 지방비 50%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매월 검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우리부에 보고 -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철저히 이 행하여, 미실시 종계장은 고발, 종 계사용을 금지하는등 사후관리에 철저. - 종계장별 진단액 사용실적을 철저 히 점검 확인. -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인검사결과 양 성계군에 대하여는 살처분후 보상 금을 지급할 계획임 - 지역별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의 농가에 우선 실시
부 산	-	-	-	-	
대 구	1	130	50	180	
인 천	0.5	65	25	90	
광 주	-	-	-	-	
대 전	1	130	50	180	
경 기	74	9,620	3,700	13,320	
강 원	2	260	100	360	
충 북	10	1,300	500	1,800	
충 남	40	5,200	2,000	7,200	
전 북	25	3,250	1,250	4,500	
전 남	10	1,300	500	1,800	
경 북	10.5	1,365	525	1,890	
경 남	5	650	250	900	
제 주	1	130	50	180	
계	180	23,400	9,000	32,400	

“별첨3”

<기생충 구제>

○ 소진드기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대상 :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소 (전기업 양축농가 제외) ○ 실시기간 : 4~10월 ○ 실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드기 서식지 및 바베시아병, 타이레리아병 다발지역 우선실시 - 진드기 출현시기에 맞춰 시·도 단위로 구제일정을 정하여 일제히 실시 - 실시간격 : 10~20일 - 축체에 분무 또는 약욕실시 - 특히, 제주도는 전기업농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진드기구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계몽 강화 ○ 구제약품비 : 두당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70%, 지방비 30% ○ 시도지사는 자체적으로 타이레리아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계도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500	17,500	7,500	25,000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200	7,000	3,000	10,000	
제 주	1,000	35,000	15,000	50,000	
계	1,700	59,500	25,500	85,000	

○ 소간질총

(단위 : 천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실시대상 - 소간질 검진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를 우선하고, 간질감염 농후지역에서 사육중인 소에도 투여
부 산	-	-	-	-	
대 구	-	-	-	-	
인 천	2	1,120	480	1,600	○ 실시기간 : 4~10월*
광 주	1	560	240	800	○ 소요경비 - 약품비 : 두당 800원
대 전	1	560	240	800	· 국 비 : 70%
경 기	21	11,760	5,040	16,800	· 지방비 : 30%
강 원	25	14,000	6,000	20,000	
충 북	5	2,800	1,200	4,000	
충 남	4	2,240	960	3,200	
전 북	13	7,280	3,120	10,400	
전 남	35	19,600	8,400	28,000	
경 북	10	5,600	2,400	8,000	
경 남	20	11,200	4,800	16,000	
제 주	3	1,680	720	2,400	
계	140	78,400	33,600	112,000	

○ 꿀벌응애류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8	11,760	5,040	16,800	○ 실시대상 - 개량 양봉농가의 봉군 ○ 실시기간 : 3~4월(3회 실시)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700원 · 국 비 : 70% · 지방비 : 30% ○ 기 타 - 시·도지사는 한국양봉협회(시·도지회)와 협의하여 구제효과가 우수한 약품을 선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토록 하고, 배정방법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양봉농가에 대한 약품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꿀벌응애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애류 구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것. - 약품사용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시도지사는 꿀벌응애류 전염특성상 전국 동시 다발적인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구제 약품이 적기에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부산	5	7,350	3,150	10,500	
대구	14	20,580	8,820	29,400	
인천	4	5,880	2,520	8,400	
광주	7	10,290	4,410	14,700	
대전	9	13,230	5,670	18,900	
경기	45	66,150	28,350	94,500	
강원	87	127,890	54,810	182,700	
충북	55	80,850	34,650	115,500	
충남	50	73,500	31,500	105,000	
전북	56	82,320	35,280	117,600	
전남	60	88,200	37,800	126,000	
경북	117	171,990	73,710	245,700	
경남	105	154,350	66,150	220,500	
제주	28	41,160	17,640	58,800	
계	650	955,500	409,500	1,365,000	

다. 가축혈청검사사업

(1) 목적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 질병감염 여부 및 질병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 검사결과를 따라 예방접종 적기실시 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

(2) 사업시행기관

- 수의과학연구소 : 진단액등 생산 및 기술지도
- 가축위생시험소 : 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 지도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 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

(3) 검사대상 질병 : 18종

- 닭 : 뉴캐슬병(ND), 산란저하증(EDS'76), 감보로병(IBD), 전염성기관지염(IB), 마이코플라즈마(MG) (5종)
- 돼지 : 단독(SE), 위축성비염(AR), 일본뇌염(JE), 마이코플라즈마병(MG), 돼지파보(SP), 돼지생식기호흡기중후군(PRRS) (6종)
- 소 : 요네병(JD), 유행열(EF), 아까바네병(AD), 이바라기병(ID), 출산병(CD), 소간질, 부루세라병 (7종)

(4) 실시방법

① 닭 혈청검사

- 검사대상 선정
 - 검사를 요청한 양계농가를 우선하고, 종계장에서 직접채혈하거나 당해 종계장에서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가검물 채취 : 매월 균분실시

② 돼지 혈청검사

- 검사대상 선정
 - 혈청검사를 요청한 양돈장
 - 종돈장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1개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종돈장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
- 가검물 채취 : 매월 균분 실시

③ 소 혈청검사

- 모기매개질병(유행열, 아까바네병, 이바라끼병, 추산병) 예방을 위하여 시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수의과학연구소에서 항체가 검사 실시
- 모기매개질병(유행열, 아까바네병, 이바라끼병, 추산병)
 -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전남북, 경남북등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 시험소별 시료채취 건수를 조정하여 '97. 3. 15일까지 수의과학연구소에 송부할 것
 - 해당 시험소장은 시료를 채취하여 '97. 3말까지 수의과학연구소에 송부할 것
 -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소유행열등 모기매개질병 4종에 대한 항체가를 검사하여 '97. 4. 30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 요네병은 관내 젖소를 대상으로 사업량에 대한 항체가를 검사하여 국내 분포조사를 실시

(5) 사업량 : 연 1,146,000건

- 닭 : 584,000건
 - 시험소 : 76,800수×5종= 384,000건
 - 병성감정기관 : 40,000수×5종 = 200,000건
- 돼지 : 530,400건
 - 시험소 : 78,400두×6종= 470,400건
 - 병성감정기관 : 10,000두×6종= 60,000건
- 소 : 31,600건
 - 수의과학연구소(모기매개질병 4종) 3,000두×4종 = 12,000건
 - 가축위생시험소(요네병) 19,600두×1종 = 19,600건

○ 시도별, 축종별 세부내역

(단위: 수·두, 천원)

구분	가축 위생 시험소	사 업 량				사업비(국비)			비 고	
		닭	돼지	소	계	진단액 생산비	재료비	계		
서울	1개소 1 1 1 1 1 6 5 5 6 5 5 5 5 1 수과연	-	1,600	400	2,000	-	1,700	1,700	○ 시험소별사업량 - 닭: 1,600수 - 돼지: 1,600두 (PRRS는 100두) - 소: 400두 ○ 추백리 진단액 구입비: 수당 80원 ○ 실시 재료비 (두당) - 닭: 5종×200원 = 1,000원 - 돼지: 5종×200 원 = 1,000원 - PRRS: 200원 - 소 요네병: 200원 ※ 수의과학연 구소 사업량 에는 동물 검역 및 민간 병성감정실시 기관 사업량 포함	
부산		1,600	1,600	400	3,600	-	3,300	3,300		
대구		1,600	1,600	400	3,600	-	3,300	3,300		
인천		1,600	1,600	400	3,600	-	3,300	3,300		
광주		1,600	1,600	400	3,600	-	3,300	3,300		
대전		1,600	1,600	400	3,600	-	3,300	3,300		
경기		9,600	9,600	2,400	21,600	-	19,800	19,800		
강원		8,000	8,000	2,000	18,000	-	16,500	16,500		
충북		8,000	8,000	2,000	18,000	-	16,500	16,500		
충남		9,600	9,600	2,400	21,600	-	19,800	19,800		
전북		8,000	8,000	2,000	18,000	-	16,500	16,500		
전남		8,000	8,000	2,000	18,000	-	16,500	16,500		
경북		8,000	8,000	2,000	18,000	-	16,500	16,500		
경남		8,000	8,000	2,000	18,000	-	16,500	16,500		
제주		1,600	1,600	400	3,600	-	3,300	3,300		
수과연		40,000	10,000	-	50,000	504,530	15,000	519,530		
계		49	116,800	88,400	19,600	224,800	504,530	175,100		679,630

(6) 소요예산 산출내역

① 진단액등 생산비 : 504,530천원(수의과학연구소)

- 닭 : 292,000천원
 - ND, EDS, IBD, IB, MG : 292,000천원 = 116,800수 × 2,500원(5종 생산단가)
- 돼지 : 200,950천원
 - AR, MG, SE, JE, SP : 176,800천원 = 88,400두 × 2,000원(5종 생산단가)
 - PRRS : 24,150천원 = 6,900두 × 3,500원(1종 생산단가)
- 소 : 11,580천원
 - 요네병 : 9,800천원 = 19,600두 × 500원
 - 소간질(소간질 검진용) : 1,500천원 = 10,000두 × 150원
 - 부루세라용 CF 항원 : 280천원 = 3,500두 × 80원

※ 진단액류 기관별 배정량

(단위 : 두수분)

구 분	가축위생 시험소	국립동물 검역소	병성감정 실시기관	계
ND등 5종	76,000	800	40,000	116,800
PRRS	4,900	2,000		6,900
AR등 5종	78,000	400	10,000	88,400
요네병	19,000	600		19,600
소간질	9,500	500		10,000
부루세라 CF	3,000	500		3,500
계	190,400	4,800	50,000	245,200

② 실시재료비 : 175,100천원

- 닭 : 76,800천원 = 76,800수 × 5종 × 200원(가축위생시험소)
- 돼지 : 79,380천원(가축위생시험소)
 - AR등 5종: 78,400천원 = 78,400두 × 5종 × 200원
 - PRRS : 980천원 = 4,900두 × 1종 × 200원

- 소 : 18,920천원(가축위생시험소 3,920 / 수의과학연구소 15,000)
 - 요네병 : 3,920천원 = 19,600두×200원
 - 소간질 및 부루세라 CF 항원 : 지방비 부담
 - 유행열, 이바라끼병, 추산병, 아까바네병 : 15,000천원
= 3,000두×4종×1,250원

(7) 검사결과 조치사항

- 혈청검사성적을 조사분석하여 면역역가, 백신접종 적기여부, 접종방법의 개선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농가에 즉시 통보하여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할 것
-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채혈한 혈청의 검사 및 분석결과는 출하농장에 타시도일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도에서 방역지도 및 예찰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
-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가 통보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요네병 양성우에 대하여는 동 질병의 특성을 홍보, 자진 도태토록 유도

(8) 기 타

- 각 시도지사는 닭, 돼지, 소의 혈청검사용 진단액 추가 공급분을 활용하여 관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강화 및 양축농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혈청검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축위생시험소별로 혈청검사 전문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진단기술 배양에 주력토록 조치하고, 검사실시에 필요한 장비등을 년차적으로 보강토록 할 것.
-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소간질 진단액과 부루세라병 검사용 보체결합(CF) 항원을 생산하고, 당부에 보고할 것

(9) 보 고

- 아래서식에 의거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

[서 식]

'97. ()분기 가축혈청검사 결과보고

(도)

축종	병류별	연간계획 두수	검사실적		검사결과			검사방법	양성판정 형체가
			검사 건수	검사 두수	양성	음성	계		
○○	○○ (농장) (도축장)	○○ () ()	() ()	() ()	() ()	() ()	() ()		

라.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1) 검진사업

① 목 적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오제스키병 감염축을 색출·도태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오제스키병 발생상황 조사와 출하농장 추적조사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추진코자 함

② 사업실시기관

- 검사기관 : 가축위생시험소(지소 포함)
 - 오제스키병 감별진단키트 및 간이진단키트를 시도별로 구입하여 검사기관에 배정
- 기술지도기관 : 수의과학연구소

③ 검사대상

- 종돈장 및 허가·등록된 양돈장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양돈장의 돼지
-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중 사육농장이 확인될 수 있는 돼지

④ 실시방법

- 종돈장 :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돈장별 검사대상 두수를 선정하여 년2회 검사 실시
(상반기 : 5-6월, 하반기 : 9-10월)
- 허가·등록된 양돈장등 : 년 2회 검사 실시
- 도축장 출하돼지 : 농장별 20두 기준으로 검사 실시

⑤ 사업물량 (별표1 참조)

- 종돈장 : 71,900두
- 허가·등록 양돈장 및 추적조사 : 93,700두
- 도축장 출하돼지 일제조사 : 134,400두
- 계 : 300,000두

⑥ 검사결과 조치

- 종돈장과 양돈장에 대한 검사실시결과 양성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즉시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규정된 긴급 방역조치를 할 것.
- 발생농장 인근지역과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동 질병방역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할 것.
-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검사는 매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돼지는 출하농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확인·선정토록 할 것이며, 각 시도지사는 검사결과를 분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집계 보고하고, 양성축 검색시에는 추적조사 결과를 즉시 보고할 것이며,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 종돈장과 양돈장 검사실시 결과는 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할 것이며, 양성축 판정시에는 즉시 보고할 것.

⑦ 기타

- 시도지사는 도축검사신청서(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에 돼지 출하농장의 기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도축업무와 연계하여 출하농장에 대한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1]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단위 : 두, 천원)

구 분	계 획 량	검 사 대 상			사 업 비			비 고
		중돈장	양돈장및 추적조사	도축장 출하 돼지조사	국비 (진단키 트구입비)	지방비 (재료비)	계	
서울	8,000	-	-	8,000	13,600	1,600	15,200	○ 감별진단키트 또는 간이진단 키트구입비 두당 : 1,700원 (국비 100%)
부산	3,000	-	-	3,000	5,100	600	5,700	
대구	3,400	-	400	3,000	5,780	680	6,460	
인천	5,200	400	1,000	3,800	8,840	1,040	9,880	
광주	3,000	-	500	2,500	5,100	600	5,700	
대전	4,000	-	300	3,700	6,800	800	7,600	
경기	70,000	22,000	20,000	28,000	119,000	14,000	133,000	○ 실시재료비 두당 : 200원 (지방비100%)
강원	15,400	1,000	8,000	6,400	26,180	3,080	29,260	
충북	22,000	4,000	10,000	8,000	37,400	4,400	41,800	
충남	60,000	20,000	25,000	15,000	102,000	12,000	114,000	
전북	22,000	4,000	6,000	12,000	37,400	4,400	41,800	
전남	30,000	10,000	8,000	12,000	51,000	6,000	57,000	
경북	24,000	4,000	8,000	12,000	40,800	4,800	45,600	
경남	24,000	5,000	5,000	14,000	40,800	4,800	45,600	
제주	6,000	1,500	1,500	3,000	10,200	1,200	11,400	
계	300,000	71,900	93,700	134,400	510,000	60,000	570,000	

[별지 제1호 서식]

도축장 출하돈 일제 검사결과

(시)
(도)

검사기관 (시험소별)	출하지역 (시·군별)	검사두수	검사결과			비 고
			양성	음성	계	

※ 양성축에 대하여 농장명, 사육명, 소재지, 사육두수, 양성두수를 별도 명기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97. ()분기 종돈장·양돈장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시)

(도)

종돈장 (양돈장)	성명	주소	사육 두수	검사 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마. 유방염 방제사업

(1) 목 적

- 유대지급 차등가격제(세균 및 체세포수) 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유방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 추진으로 각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 우유 생산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2) 실시기간 : '97. 1 ~ 12월

(3) 실시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4)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두, 천원)

구분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과연	계
사업량	500	1,000	500	18,000	5,000	4,000	8,000	5,000	4,000	5,000	5,000	500	3,500	60,000
사업비	1,500	3,000	1,500	54,000	15,000	12,000	24,000	15,000	12,000	15,000	15,000	1,500	10,500	180,000

※ 실시재료비(CMT 시약등) : 두당 3,000원

(5) 대상농가 : 집유장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4급(60만 초과/ml당) 판정농가 우선실시

- 시도지사는 체세포수 4급 농가를 파악하여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별로 사업물량 조정

(6) 세부 실시요령

- 체세포수 4급판정 농가의 착유우에 대한 개체별, 분방별로 CMT 및 체세포수 검사실시
 - 체세포수 50만개/ml 이상을 유방염 감염 의심우로 판정
- 개체별 검사결과 유방염 의심우에 대해 분방별로 원인균 분리
- 원인균에 대한 약제감수성시험 실시
- 유방염 감염우, 감염분방, 원인균 및 약제시험결과를 해당농가에 통보하여 자가 치료토록 지도

(7) 기 타

- 시도지사는 분기실적을 분기종료 익월 5월까지 아래서식에 의거 농림부에 보고할 것.

[서 식]

‘97. ()분기 유방염 방제사업 결과

(도)

(단위: 두)

시험소별	년간계획 두수	검 사 결 과				감 염 율(%)		비 고
		검사목장수 (등외판정)	검사 두수	양성 두수	양성분방수	임상 (두수)	준임상 (두수)	

바. 살처분 보상

(1) 목 적

- 가축전염병(우결핵,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콜레라, 추백리등)에 이환된 양성축을 조기색출, 살처분하여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
- 전염병 발생시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피해방지
-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축산의욕 고취

(2) 지급계획물량 : 309,550두(수)

- 소 : 550두(젖소 250두, 한육우 300두)
- 돼지 : 14,000두
- 닭 : 295,000수

(3) 재 원 : 3,000백만원(국비)

(4) 사업주관 : 농림부 및 시·도

(5) 지급대상

- 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관의 명령에 의하여 살처분 된 소, 돼지 및 닭에 한하여 지급

(6) 지급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농림수산부 고시 제89-46호에 의거 지급

(7) 기 타

- 살처분실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건비, 소독비, 소각로 운영비, 매몰비등은 필히 지방비로 확보할 것
- 평가액 산정은 평가인이 상호비밀 유지하여 평가하고 당부에서 정한 평가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1) 목 적

- 새로운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손실방지
- 신속한 질병감정 및 원인분석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양축농가의 방역지원

- 살처분 가축의 매물처리를 소각처리 방법으로의 전환으로 민원해소, 환경보전 및 전염병 확산 방지
- 전염병 발생시 기동방역진료차량을 이용, 신속한 현지 기동방역 실시

(2) 사업량 및 사업비

① 검사장비 구입(ELISA Reader)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1대	14,000	14,000	28,000	
인천	1	14,000	14,000	28,000	
경기	1	14,000	14,000	28,000	
강원	1	14,000	14,000	28,000	
충북	1	14,000	14,000	28,000	
충남	2	28,000	28,000	56,000	
전북	2	28,000	28,000	56,000	
전남	2	28,000	28,000	56,000	
경북	2	28,000	28,000	56,000	
경남	2	28,000	28,000	56,000	
계	15	210,000	210,000	420,000	

② 소가로 설치지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계	
경기	2기	180,000	180,000	360,000	
강원	1	90,000	90,000	180,000	
충북	2	180,000	180,000	360,000	
충남	2	180,000	180,000	360,000	
전북	2	180,000	180,000	360,000	
전남	2	180,000	180,000	360,000	
경북	2	180,000	180,000	360,000	
경남	2	180,000	180,000	360,000	
제주	1	90,000	90,000	180,000	
계	16	1,440,000	1,440,000	2,880,000	

※ 소가로 설치에 따른 사체 보관장, 준비실등 부대시설 비용은 지방비에서 확보
충당할 것

③ 기동방역 진료차량 구입

(단위 :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대구	1대	7,500	7,500	15,000	
인천	1	7,500	7,500	15,000	
광주	1	7,500	7,500	15,000	
경기	3	22,500	22,500	45,000	
강원	3	22,500	22,500	45,000	
충북	3	22,500	22,500	45,000	
충남	3	22,500	22,500	45,000	
전북	3	22,500	22,500	45,000	
전남	3	22,500	22,500	45,000	
경북	3	22,500	22,500	45,000	
경남	3	22,500	22,500	45,000	
제주	1	7,500	7,500	15,000	
계	28	210,000	210,000	420,000	

(3) 사업시행자 : 가축위생시험소장

(4) 사업감독 및 사후감독 : 해당 도지사

(5) 구입완료시기 : 소각로와 기동방역진료차량은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조기 추진을 위하여 '97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

아. 공수의 위촉

(1) 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진료, 검진 및 예찰등 가축방역사업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업 보호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시도별 국비 공수의 정원

구 분	계	일반지역	특별지역
계	252명	247	5
대 구	1	1	-
인 천	4	3	1
광 주	1	1	-
경 기	29	29	-
강 원	24	24	-
충 북	20	20	-
충 남	32	32	-
전 북	27	27	-
전 남	36	33	3
경 북	39	38	1
경 남	34	34	-
제 주	5	5	-

- 국비 공수의 감축조정에 따라, 공수의가 부족한 시도에서는 지방비 공수의를 위촉·운용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실시토록 할 것.

(3) 배치기준 및 월수당

구 분	배 치 기 준	월 수 당		
		계	국 비	지 방 비
일반지역	읍·면 소재지이상	490	245	245
특별지역	도서 및 특수오지	1,138	569	569

※ 지방비 소요예산을 확보한 시도에서는 위 기준에 불구 수당중액 지급 가능

(4) 시도별 공수의 수당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계	1,520,640	760,320	760,320	
대 구	5,880	2,940	2,940	
인 천	31,296	15,648	15,648	
광 주	5,880	2,940	2,940	
경 기	170,520	85,260	85,260	
강 원	141,120	70,560	70,560	
충 북	117,600	58,800	58,800	
충 남	188,160	94,080	94,080	
전 북	158,760	79,380	79,380	
전 남	235,008	117,504	117,504	
경 북	237,096	118,548	118,548	
경 남	199,920	99,960	99,960	
제 주	29,400	14,700	14,700	

(5) 공수의 위촉 및 배치기준

- 예방주사, 순회진료, 질병예찰업무등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65세미만의 개업수의사
- 관내양측가로부터 신뢰도가 높고, 진료·방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 위촉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특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위촉을 지양
- 위촉기간중 공수의업무 참여실적이 미흡할 경우 즉시 해촉
- 매년 12월에 공수의 업무평정을 실시하여 당해년도 업무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후 위촉
 - 업무 평가기관 : 시도, 시군,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지역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시군의 경우 해당 사업단이 평가 참여)
- 해당 시군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시 반영

- 가축 사육두수 및 정부지원 예방주사 실시물량을 기준으로 배치하되 지역별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지역 우선 배치

(6) 업무감독

- 공수의 준수사항(수의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대한 지휘·감독

(7) 행정사항

- 배치지연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96. 12. 30일까지 전원 위촉, 배치하고 결과를 '97. 1. 15일까지 보고
- 공수의에 대한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해촉과 동시 위촉할 것)
- 매월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공수의 업무 보고사항을 취합하여 익년도 1. 30일까지 보고

※ 배치완료 보고서식(별지 제1호 서식) 및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서식(별지 제2호 서식)

(8) 기타사항

- 공수의 업무 관련기관
 - 중앙 : 농림부 가축위생과(☎ 02-504-9438, 02-500-2693)
 - 시도 : 농림수산물 축산과(농정과)
 - 시군구 : 산업과(축산과)
- 공수의의 추가 위촉·활용이 필요한 시도에서는 소요 지방비 확보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비 공수의를 위촉·운영
- 공수의 1인당 업무량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로 하여금 예방접종시 가축보정, 공수의와 축주합동 실시사항 협조 희망
- 지역별공동방역사업단이 설치된 시군의 경우 공수의가 해당 사업단 소속 방역요원을 지휘·감독하에 예방주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공수의 배치완료 보고

군별	해 측			위 측						비고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읍면)	면허번호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읍면)	지역·수당			위촉일자
								지역	수당		
계	국비 : 일반지역 명 특별지역 명 <hr style="width: 50%; margin-left: 0;"/> 계 명			지방비 : 일반지역 명 특별지역 명 <hr style="width: 50%; margin-left: 0;"/> 계 명							

※ 지역란에 일반·특별, 비고란에 국비·지방비 구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공수의 업무수행상황 보고

동물병원명칭	공수의성명	면허번호	배치지역	예찰 실시회수	사업실적 (예방주사) 두수	업무보고 적정여부	업무평정 실시결과	비고

자. 수의사연수교육

(1) 추진방향

- 선진 수의기술 보급으로 수의사의 자질향상 및 수의업무 발전도모
- 새로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료기술 습득으로 축산소득 증대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대한수의사회
- 사업비 : 40,000천원(국비)
-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7 수의사연수교육 세부추진계획을 '96. 10.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수의사 보수교육 >

- 교육내용 : 가축질병에 대한 임상이론 및 실기교육
- 교육기간 : 1일×13회
- 교육인원 : 2,000명
- 교육대상 : 공개업 수의사 또는 일반 수의사로서 희망자

< 수의사 임상강습회 >

- 교육내용 : 가축위생정책 및 임상교육
- 교육기간 : 1일×2회
- 교육인원 : 500명
- 교육대상 : 공개업 수의사, 행정·연구 및 기타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3) 안내기관 : 대한수의사회(02-392-2526)

72	축산물품질향상 및 안전성강화(공공)
-7	(축산물검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 입니다.

1. 목적

- 축산물 (육류 및 우유등)의 위생적 처리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과 양축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2. 추진방향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산 축산물의 차별없는 검사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 검사장비의 조속 확보
- 육류의 위생적 생산 및 처리를 위한 위생검사강화

3. 투입자계획

가. 연차별 투입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예산안)	'98	'99
사 업 비	계	2,040	6,675	7,683.4	6,458	6,000
	국 고	1,460	3,474	3,941.7	3,429	3,000
	지방비	580	3,201	3,741.7	3,029	3,000
	용 자	-	-	-	-	-
	자 담	-	-	-	-	-

나. '97 지원계획(예산안)

(단위:백만원)

사 업 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농특회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검사장비 지원	15종 331점	7,483.4	3,741.7	3,741.7	
검사재료비	도축검사,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등	200	200	-	
계		7,683.4	3,941.7	3,741.7	

4. '97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검사장비 지원

1) 사업주체 : 시·도지사

2)사업량 및 용도

구 분		사업량 (대수)	용 도
잔류 물질 검사 기	GC/MS	6	잔류물질검사에서 최종잔류물질의 정량확인을 위한 장비
	시료전처리	15	잔류물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전처리용 장비
	중금속분석기(AAS)	14	잔류물질(중금속)검사기
	LC질량분석기(LC/MS)	8	잔류물질검사에서 최종잔류물질의 정량확인을 위한 장비
	합성항균제검사기(HPLC)	15	잔류물질(합성항균제등) 검사기
	잔류물질간이검사기	15	잔류물질의 간이검사(TLC등) 장비
	소계	73	
원유 검사 기	착유기검사기	46	착유기의 정상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장비
	우유성분분석기	17	원유의 성분검사기
	체세포수검사기	2	원유중 체세포수 검사장비
	세균수검사기	4	원유중 세균수 검사장비
	소계	69	
미생 물검 사기	미생물분리동정기	14	미생물의 분리동정을 위한 장비
	작업장오염도검사기	49	작업장(도축장,도계장,집유장)에서 오염유무 검사기
	미생물검사기	10	육류에 있어서 미생물(주로 살로넬라균) 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
	배양기	58	세균배양기
	냉장고	58	시료보관용
	소계	189	

※ 시도별 사업량은 추후 통보

- 검사장비구입을 위한 국비예산은 조기배정 계획인바 각 시·도에서는 검사장비조기구입 및 설치완료등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나. 검사재료비 지원

1) 사업주체 : 시·도지사, 수의과학연구소

2)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도축검사	18,000천두	13,114
미생물검사	3,000건	15,000
원유검사장비검증	3회	11,750
유해잔류물질검사	75,000건	160,125

3) 사업내용

<도축검사> : 도축신청된 전두수에 대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오염도 조사>

- 조사대상 : 대장균군(E. Coli O-157 : H7 포함), 일반세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캄필로박터균, 클로스트리움균
- 조사방법 : 작업장별 도체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검사
- 시도별 사업량 : 추후 통보

<잔류물질검사> “ '97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요령 ”에 의해 실시

<원유검사장비 검증>

- 사업추진기관 : 수의과학연구소(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기간 : '96. 1 ~ '96. 12

- 자동검사장비 검증대상 : 집유장의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자동검사 측정기기
- 검증회수 : 정기검증 - 년 3회
수시검증 - 필요시
- 검증방법 : '95 통합실시 요령 검증방법과 동일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의 세균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유대지급을 위한 원유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집유장에서 보정계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를 통해 수의과학연구소로 부터 검증을 받아 사용가능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가축위생과 (02) 504 - 9438~9439
- 시·도 : 농정과 또는 축산과

72 -8	축산물품질향상 및 안정성강화(공공) (부정축산물유통 지도단속)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1. 목 적

- 수축의 밀도살, 강제급수 및 부정육 취급행위 방지
- 위생적인 육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기본계획

- 부정육류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
- 밀도살등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홍보강화로 부정육 유통근절

3. 지도단속대상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처리법제3조 제1항, 제8항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 >

- 밀도살
- 강제급수우 도축 및 도체주수행위
- 법정 금지축 도축(중축 및 후보중축, 임신우)
- 검사원 부재시 도축 및 신청서 미접수분 도축
- 지육관외반출규정 위반

4. 단속실시요령

가. 특별단속

- 합동단속반 편성
 - 중 양 : 농림부
 - 시·도 : 축산, 보건, 경찰합동으로 편성운용
- 합동단속기간
 - 생산가격안정 필요시와 육류성수기(신정, 설날, 추석등)에 우범지역과 가축시장 및 업체 집중단속

나. 정기단속

- 단속반 편성
 - 중 양 : 농림부
 - 시·도 : 시·도 자체편성
- 단속기간 : 년중 우범지역 불시 단속(매월 1회이상)

5. 밀도살등 신고포상금 지급

< 국내산 축산물 >

가. 지급대상

- 대상축 : 소, 돼지, 양, 닭
- 지급대상자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 제1항,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 또는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나. '97 예산액 : 12,950천원(국고사업)

다. 지급기준

구 분	단위	지 급 기 준	지 급 배 분 액	
			신 고 자	검 거 자
밀 도 살	두수	당해 수축시가 표준액 전액	지급기준액의 1/2	지급기준액의 1/2
강제급수 (소예한함)	두	당해 수축시가 표준액 1/2	“	“
미검사품	kg	당해 축산물 시가표준액 1/2	“	“

라. 지급절차

- 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범법사실이 기소된 후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경유 농림부장관에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상금 지급신청서(법정서식)
 -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를 증명하는 서류(공소장 사본등)
- ※ 시·도지사의 과세 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 의거 결정한 금액)과 공소장 금액등에 의거 지급액 산출 단, 미검사품등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순별 소비자가격 또는 축협중앙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축산물가격 및 유통동향”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고기는 당시 평균가격 적용

○ 지급

- 농림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도에 배정, 시·도지사가 지급

(유의사항)

- 신고(고발)자 또는 검거자가 2인 이상이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공로를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단, 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 당시 시가표준액(범법행위 시점기준)과 공소장 시가액이 다를 경우 낮은 금액으로 지급

마. 지급기산일 및 한도액

○ 지급기산일

- '96.1.1부터 발생한 범법행위

○ 지급한도액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검거(신고) 당시 확인된 물량에 한함
- 1건(신고 및 검거)의 지급총액은 300만원이하로 함

< 수입쇠고기 >

가. 지급대상

- 대상축산물 : 수입쇠고기
- 지급대상자 :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신고(검거)포상금 지급요령(농림수산부공고 제94-21호)에 의한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신고 및 검거자

나. '97 예산액 : 30,000천원(국고사업)

다. 지급기준

부정유통물량(건당)	포 상 금 지 급 기 준 (건당)		
	신 고 (고발) 자		검 거 자
	관련공무원	민 간 인	
100kg미만	200천원	300	300
100kg~300kg미만	200	400	400
300kg~500kg미만	300	400	400
500kg이상	300	500	500

라. 지급절차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범법사실이 기소된 후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포상금 지급신청서(법정서식)
 -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를 증명하는 서류(공소장 사본등)
- 지급
 - 농림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도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 배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지급

6. 부정축산물 신고센터 설치 운용

- 설치부서
 - 중앙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전화 504~9436, 500~2691)
 - 시·도 : 축산(농정)과
 - 국립농산물검사소(수입쇠고기) : 전화 0343)46~6060
 -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 및 출장소(각 시·도, 시·군)

- 운용
 - 신고 고발시 민원접수
 - 현지확인 단속

- 신고안내문 부착
 - 도축장 가축시장등에 밀도살, 강제급수등 도축부조리 신고안내문 부착

7. 쇠고기 수분(수분단백비) 검사

가. 검사대상

- 도축장내의 강제급수가 의심되는 우육
- 시판우육 또는 운반차량에 적재한 우육중 강제급수가 의심되는 우육
- 소비자 단체 또는 민원인 등이 요구하는 지육판매업소의 판매우육

나.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검사부, 가축위생연구부, 가축 위생시험소)
- 도 : 가축위생시험소

다. 검사방법 및 기준

	현 장 검 사	실 험 실 검 사
○ 검사방법	NIR system	상압건열법 + 켈달분해법
○ 적용부위	우지육의 목심 또는 우둔중 1개부위(냉동육제외)	검사가능부위
○ 검사기준치	수분단백비가 4.2이상일 경우 물먹인 쇠고기로 간주	

라. 수거방법

- 검사시료 : 현장 검사결과에 대하여 피검사인으로 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한 지육에서 가시지방과 힘줄을 제거한 100g 정도의 지육을 채취보관

- 시료운반 : 채취한 시료는 광구병·샤레·스페시멘컵·비닐용기등에 넣어 밀폐한 후 피수거자와 수거자의 날인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지체없이 검사관에 송부, 검사 실시

마. 검사결과에의 통보 및 처리

- 검사기관 : 월별검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 및 관할 시·도에 보고 및 통보
- 시·도 : 기준치 이상의 우육을 반출한 도축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의 우육을 보관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해당부서(보건위생과등)에 통보하여 행정지도토록 협조조치를 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축산기업조합 시도지부(서울시는 축산기업중앙회 포함) 및 소비자단체에 통보
- 농림부 : 기준치이상의 우육을 반출한 도축장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

72 -9	축산물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공공) (한우고급육 생산기술개발)
----------	---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1. 목 적

- 한우고기의 고급화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 고급한우육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의 지속적인 사양체계 확립
- 고급육 생산축의 생산비 절감
- 우량송아지 저비용 생산기술 체계 확립

3. 지원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 축협중앙회가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구용역 계약 추진
- 대상 : 한우개량단지 생산송아지
- 사업기간 : '96~'98
- 사업비 : 415백만원(축산발전기금)
 - 지원내역 : 시험축구입비, 사료비, 기타 재료비등
- 사업량

시 험 항 목	공시두수	사업기간	비 고
○ 한우성장단계별 산육생리 및 육질변화에 관한 연구	36두	'96~'97	계속
○ 미량광물질 첨가 급여에 의한 한우 육질 개선연구	50	'96~'97	계속
○ 거세한우 고급육 생산전용사료개발에 관한 연구	50	'96~'98	계속
계	136두		

- 세부실시요령
 - 시험축 구입
 - 생년월일등 농가기록이 확실한 한우개량단지내 송아지 구입
 - 시험축 관리
 - 시험설계 내용에 의거 축산기술연구소장 책임하에 관리
 - 사업비 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축산기술연구소장의 요구에 의거 지원
 - 시험완료축 처리
 - 육질조사등 시험이 완료된 가축 또는 축산물은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 시험결과 활용
 - 시험결과는 한우고급육생산 기술교재에 반영하여 농가에 보급
(농진청 지도계통과 축협 지도요원을 활용)
 - 사업추진 실적 보고(축산기술연구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세부사업추진계획보고 ('97.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보고(분기 익월 20일까지)
 - 사업추진결과 보고(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02-504-9436~7)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0331-290-1648)
 - 축협중앙회 한우사업부(02-224-8416)

72 -10	축산물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공공)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
- 재래닭의 고유 유전자원 보전

2. 추진방향

-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생산능력 향상
-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의 공동참여로 조속한 성과 가시화
- 연구개발된 재래닭 종계의 농가보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4 과제	4	(계속)	(계속)	-	-
사업비	계	792	329	260	203	-	-
	보조 자부담	792	329	260	203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배경

- 재래닭(토종닭)에 대한 소비증가
- 재래닭 사육 및 희망농가 증가
- 재래닭 소비자들도 의심과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소비
-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재래닭육용화 및 소득원화방안 수립후 지원요청

(2) 사업추진 목표 및 활용방안

- 재래닭의 외모적, 유전적, 면역학적, 생화학적 특성 구명
- 재래닭의 생산성 및 경제성 제고
 - 재래닭 고유의 육질을 유지하면서, 외국닭과 교잡으로 종계 및 실용계의 생산능력 향상
-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재래닭 생산·유통체계 확립
- 재래닭에 대한 품질인증, 브랜드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

(3) 사업기간 : '94~'97년

(4) 사업과제 및 추진기간

- 재래닭의 생산능력 평가 및 품종기준 설정 : '94~'97
- 우량교배조합 선발 : '95~'97
- 실용계의 사양관리체계 확립 : '96~'97
- 재래닭의 소비형태 조사 : '97

(5) 지원내용

- 재래닭 육용화사업에 필요한 가축구입비,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등 지원

(6)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사)대한양계협회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사업비(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기금사업비	6항목	203	203	203			
◦ 재래닭의 계통 육성및능력검정	1	89	89	89			
◦ 교배종의 사양 관리기준 설정	1	34	34	34			
◦ 실용계의 산육 및 육질 특성 구명	3	40	40	40			
◦ 재래닭 생산물 의 소비형태 조 사	1	40	40	4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시행기관 : 대한양계협회
- 협조기관('94~'97) : 축산기술연구소, 수의과학연구소, 서울대농대·가금학회
및 재래닭보존연구회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전화 수원 0331-292-4511, 성환 0417-581-2081)
- 대한양계협회(전화 02-588-7651)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대한양계협회장은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 계획서를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에 승인 요청

(2) 사업추진방법

- 대한양계협회장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시 필요할 경우 연구계약을 체결 하여 업무를 분담 추진
- 시험축 확보는 국내연구기관, 민간업체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 확보
- 시험기간중의 생산물은 판매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3)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대한양계협회장의 분기별 자금신청에 의거 개산불로 우선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 개산불 지급시 전분기분은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한양계협장은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지원 및 추진상황 등을 지도·감독

나. 보 고(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72 -11	축산물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 (가축개량전산망 구축)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국내외 가축개량 정보의 수집 · 분석 활용
-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 추진

2. 추진방향

- 가축개량총괄기관, 가축개량기관간의 전산망 구축
- 각 기관과 단체 및 양축농가등이 개별관리하는 D/B를 통합관리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4	'95~'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	-
사 업 비	계	2,032		1,495	537	-	-
	보 조 자부담	2,032		1,495	537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추진배경

- 개량관련기관의 분산으로 개량정보의 수집·분석 및 공동이용에 제약이 있어
- 개량기관간 또는 농가와의 정보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사업내용

- 축종별 가축개량 자료의 상세분석 및 설계
 - 가축개량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S/W 개발
- 가축개량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축종별 D/B구축에 따른 S/W개발비 지원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사업비(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기금사업비 계		537	537	537			
○ 축종별 S/W개발비							
- D/B 설계		295	295	295			
- 입·출력설계		109	109	109			
- 관련프로그램 작성		102	102	102			
- 테스트및운용		31	31	31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 사업대상 : 가축개량총괄기관(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등 가축개량관련기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성환 0417-581-2081)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0455-63-8635)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사업대상기관들의 요구를 종합·조정하여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 추진

◦ 사업추진방법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기술력을 갖춘 S/W개발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제안서 요구후 축종별 분야별 전문성을 요하는 적합한 경쟁입찰대상자 선정후 축협중앙회장에게 제안서 및 입찰대상자를 제출
- 축협중앙회장은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이 제출한 제안서 및 입찰대상자를 종합 분석·검토한후 입찰·낙찰 및 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사전협의 추진

◦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예산범위내에서 낙찰 및 계약 결과에 의거 실적별로 구분 지급 및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사업계획의 총괄추진 및 지도
- 개량관련기관은 전산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양성등 사전준비
- 전산기기 및 개발된 S/W는 사업대상기관들이 공동 활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전산용 기기 및 개발된 S/W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능하는 사업대상 자담으로 구입 대체 사업중단 및 사업폐지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가축개량총괄기관장 → 농림부장관)

- '97세부교육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73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 (공공)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1. 목 적

-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농가별, 개체별로 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쇠고기·우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계획교배실시로 고급육생산 확대
-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안정제 실시기반 구축
- 소 개체별 질병기록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천두 13,150	2,530	1,180	1,180	1,180	7,080
사업비(보조)	백만원 133,490	11,989	12,024	12,709	13,824	82,944
- 촉발기금	11,989	11,989	-	-	-	-
- 농특회계	121,501		12,024	12,709	13,824	82,944

※ '95 신규사업으로 추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계획

- 사업량 : 1,180천두 (한육우 880, 젓소 300천두)
 - ※ [붙임 1] 바-코드귀표장착계획 참조
- 사업내용
 - 한육우·젓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고유번호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여 전산입력관리
 - 시·군 소 전산화추진위원회에서 소 전산화요원(인공수정사등)으로 하여금 농가별, 개체별 조사표를 작성·확인하여 우선 시·군 양정계 또는 농림부 통계출장소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산입력하고 축산계에 전산단말기 개통이후에는 축산계에서 전산입력
 - 소 사육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원부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송아지생산 및 도축등 변동상황 전산입력
- 지원사업
 - 농가조사사예비 : 한육우 및 젓소송아지 생산농가에 두당 6,000원 상당의 인공유사료 공급
 - 바-코드귀표장착비 : 소 개체별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송아지에 바-코드 귀표를 장착한 전산화요원(인공수정사등)에게 두당 3,000원 지급
 - 전산입력제비용 : 소 전산화에 필요한 재료비 및 수용비등
- 재원 및 지원조건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보조 100%

나. '97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천두,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업비(보조)	비 고
계		12,709	
○ 자치단체경상보조(305)		10,620	
- 농가조사사례비	1,180	7,080	
- 바-코드귀표장착비	1,180	3,540	
○ 민간경상보조 (304)		2,089	
- 전산등록제비용	-	2,089	

※ [붙임2] 사업비지원 계획 참조

<추진체제>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군수 (협조 : 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4-9436~7)
농림부 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02-503-7257~9)
- 시·도 : 축산과(농정과)
- 시·군 : 축산과(농산과)축산계
- 기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산사업부(02-588-9301~5)

다. 신 청

- 자격 : 전국의 한육우 및 젖소사육농가
- 절차

한육우·젖소 송아지생산통보(농가 → 소 전산화요원) → 소 전산화요원 조사·확인(인공수정사등) → 조사·확인내용보고(소 전산화요원 → 시·군 추진위) → 조사표 작성 및 바-코드귀표장착(소 전산화요원) → 농가조사사례비 및 바-코드귀표장착비 배정 (시·도 → 시·군) → 시·군에서 개별계좌에 입금(소 전산화요원별) 및 인공유사료 공급요청(한육우 송아지 생산농가) → 송아지 생산두수에 대한 인공유사료 공급(한육우 사육농가는 사료공급권 제시)

※ [별표1] 사업시행체제도 참조

○ 사업시행

- 축통 51551-137('96.5.28)호의 '96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 실시요령 보완지시에 의하여 추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소 전산화자료 활용 제한

-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획, 계획교배등 개량사업 및 방역자료와 부수적으로 도난 및 밀도살 근절등의 자료로 축산진흥 목적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 개인의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소 전산화자료의 불법유출 금지

- ※ 전산입력자료 불법유출시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법률제 4734호, '94.1.7)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장, 군수는 사업비지급요령에 의거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수시점검하고 보조금의 임의전용 및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장비등 취득 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 취득장비 등의 사후관리책임자는 수시 정비·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각종 조사표 관리 보관

- 소 사육농가 실태조사표 및 소개체 전수조사표는 읍·면·동별, 일련번호 별로 보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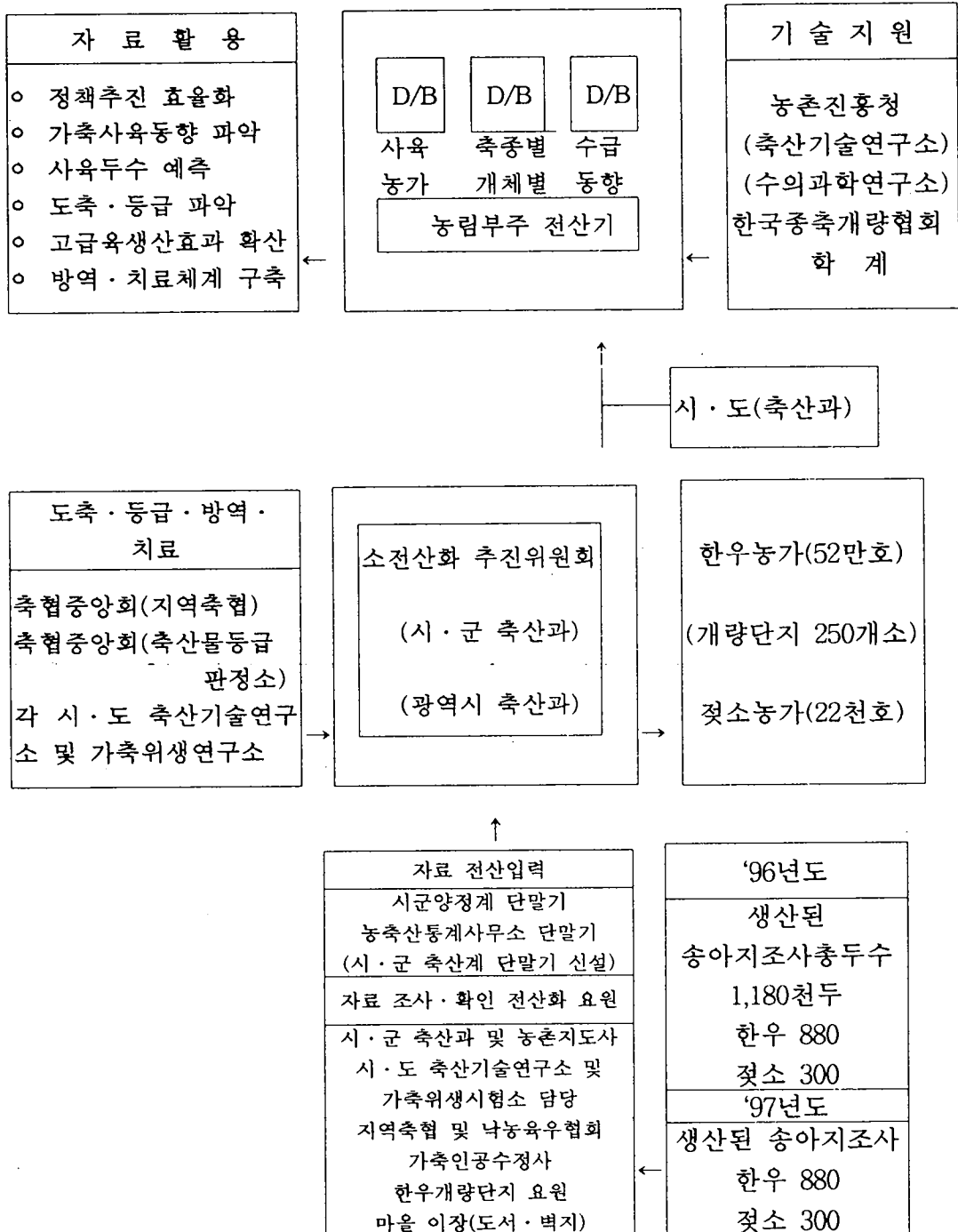
- 기타 조사표는 조사표종류의 순서별로 구분정리하여 별도 보관 관리
- 각종서식 보관장은 별도 캐비닛을 이용 보관 관리하고 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건장치 설치 관리
- 자료열람이 필요시는 추진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열람
- 조사표 보존기간 : 1) 소 사육농가실태 및 소개체 전수조사표 : 5년
 2) 입력디스켓 : 입력후 즉시 폐기
 3) 기타조사표 : 5년
- 자재관리 및 운용
 - 바-코드귀표 : 바-코드귀표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항시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장착기 : 전산화요원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인수증을 보관

나. 보고

- 보조금 사업비 정산결과
 - 시·도 : 매분기별 바-코드귀표장착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농림부에 보고
 ※ [붙임 3] 사업추진 실적 보고양식 참조
 - 한국종축개량협회 : 매월별 전산등록제비용 집행 및 추진실적을 농림부에 보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산

[별표 1]

사업추진체계도



[붙임 1]

바-코드귀표장착 계획

(단위 : 두, 천원)

	한 육 우	젓 소	계
서 울	10	140	150
부 산	1,450	1,190	2,640
대 구	4,030	3,300	7,330
인 천	3,450	5,130	8,580
광 주	2,320	700	3,020
대 전	1,950	460	2,410
경 기	47,270	124,130	171,400
강 원	59,770	13,460	73,230
충 북	62,660	15,790	78,450
충 남	127,950	45,440	173,390
전 북	80,240	19,810	100,050
전 남	170,440	18,860	189,300
경 북	163,800	27,210	191,010
경 남	143,760	21,360	165,120
제 주	10,900	3,020	13,920
합 계	880,000	300,000	1,180,000

※ 산출근기 : '96.9월말 가축통계 가임암소를 한육우59.9%, 젓소68.5%적용산출

[붙임 2]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농가조사사례비			바-코드귀표장착비			합 계
	한육우	젓 소	계	한육우	젓 소	계	
서 울	60	840	900	30	420	450	1,350
부 산	8,700	7,140	15,840	4,350	3,570	7,920	23,760
대 구	24,180	19,800	43,980	12,090	9,900	21,990	65,970
인 천	20,700	30,780	51,480	10,350	15,390	25,740	77,220
광 주	13,920	4,200	18,120	6,960	2,100	9,060	27,180
대 전	11,700	2,760	14,460	5,850	1,380	7,230	21,690
경 기	283,620	744,780	1,028,400	141,810	372,390	514,200	1,542,600
강 원	358,620	80,760	439,380	179,310	40,380	219,690	659,070
충 북	375,960	94,740	470,700	187,980	47,370	235,350	706,050
충 남	767,700	272,640	1,040,340	383,850	136,320	520,170	1,560,510
전 북	481,440	118,860	600,300	240,720	59,430	300,150	900,450
전 남	1,022,640	113,160	1,135,800	511,320	56,580	567,900	1,703,700
경 북	982,800	163,260	1,146,060	491,400	81,630	573,030	1,719,090
경 남	862,560	128,160	990,720	431,280	64,080	495,360	1,486,080
제 주	65,400	18,120	83,520	32,700	9,060	41,760	125,280
합 계	5,280,000	1,800,000	7,080,000	2,640,000	900,000	3,540,000	10,620,000

※ 송아지 마리당 지급액 : 농가조사사례비 6,000원, 바-코드귀표장착비 3,000원

[붙임 3]

추진실적 보고양식

1. 바-코드표장착 실적

(단위 두, %)

시·군 별	계 획			실 적			B/A
	한육우	젖소	계 (A)	한육우	젖소	계 (B)	
합 계							

2. 사업비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

시·군 별	농가조사사례비			바-코드표장착비			합 계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합 계									

74	축산경영여건 개선(공공)
-1	(경영상담 및 지도)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설규모 확장등으로 전업농으로 성장하고 있거나 전업화된 개별농가에 대해 전문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진단과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함
- 특히 정책자금 지원대상농가에 대한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므로써 자금지원 효과를 높여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양축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킴

2.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축협)를 중심으로 종합상담기능 강화
 - 축협중앙회와 개별조합간에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요원 확보 및 상담 전담화
- 조합별로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개별 농가단위 경영상담·지도 실시 및 중앙단위에서의 전체 농가관리와 자료·정보제공
- 향후 축산사업 신청·채택시 감리·평가기능까지 수행하는 방안 모색
 - 정책지원 대상자는 경영상담·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및 제57조 제1항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1항

4.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설명

- 지금까지 사육규모만을 늘리는 획일적인 시설설치 위주의 자금 지원방식을 벗어나 효율적인 투자와 경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별농가의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등을 파악
 - 축협중앙회에 경영상담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경영·환경·기술등 분야별로 상담 전문요원 확보
 - 기본계획 수립 및 경영상담 프로그램 개발
 - 시·도지회 및 조합요원 교육
 - 축산단지등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한 현장 경영상담 실시등 수행
 - 전국의 모든 조합이 경영상담·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조합의 참여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조합에 대한 조합육성자금 지원 (75.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 참조) 및 '97년중 도별로 우수 경영상담조합을 선정하여 관련 경비 일부 지원
 - 우수 조합선정 및 지원액 결정은 별도 선정기준에 의함
 - 조합별로 전문지도요원을 선정하여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상담을 실시하되 축산단지 및 농가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관리
 - 당해년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 과거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 축산전업농 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일정규모이상 농가
- ※ 각 조합별로 자체실정에 맞추어 위 순위를 중심으로 경영상담·지도 대상농가 선정

나. 경영상담·지도방법

□ 벤치마킹제(단계별 경영혁신제) 도입

- 축종별 표준경영모델 및 단계별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대상농가 평가
 - '96년중 표준경영모델 및 평가지표를 경영체별·축종별로 확정하여 경영상담사업 참여조합에 배부토록 함
- 경영규모, 경영능력등을 감안, 등급화하여 단계별로 적합한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상담 실시
- 평가지표를 전산화하여 경영체의 단계별 목표와 전체 농가상태를 비교하게 하므로써 경영개선 촉진

□ 전산 프로그램 개발·활용

- 농가의 경영방법 개선을 위한 경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 개별 농가단위의 File 비치·운영
- 컨설팅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프로그램 개발
 - 컨설팅 전체 대상농가, 벤치마킹 프로그램, 경영상담실적, 각종 경영 상담 자료 등을 입력 활용

□ 상담·지도·교육기능 강화

- 경영표준모델 견학 및 교육·학습기회 제공
- PC 및 전화상담 활용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 립 부 : 축산정책과(504-9431~3)
- 축협중앙회 : 축산종합컨설팅 본부
- 시·군 : 컨설팅 수행 축협(지역 및 업종)조합

<행정사항>

가. 보 고

- 축협중앙회장은 '97년도 경영상담 및 지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경영상담 전담기구 설치·운영과 세부사업 시행지침 및 우수조합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96.12.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축협중앙회장은 '97 사업평가결과를 '98년도 1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나. 사후관리

- 조합별로 컨설팅 농가 사후관리 및 사업평가 자체 실시, 중앙회에 반기별로 보고

74	축산 경영여건 개선(공공)
-2	(양축농가 해외연수)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적

- 전문 양축농가등의 새로운 경영능력 배양과 양축의욕 고취
- 선진 축산국의 축산기술 도입·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추진방향

- 전문 분야별(축종별)로 양축농가등을 엄선하여 연수 실시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유통분야
- 연수효과 증대를 위하여 현지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현장실습등 추진
 - 연수기간 : 10~15일간
 - 연수 대상국의 축산관련 업체(농가, 시험연구기관, 생산자단체등), 현장견학 실시 및 축산 전문가와의 면담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4. 년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04
사 업 량	102개반 1,699명	44 715	8 130	8 132	6 102	36 612
사 업 비	백만원 3,456	1,045	311	398	300	1,800

※'98부터는 축산기술 지도요원 연수로 사업 추진방향 전환 검토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분 야 별	연수대상국	연수계획인원	연수시기	연수기간	연수대상자
육우 1반 2반 3반	일 본	16명	5월	10일간	한육우사육농가
	일 본	16명	7월	10일간	“
	일 본	16명	8월	10일간	“
낙 농 반	일 본	17명	7월	10일간	젖소 사육농가
양돈 1반 2반	덴 마 크	17명	6월	15일간	돼지 사육농가
	네덜란드	17명	6월	15일간	“
양 계 반	네덜란드	17명	6월	15일간	산란계사육농가
유 통 반	대만·호주	16명	9월	15일간	유통분야종사자
합 계	5개국	132명	5~9월	10~15일간	

※ 연수 대상국 및 시기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 여행경비 지급기준
 - 연수에 소요되는 직접 연수비 및 행정비
 - 직접 연수비 : 숙박비, 항공료, 현지 교통비, 교육 등록비 및 안내비등
 - 행정비 : 현지 업무추진비(인솔경비등 포함)
- 경비부담
 - 축산농가, 유통분야 종사자 : 축산발전기금 70%, 자부담 30%
 - 지방공무원 : 소속기관 100%
 - 인 소 : 축산발전기금 100%
 - 여권발급 수수료 및 준비금등 : 전액 자부담(연수자 공동)
- '97 소요 예산액 : 축산발전기금 398백만원(잠정).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림부

- 농림부 :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확정등
- 축협중앙회 : 세부 실천계획 수립 추진, 세부 연수일정 수립, 연수추진, 사전·사후교육, 예산집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 504-9431)
- 축협중앙회 : 중소가축부(02. 224-8806)
- 시·도(시·군) : 축산과(축산계)

다. 대상자 선정

연수 대상자 자격요건

- 양축농가 : 연수분야의 축종을 '96. 12월말 현재 5년이상 직접 자영하고 있는 27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업농가로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
 - 한육우 : 번식우 10두이상 또는 비육우 50두이상 사육농가
 - 젖 소 : 착유우 30두이상 사육농가
 - 양 돈 : 번식돈 50두이상 또는 비육돈 500두 이상 사육농가
 - 양 계 : 산란계 20천수 이상 사육농가
- 유통종사자 : 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자, 도축장 경영자, 축산물 유통관련 업체 관리자,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등
- 지방공무원 : 축산시책 유공 공무원

선정절차 및 보고

각 반별 대상자는 [별지 제1,2,3호 서식]에 의거 '97.2.28까지 농림부로 추천

- 양축농가 : 시·도 및 생산자단체(축협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
 - *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등 전문 생산자 조직 참여농가 우선 선정
- 유통종사자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축산정책과로 추천
- 지방공무원 : 축산시책 유공자를 우선 선정

□ 대상자 확정 및 연수추진

- 농림부(축산정책과)는 각 도등으로 부터 추천된 대상자를 검토 확정하여 연수단을 편성하고 동 내역을 해당 시·도 및 축협중앙회에 통보
- 축협중앙회에서는 세부추진요령에 의거 연수 실시
- 추천 인원 배정내역 : [별표 2]

라. 여행경비 납입

- 양축농가·유통종사자의 자부담액(30%) 및 지방공무원의 경비는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징수후 정산
 - 세부 납입방법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는 축협중앙회에서 별도 개별통지
 - 출국예정 20일전까지 개인별 부담액을 납입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축협중앙회에서 1차 통보하고, 이후 15일전까지 납입하지 않을시에는 연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부에서는 예비후보자로 대상자 변경 조치
- 개인별 부담액을 납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수에 불참할 경우 대상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축협중앙회에서는 해당 납입액 전액 환불조치
 - 연수 대상자의 불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요경비 부족분은 축산발전기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조치

<행정사항>

- 도지사는 확정된 연수 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반별로 예비후보자를 1인이상 선정 확보(지방공무원 동일)

- 연수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부득이 연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서를 제출받고 기 선정 확보된 예비후보를 대체하여 즉시 농림부에 보고
- 각 연수반별 인솔 책임자는 귀국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작성 농림부 축산정책과로 제출(해당 소속 기관에 제출할 귀국보고서는 개인별 별도 제출)
- 각도는 연수 성과의 파급효과 거양을 위하여 연수자로 하여금 직장교육, 농민교육등을 통하여 연수결과 발표 및 홍보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위 본인은 '97 축산농가등 해외연수사업의 연수자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해외연수자 준수사항(별첨1)을 완전 숙지하여 여행시 철저히 준수하고, 귀국시 분수에 넘치는 외국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2. 해외연수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여행중 불미스런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위반통보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1997.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농 립 부 장 관 귀하

[별지2호서식]

사 진
(3×4 Cm)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추천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연수분야		연수대상국			
주 소	전화번호			() -		
최종출신학교	축산업종		축산경력			
2. 축산경영 규모						
경 지 규 모		사 육 축 종		축 사 현 황		기 타
논	평	한	육	우	두	평
밭	평	젓	소	두	두	평
사료포	ha	돼	지	두	두	평
초 지	ha	닭		천수		평
3. 현지조사 결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피 추 천 자	품 행					
	지역사회 기여도					
	총 합 의 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연수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1997. . .

추천관 ○○시·도 (직위) (성명) (인)

농 립 부 장 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축산농가등 해외연수 신청서

(시·도 보관용)

인 적 사 항		주민등록 번 호	연 수 회 망 분 야	연 수 회 망 시 기	영 농 경 력	자부담 가 능 여 부	해외 여행 유무	비고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해외연수를 신청합니다.

1997.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별표 1]

해외 연수자 준수사항

1. 연수자 의무 이행사항

- 연수자는 본 연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목적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 대한민국 국민(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수자는 인솔 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며, 연수 종료 후 지체없이 귀국한다.
- 여행경비중 여권수속 비용과 준비금 등은 자부담으로 하며, 대상자 확정후 부득이 연수를 포기할 경우 출국예정 20일전까지 포기서를 제출한다.

2. 신변 안전조치

- 인솔 책임자는 현지 도착 및 종료후 즉시 주관기관 및 관할 재외공관 장에게 연수계획 및 소재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축협중앙회장은 연수기간중 발생할 질병·사고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2]

‘97 분야별 연수대상자 배정 계획

도별	육 우			낙 농 반	양 돈		산란계반	합 계
	1반	2반	3반		1반	2반		
경기	3(1)	1	1	2	2	2	2(1)	13(2)
강원	1	2(1)	1	2	2	2(1)	2	12(2)
충북	2	1	1	2(1)	2	2(1)	2	12(2)
충남	1	3(1)	2	2	1	2	2(1)	13(2)
전북	2	1	2	2(1)	2(1)	1	2	12(2)
전남	1	2	3(1)	1	2	2(1)	1	12(2)
경북	1	1	3(1)	2	2(1)	2	2	13(2)
경남	2	3	1	2(1)	1	2	2(1)	13(2)
제주	2(1)	1	1	1	2(1)	1	1	9(2)
소계	15(2)	15(2)	15(2)	16(3)	16(3)	16(3)	16(3)	109(18)
인솔 ·통 역	1	1	1	1	1	1	1	7
합계	16(2)	16(2)	16(2)	17(3)	17(3)	17(3)	17(3)	116(18)

주) 1. ()내는 지방공무원 배정 인원으로 외서에 포함되어 있음

2. 유통반 배정 인원 : 16명

- 유통종사자 13명 : 도매시장, 도축장, 식육유통업체, 식육처리기능사, 식육전문가등
- 시·도공무원 2명 : 대구광역시 1, 강원도 1
- 인솔 1명 : 농림부에서 선정

74	축산경영여건 개선(공공)
-3	(축사표준설계도및 분뇨처리시설개발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분뇨처리시설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적

- 축산경영의 합리화로 양축농가의 생산성향상 및 축사설계에 따른 편의제공
- 다양한 규모의 표준축사모델 개발 보급으로 양축농가 선택의 폭 확대
-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설계도를 개발·농가에 보급

2 추진방향

- 각 축종별로 농가가 선호하는 축사모델을 조사·개발
- 전업농, 규모화에 맞는 모델 개발
- 시설 및 자재의 규격화로 시설비의 경감
- 축종별, 규모별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 모델별로 표준설계도 제작

3. '97사업비 : 461백만원(축산발전기금사업)

- 축사표준설계도 : 253백만원
- 분뇨처리표준설계도 : 208백만원

4. '97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나. 사업현황

(1) 사업내용

- 전업화, 규모화에 맞는 모델을 조사·선정하여 설계도 개발
-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모델 확정

- 표준설계도 작성 및 관계부처 심의 인정
- 표준설계도 제작보급으로 양축농가 활용
- 퇴비화, 액비화 시설 표준설계도 개발 보급
 - 퇴비사, 액비탱크(원형, 사각), 통풍식, 기계교반형(에스컬레이터식, 로타리순환식), 원형발효조, 건조로(종형, 횡형)등

(2)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3) 지원규모 및 조건 : 표준설계도 제작보급에 필요한 경비 보조

다. 사업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양축농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델 확정
 - 젓소운동장 비가림시설등을 포함한 표준설계도
- 확정된 모델의 설계 및 관계부처 심의 요청

<행정사항>

가. 보고

- 세부사업추진계획 보고('96.1월말까지)
- 협의회 결과보고 및 추진상황보고(수시)
- 사업추진결과 보고(완료후 20일 이내)

나.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 (02-504-9434)
- 축협중앙회 축산기술환경지원부(02-224-8114)

74 -4	축산경영여건 개선(공공) (축산자조금)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기하고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2.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등에 의한 축산물가격안정 유도
- 축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3조

4. '97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

○ 사업비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축발기금)			비 고
		합 계	보 조	자 부 담	
자조금 지원사업	개소 2	600	200	400	

○ 지원조건 및 방법

- 연도별로 자조금 사업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자조금 사업 운영계획을 승인받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지 50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 축협중앙회장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을 확인하여 보조금교부 및 지급

<행정사항>

○ 보고

- 사업운영계획 : 1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보고 : 익년 1월말까지
- 자조금에 의한 행사추진계획시 : 수시보고

74 -5	축산경영여건 개선 (공공) (가축공제 시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1. 목 적

- 폐사 가축에 대한 보상 지원제도가 없어 폐사축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내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여건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본 사업 시행전에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 및 본사업으로 구분 시행
 - 시범사업 ('97.1~98.6) : 시범사업 추진 및 용역 의뢰
 - 본 사업 ('99.1부터) : 전국확대 시행(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 인건비, 사무경비 부문은 축협과 양축농가에서 각각 분담하고 농가지급 초과 공제금은 축협에서 부담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47조~제5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70천두	-	-	70		
사업비	계	백만원 1,100	-	-	1,100		
	보조				600		
	융자 지방비 자부담				500		

※ '97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평가, 분석한후 본 사업시행여부 검토

5. '97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시범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도별로 1~2개 조합을 선정, 한육우·젖소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기초자료 수집 분석, 세부시행 절차 점검 및 경험을 축적하고자 함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협 조 : 시·도(공수의),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대상 조합 : 조합의 신청을 받아 축협중앙회에서 선정
 - 선정자격 : 한육우는 지역축협, 젖소는 낙농조합
 - 선정기준 : 조합의 재정여건, 전문인력 확보, 지역안배 등
 - 사업규모 : 70천두 (한육우 35, 젖소 35)
 - 공제대상 가축 : 한육우, 젖소 (6개월령이하의 송아지는 제외)
 - 가입자격 : 소 수급관리전산망에 등록된 것
 - 가입방법 : 농가 자율가입
 - 가입단위 : 포괄가입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입자격을 갖춘 소 전두수)
 - 농가의 개체별 선택가입은 인정하지 않음
 - 공제금 지급범위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살처분보상금 대상은 제외)
 - 재해로 인한 폐사(재해대책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가축은 제외)
 - 절박도살우 (긴급도축우 제외)
 - 공제요율 : '93~'95(3년간) 평균폐사율과 안전부과율을 감안
 - 한육우 : 0.24% (계약액 100만원 가입시 2,400원)
 - 젖 소 : 2.22% (계약액 100만원 가입시 22,200원)
- ※ 농가는 동 공제료의 50%만 부담하고 정부보조 50% 지원

- 공제기간 : 1년단위 (6개월단위도 가능)
- 공제금 가입범위 : 두당 산지시가의 30~80%범위에서 선택 가입
- 지원조건
 - 공제료 : 축발기금 50%, 농가 50%
- 사업비 : 1,000백만원 (축발기금 500, 농가 500)

(2) 세부사업요령

□ 사업대상 조합 선정

- 축협중앙회는 동 사업내용 및 시범조합 선정계획을 전 회원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신청을 받아 선정
 - 선정완료 : '97.1월까지
 - 선정자격 : 한육우는 지역축협, 젓소는 낙농조합
 - 선정기준 : 조합의 재정여건, 전문인력 확보, 지역·업종 고려 등
 - 우선순위 : 선정기준을 고려해 축협중앙회에서 자체 우선순위 결정

□ 농가 가입 신청

- 농가 자격 : 축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양축가
- 가입 단위 : 농가가 사육중인 가입자격을 갖춘 소 전두수를 일괄가입
 - 개체별 선택가입은 인정하지 않음
 - 환축과 노령우 비율이 대상축의 1/2이상일때는 가입할수 없음
- 가입기간 : '97.상반기
 - 사업결과 분석 및 본사업 준비를 위하여 '97년은 가입시기 제한
 - 6개월단위 미만 가입시는 하반기에도 가입 가능
- 가입범위 : 전두수의 산지시가 30~80%범위내에서 동일비율로 가입
- 농가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 ①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공제요율) - 정부부담 (50%)
 - ② 조합 사무비 : 해당 조합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공제 가입금액의 0.3%범위내에서 결정

○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서 제출 : 조합에서 정한 신청서 및 계약청약서 첨부
- ② 신청농가의 가축 심사 및 가입비 통보 : 신청서 접수로부터 1주일내
- ③ 농가의 가입비 납부 : 조합의 가입비 납부통보일로부터 15일내
- ④ 조합의 공제증권 발급 : 농가에서 가입비를 납부하면 즉시
- ⑤ 조합의 공제책임 개시 : 농가 가입비 납부시점에서 1개월후부터

□ 조합의 농가, 가축심사 및 가입비 납부 통보

- 담당 : 관할 조합의 가축공제 담당으로 위촉된 자
 - “가축공제 가입 현지확인서” 양식에 의거 현지 심사, 평가
- 심사기준
 - 농가 및 가축의 가입자격 구비여부
 - 개체별 귀표, 연령, 체중, 건강상태 검사 등
- 평가 (두당 및 전 가입두수에 대한 산지시가 결정)
 - 기준 : 축협조사월보 기준으로 전월 전국평균산지가격 적용
 - 한육우는 체중별, 젖소는 산차별 가격을 구분 산출하여 합산
- 공제료 산출
 - 개체별 가격을 합산, 전체 가입두수의 가액을 산정하여 동일 비율 (시세의 30~80%범위내)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산출
- 가입비 납부 통보
 - 가입승낙통지서 및 가입비 납부명세서를 우편으로 농가에게 통보

□ 계약후 가입농가가 조합에 의무 통지하여야 할 사항

- 개체표시(귀표)가 떨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 가축의 이동이 있을 때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때

□ 공제금 지급(보상)

- 지급기한 : 공제금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제보상의 범위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살처분보상금 지급대상가축 제외)
 - 재해로 인한 폐사(재해대책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가축 제외)
 - 절박도축우(긴급도축우 제외)
- 보상하지 않는 사고의 종류
 - 계약자 및 고용인등의 고의적인 폐사
 - 가입농가의 의무 통지사항을 불이행
 - 가축을 도난, 분실하였을 때
 - 기타 축협중앙회장이 보상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지급절차
 - ① 사고발생시 조합(가축공제 담당자)에게 신고
 - ② 조합은 가축방역관(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 또는 공수의)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조사 및 폐사축 처리
 - 사고경위, 죽은가축 검안, 폐사축의 처리(소각 또는 매몰) 등
 - 일반 사고로 인한 폐사 : 공수의 주관하에 폐사축 검안 및 처리
 -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 : 가축위생시험소 주관하에 검안 및 처리
 - ③ 농가의 공제금 지급 신청
 - 공제금 지급청구서, 공제증권, 죽은 가축 검안서, 폐사축 처리 증명서(사진 첨부), 기타 축협의 요구하는 서류 첨부
 - ④ 조합에서 관계서류 첨부하여 축협중앙회에 공제금 지급 신청
 - ⑤ 축협중앙회는 서류 확인후 조합에 공제금 지급(조합은 농가지급)

□ 기타 사항

- 폐사축의 잔존물 평가 : 폐사축은 소각, 매몰을 원칙
- 가입가축의 이동(권리 승계)
 -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그 가축의 권리는 제3자에게 승계됨(공제기간동안)
 - 도축시에는 권리 소멸

□ 정부지원 공제료의 운용체계

- 정부지원 공제료는 분기별로 자금 집행
 - 축협(상호금융공제부)은 분기별 가입실적을 매분기익월 15일까지 제출
 - 농림부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축협(기금관리부)에 자금집행 통보
- 시범사업 완료후 정산결과 적립금이 남을 경우
 - 축발기금 지원분은 반납
 - 농가 납부분은 다음년도 공제요율 결정시 남은 금액을 요율에 반영
 - ※축협에서는 가축공제료를 별도 회계처리하여 관리
- 농가에 지급되는 공제금이 부족할 경우
 - 축협중앙회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고 다음년도 공제요율 산출시 반영

□ 공제사업 조직 운용

- 축협중앙회 및 도지회
 - 교육 및 홍보 추진
 - 공제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시범조합과 연결)
 - 시범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
 - 시범조합별 가축공제담당자 위촉 및 지도
- 시범조합
 - 가축공제업무 실무 추진
 - 가축공제담당자 운영 지원
 - 가입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교육 및 지도
- 가축방역관 (가축위생시험소 및 공수의)
 - 사고발생시 현지확인 및 병성검사 실시 (폐수검안서 발급 등)
 - 폐사축에 대한 소각, 매몰 처리

□ 동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사업 실시요령은 축협중앙회장이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

(2) 연구용역 실시

필요성 :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객관적인 평가, 분석 및 본 사업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함

세부내용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내용
 - 시범사업의 평가, 분석
 - 본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시행절차
 - 정부 지원방향 및 방법
 - 농가여론 동향 및 기대효과 분석
 - 가축공세 자료수집 및 분석 (공제요율, 대상축종, 공제범위 등)
 - 지역별, 원인별 사고발생빈도 및 피해액 산출
 - 외국(일본, 미국, 태국)의 가축공제제도 수집
- 용역기간 : '97.4~'98.3 (1년간)
 - 용역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실시 : '98.4월

용역비 : 100백만원 이내(축발기금)

- 인건비 (7명) : 50백만원 정도
- 여비, 농가 조사비, 유인물비, 자료구입비 등 : 50백만원 정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97.1월말까지 세부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축협중앙 회장에게 제출하고, 축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 체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백만원	예산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70천두	1,100	600	600	-	-	500
○ 특수가축공제							
-시범사업	70	1,000	500	500	-	-	500
-연구용역		100	100	1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02-504-9436/7)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상호금융공제부 (02-224-8746))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축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
- 사업비 지원방법
 - 분기별 가입실적에 의거, 농림부에서 자금집행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가입자격여부, 보상금 적정지급여부, 업무처리 적정성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 점검 실시

나. 보고 기타

- 분기별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 : 매분기 익월 20일 이내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74 -6	축산경영여건 개선(공공) (가축박람회)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입니다

1. 목적

- 닭고기, 계란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
- 국내외 양계관련 기자재등의 비교전시를 통한 상호기술 및 정보교환
- 양계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양계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

2 기본방향

-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추진
- 점진적으로 수익사업이 되도록 추진

3. '97사업 시행요령

<사업개요>

-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업시행기관 : (사)대한양계협회
- 사업기간 : '97년중(격년제로 실시)
- 사업내용
 - 전시행사 : 기자재 및 시설전시, 양계사육시설, 닭 및 양계산물등
 - 홍보행사 : 양계산물, 전시판매 및 시식회, 소비홍보 포스터 공모, 우수양계인선발대회, 글짓기대회등
 - 양계관련 세미나, 양계인대회등
- 지원내용 : 행사비의 일부보조
- 지원금액 : 95백만원

<행정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 양계박람회 추진실적 보고(완료후 30일 이내)
- 사업안내기관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2689)

74 -7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교육·홍보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강화
- 농가 기술교육·홍보등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협회, 단체 등의 사업을 활성화

2. 추진방향

- 교육 홍보의 효과 증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홍보매체 활용
 -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소비등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 팜프렛, 리후렛, 순회교육, 경연대회, 세미나 개최등 다양한 홍보방법 활용
- 동교육이 전업농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상담 및 지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4. '97 주요 교육·홍보과제

- 양축농가 기술·경영교육
 - 축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등 현장 애로기술
- 소비자 및 식육유통종사자에 대한 위생적 육류 취급요령 교육·홍보
 - 육류의 위생적 취급 및 육류 선택방법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위한 양돈농가 교육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 및 유해물질 잔류방지 교육·홍보
 - 수입개방에 대응한 위생적인 육류생산공급
-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방역 교육·홍보
 -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방지
- 기타 축산관련 정책내용 교육·홍보

5. '97년도 교육·홍보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자	교육(홍보)사업	대 상	'97예산안
합 계(24건)				1,132
1. 소값안정대책 리후렛 제작	축협중앙회	리후렛 (250천부×2회)	일선행정기관, 관련단체, 양축가 소비자	60
2. 육류취급요령 안내책자 제작	축협중앙회	안내책자 (600천부)	판매점, 금융점포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3. 한우고급육생산 기술교육	축협중앙회	순회교육 교재(10천부)	한우사육농가, 단체, 각기관기술지도요원	53
4. 한우 다큐멘터리 제작홍보	KBS	TV홍보	양축가, 소비자	100
5. 낙농기술강습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순회교육(4,000)	낙농가	60
6. 낙농기술지도 교육	축협중앙회	순회교육	낙농가	
7. 낙농전문헬퍼 교육	축협중앙회	집합교육	헬퍼(기존70, 신규20)	10
8. 우유소비홍보	낙농관련단체 및 협회	홍보매체(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리후렛)	소비자	113
9.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	한국낙농육우협 회 및 한국사료 영양학회공동	국제학술세미나	낙농가, 학회, 관련단체, 유가공업체, 학계	17
10. 양돈기술교육	양돈산학협동연 구회	집합교육	실무자 (5박6일) 경영자(2회)	14

세부사업명	사업자	교육(홍보)사업	대 상	'97예산안
11.양봉산업육성 교육	한국양봉협회	순회교육 및 세미나	양축농가	28
12.축산환경개선 운동	축협중앙회	교재(3,500부) 리후렛(100천부)	일선행정기관관련 단체	98
13.축산분노자원화 교육	축협중앙회	순회교육(10회)	양축가	53
14.축산물유해잔류 물질방지교육 홍보	축협중앙회	순회교육, 리후렛 (100천부) 소책자(10천부)	양축가, 생산자단체	
15.양축농가방역 교육	한국낙농육우 협회등	순회교육	양축농가 (5,300명)	
16.가축방역편람 제작	축협중앙회	책자(2,000부)	행정기관 관련단체	
17.가축방역홍보용 비디오테이프제작	축협중앙회 (수의과학연구소)	비디오테이프 제작 보급 (200개×2종)	양축가, 생산자단체	
18.축산시책홍보	축협중앙회 전문지등	교재(1000부) 전단(300천부)	양축농가 관련단체	50
19.축종별경쟁력 강화사업대상자 교육	축협중앙회	순회교육 (2일간)	양축농가 (6,300명)	60
20.조사료생산사업 지도교육	축협중앙회	순회교육 책자발간,	양축농가	39
21.축협조합육성교육	축협중앙회	집합교육	양축가 회원조합	61
22.육류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한국육류수출 협회			196

세부사업명	사업자	교육(홍보)사업	대 상	'97예산안
23.세계축산학회개최 지원	세계축산학회 서울대회개최조직 위원회	제8회세계축산학회 개최	학계,관련단체, 양축가	60
24.축산학술용어집 발간	한국축산학회	용어집 (1,000권)		19

<추진체계>

○ 사업시행 방법

- 교육·홍보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주관과의 승인을 받아 교육·홍보사업을 실시. 다만, 별도의 교육실시 요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가축위생과 :
02-500-2688~2691
- 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 02-224-8608

<행정사항>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74	축산경영여건 개선(공공)
-8	(축분처리용 膨軟 왕겨생산시설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의 수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톱밥가격 상승 및 공급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 해소
- 미곡종합처리장에 팽연왕겨 생산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톱밥대체 품목으로 축분용 팽연왕겨 공급원활 도모

2. 추진방향

- 수분조절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
- 값싼 왕겨공급 및 톱밥가격 인하효과 도모로 농가부담 완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사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80	-	-	30	50	-
사 업 비	계	8,800	-	-	3,300	5,500	-
	용자	7,040			2,640	4,400	
	보조	-			-	-	
	지방비	-			-	-	
	자부담	1,760			660	1,1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왕겨를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축가열하므로서 수분 흡수율을 높일수있는 팽연왕겨 생산을 위한 기계 및 부대시설비 지원

※ 팽연왕겨의 개념

수분이 20-30%로 조절된 장치에 왕겨를 투입하여 압축열과 마찰열에 의해서 수분이 160-200℃ 수증기로 방출될 때 급격한 압력의 변화로 부피가 증가되고 왕겨조직이 파괴되어 부드러워지며 조직간에 구멍이 커져 수분 흡수가 좋아진 1 mm이하의 분쇄 왕겨

- (2) 지원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 30개소

- (3) 지원단가 : 개소당 110백만원

- (4) 지원기준

- 지원율 : 융자 8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5) 지원조건

- 왕겨생산량의 80%이상을 팽연왕겨로 생산
- 팽연왕겨를 축분비료화 시설업체 및 축산농가와 계약공급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용 자	보 조		
계	개소 30	백만원 3,300	2,640	2,640	-	-	660
축분발효용 팽연왕겨 생산시설지원	30	3,300	2,640	2,640	-	-	66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후 5년 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02- 504-9431~3)
- 시·도 : 농림수산물국 축산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축산과)

다. 대상자 선정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가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지원
 - 왕겨 생산시설 능력 대비 실제 처리를 많이하는 업체 우선지원
-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 왕겨 생산량의 80% 이상을 팽연왕겨 생산
 - 팽연왕겨를 축분비료화 시설업체 및 축산농가와 계약 공급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96.12.20일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96.12.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후 사업대상자 선정후 '97.1.20까지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장관은 '97.1.31까지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97.2.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통보

라. 사업시행

(1)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기간 : 1년

(3) 사업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유용 또는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기록한 일지 및 현장의 사업진척도를 확인,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에 통보하고 읍·면사무소는 이에 따라 사업비를 대출
- 사업비(자담포함)에 충족되는 시설이 투자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철저
 - 시설 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후 집행하는 방안 강구
- 예산회계법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읍·면사무소(축협)의 여신관리규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것과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실적(기성고) 확인에 따라 집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후관리 내용

- 사후관리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등을 년 1회 정기점검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그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함.
- 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할 것
- 행정기관 및 읍·면사무소는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 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시 자금회수등 적절한 조치

나. 보고기타

(1) 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비고
사업대상자 선정	'97. 2. 20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정기점검 평가보고	'98부터 매년도 1월말	사후관리 주관 기관	농림부, 시·도	

75 축산업협동조합 육성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축산농가의 전업화추세, 축산물 수입 자유화, 금융 자율화등 축산여건의 변화에 축협조합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양축가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로 육성
-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의 차별화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 및 자구노력을 유도

2. 추진방향

- 소액·분산식 및 전조합 균등배분 등의 자금지원 방식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성장 잠재력이 왕성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우수한 조합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졸업제 도입)
- 경영상태가 열악한 조합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없으며, 자구노력이 미흡한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을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4호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재 원 별		'97(예산안)	98	'99-2004
용 자	계	백만원 100,000	100,000	100,000
	축산발전기금	50,000	50,000	50,000
	축협중앙회 자금	50,000	50,000	50,000

※ 동일 운용규모로 회전용자되는 예산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필요성

- 축협조합은 축산여건의 변화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축협법시행령 개정('95.6.23)이후 위양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경영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축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 축협중앙회의 지원만으로는 일선 축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워 축산발전기금과 축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기금)에서 출연하여 조합육성자금을 만들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 축협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자

-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다.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 500억원, 연 3%
- 축 협 자 금 : 500억원, 무이자

※ 융자기간은 1년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당초 목적사업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차년도 예산계상 또는 상환기간 연장

라. 자금용도

- 축산물판매, 농가 경영상담·기술지도, 기자재공급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성 운영자금(시설설치자금 지원 불가)
- 축협조합 합병지원 자금

마. 자금내역

내 용 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축발기금 (용자)	축협자금
축협조합육성자금	100,000	50,000	50,000

※ 지원조건(축발기금 →축협중앙회) : 연 3%, 1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0-2688)
- 축협중앙회 : 회원지원 검사부 경영지원팀(02-224-8387)

다. 사업시행

○ 선정기준

-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실적이 우수한 조합
-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조합으로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조합

※ 경영개선의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조합으로서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합병 대상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합병 유도

○ 선정방법

-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의 표준경영모델 설정, 평가지표 마련, 평가실시 및 육성지원체계 확립(협동조합에 대한 벤치마킹제제도 도입)
- 지역조합은 경제사업 규모등을 고려하여 도별·권역별로, 업종조합은 전국을 권역으로 적정개소수 결정
- 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을 중점 육성대상 조합으로 선정·지원

※ 비수의사업인 축분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현행과 같이 별도 지원하되 5년동안 균분상환

- 선정절차
 - 축협중앙회장은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자금지원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승인을 얻은후 시·도지회 및 축협조합에 시달하고 평가 실시
- 자금지원
 - 중앙회에서는 평가결과와 자금지원 신청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필요시 현지 확인, 경영진단 실시 등)하여 지원여부 결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점검
 - 농림부장관은 연 1회이상
 - 축협중앙회장은 반기 1회이상

나. 보 고

- '97년 사업에 대해서 축협중앙회장은 11.15일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분기별 지원실적 : 축협중앙회장은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반기별 운영점검 상황 : 축협중앙회장은 반기말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76	사료제조시설설치지원 (공공)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적

- 농후사료와 조사료 분리급여에 따른 양축농가의 노동력부족 현상 해소
- 반추가축의 생산성향상을 통한 소득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권역별(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로 사료공급기지 1개소씩 설치
 - 사료공급기지에서는 양축농가와 섬유질사료 제조업체에 사료원료 공급
- 사료공급기지별로 10개 (대규모 3, 중규모 3, 소규모 4)의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설치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개소 44	16	-	6	11	11
사업비	계	백만원 21,530	8,230	-	3,104	5,318	4,878
	보조	-	-	-	-	-	-
	융자	13,426	4,115	-	2,173	3,723	3,415
	지방비 자부담	- 8,104	- 4,115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배경

- 반추가축의 경우 능력발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만연되고 있고,
- 섬유질사료는 거칠은 조사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
- 또한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이 상승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양축농가의 섬유질사료 수요증가

○ 지원대상자

- 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소 200두이상 사육농가

※ 지원대상 법인의 대상자격요건등

- 법인경영체는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협업체는 한우 또는 젖소사육농가 5인이상이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회칙(운영규정 등)을 갖추어 운영
- 법인경영체 및 협업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2년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장이 농업진흥지역안에 소재한 경우 '97사업부터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발, 산지등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 지원단가

- 사료공급기지 : 784백만원
- 사료제조시설
 - 대규모 : 476백만원
 - 중규모 : 315
 - 소규모 : 141.5

○ 지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시설비의 70% 지원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지원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음 자	보 조			
계	개소 6	백만원 3,104	3,104	2,173	-	-	931	
사료공급기지	1	1,120	1,120	784	-	-	336	
섬유질 사료제 조시설	대규모	1	680	680	476	-	-	204
	중규모	2	900	900	630	-	-	270
	소규모	2	404	404	283	-	-	121
	소 계	5	1,984	1,984	1,389	-	-	595

※ 음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축산(농정)과
- 시·군지치구 : 축산(산업)과

다. 대상자선정기준

- 선정기준
 - 사료공급기지는 중부권과 호남권중에서 1개소 지원
 - ※ 수도권(서울우유조합)과 영남권(부산·경남우유조합)은 기 지원
 - 섬유질사료제조시설은 사료공급기지 설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 우선순위
 - 사료원료구매 및 양축농가 지도능력(인력)보유 정도
 - 사업장 부지 확보 유무
 - 조사료 및 식품가공부산물등의 확보 용이성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97.2.28일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사업비·기대효과등 사업계획서 검토후 결과를 첨부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97.3.15일까지)
 - 농림부장관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97.3.31일 까지)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자현황
 - 대표자 인적사항, 조합원수, 자본금, 소(한우,젖소) 사육두수등
 - 사업계획
 - 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원료확보 방법, 사업수지 분석(최초 5년간), 담보능력, 사업부지 확보 또는 예정지, 회원농가 지도계획등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착수금으로 사업비의 10% 우선지원
 -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시행토록 지도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계획대로 미 이행시 지원자금 회수 조치)

나. 보고·기타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시·도)
-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시·도)

6. '98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

나. 기타

- '97사업실시규정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76	사료제조시설설치지원 (공공)
-2	(음식물찌꺼기사료화시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적

- 폐기·매립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하여 가축사료로 개발함으로써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원료의 일부 대체로 의화절감
 - 매립등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방지로 국토환경 보전
 -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매립지 확보 및 유지관리등)

2. 추진방향

- 음식물찌꺼기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사료화시설 1개소 설치
-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여부 결정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연도별 지원계획

- '97년도에 1개소 시험사업으로 운영 : 사업비 30억원 용자지원
- ※ 연차별 지원여부는 운영결과에 따라 결정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배경
 - 국제곡물가격상승에 따라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가중
 - 수입의존도가 높은 사료원료의 일부대체
 - 국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

-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참여한 법인 또는 사업희망자
 - 사업장이 농업진흥지역안에 소재한 경우 '97사업부터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탈, 산지등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 지원단가 : 30억원이내

- 지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지원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등 확보난 해소

나. '97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개소 1	백만원 1,500	1,500	1,500	-	-	-

※ 2년차사업으로 추진(총사업비 3,000백만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 (02-504-9434~5)
- 시·도 : 축산(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산업)과

다. 대상자선정기준

○ 선정기준

- 1일 200톤 이상의 음식물찌꺼기가 발생하는 지역

○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참여한 법인
-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역의 지원대상자
- 경영실적 분석후 결손시 지방자치단체의 보전 여부
- 부지확보 유무
- 분리수거·운송주체 선정여부

○ 선정절차

- 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97.2.28일 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등 사업계획서 검토후 결과를 첨부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97.3.15일까지)
- 농림부장관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97.3.31일까지)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 사업계획서 : 별첨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착수금으로 사업비의 10% 우선지원
-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하고, 사업계획대로 시행토록 지도(타용도로 전용되거나 계획대로 미 이행시 지원자금 회수조치)

나. 보고·기타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시·도)
-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20일이내(시·도)

6. '98사업신청안내

- '97사업추진 실적 평가후 추후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 계획서

1. 사업주체

-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거주지 주소 : _____
- 연락처 전화번호 : _____

2. 사업추진계획

- 수거대상업소 : _____ 개소

수거업소명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비 고
①				○ 요식업소, 집단 급식소등 구분 명기
②				
③				
.				
.				

※ 관내지도에 수거 업소번호와 일치하게 위치를 표시하여 첨부
(예 “①”, “②“)

- 수거용기제작보급 : _____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체등)
- 수거·운송 : _____ (_____)
- 수거·운송방법 및 공장도착까지의 소요시간 :
- 공장설치(예정)부지 : _____ 평
- 주 소 : _____
- 현소유자 : _____

- 부원료 사용여부 및 사용분원료명 : (탈지강, 소맥피등 기재)
 - 부원료 확보 방법 :
 - 연간 소요예상량 :

- 음식찌꺼기 사료공급대상 :

- 제조업체 적자운영시 적자 해소방안 :
 - ※ 조례등 관계규정 개정시 일정 및 개정내용 명시

3. 사료제조공정

4. 사업비투자계획

- 시설규모
 - 음식찌꺼기 처리 : 톤/일
 - 부 원 료 투 입 : 톤/일(종류별)
 - 사 료 생 산 량 : 톤/일

내역	단가	수량	사업비				
			축발기금 용자	지방비 보조	자담	기타	계

※ 산출명세 : 붙임참조

5. 연차별 사업수지분석

내역	최초년도			익년도			차익년도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손익

※ 산출근기 : 별첨

6. 사업주체의 사업비 용자액에 대한 담보설정 능력 유무 :

※ 근거서류 첨부

77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 (공공)
-----------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사육규모의 전업화, 축사시설의 자동화에 따른 축산기자재의 원활한 공급
- 양질의 저렴한 기자재 공급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쟁력 향상

2. 추진방향

- 품목중심의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축산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추진
- 축산시설 종합시스템보급을 위한 기자재업체의 콘소시엄 구축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96까지	'97 (예산안)	'98 - '01	계
사 업 량		26개소	10	40	76
사 업 비	계	백만원 7,670	2,500	22,500	32,671
	용 자	5,371	1,250	15,750	22,870
	자 담	2,301	750	6,750	9,801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분처리기등)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및 공장시설 자금

(2) 지원대상 : 축산기자재생산업체

나. '97 사업비 내용(예산안)

사업량	사업비		
	계	축발기금융자	자부담
10개소	2,500백만원	1,750	750

※2년차사업으로 추진(1년차 1,750백만원, 2년차 1,750)

- 업체당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8%, 5년거치 10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협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9434~5)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자
- 연구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S가 양호한 자
-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
(적용대상 품목일 경우)

(2)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시행전년 8월말까지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97.1.31일까지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업계획 심의요령을 마련하여 심의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라. 대상자선정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의 추천 및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계획 심의 결과 우선순위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 대상자선정시 우선 순위 고려사항
 - 축산시설종합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콘소시업을 구축 하려는 업체
 - 생산기자재의 검사 및 규격화,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마. 사업시행

- 조속한 시설·기계구입으로 축산기자재의 원활한 생산공급
- 표준축사설계도에 적합한 시설 및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 공장을 활용한 자동화설비에 의한 생산성제고에 필요한 자금 사용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추진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전·유용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나. 보고

- 사업추진결과보고(협회→농림부) : [별지 제2호서식]
 - 중간보고기한 : 대상자선정후 6개월이내
 - 완료보고기한 : '98.3월말까지

6. '98사업신청 안내

- '97사업요령에 준하되 지원 비율·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축산시설 종합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하려는 업체 중심으로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사업 계획

가. 회사현황

- (1) 회사연혁(소채재, 대표자, 경력등)
-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3) 인력 및 자산, 시설보유 현황(구체적으로 명기)
- (4) 축산기자재 생산종류명

나.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사업계획

- (1) 사업개요
- (2) 신규시설, 보완, 장비등 세부사업별 용자, 자담등 투자계획
- (3) 기자재생산 및 판매방법(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관련증빙서류 포함)
- (4) 추진일정(세부사업별)
- (5) 상환계획(상환기간까지)
- (6) 시설배치도(공장시설)
- (7) 사업기대효과
- (8) 기타(관련증빙서류등)

[별지 제2호서식]

축산기자재생산시설사업 추진결과 보고

업체명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사업량	음자	자담	계	사업량	음자	자담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입니다.

1. 목 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 우유소비기반을 저변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2. 추진방향

-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학교우유급식의 확대 추진
 - 국민 초등학생은 급식비를 전액 보조지원하고, 일반학생은 자부담 원칙으로 급식
- 학교우유급식은 학교와 업체간의 직접 계약에 의한 자율급식으로 점차 전환
- 급식품목은 백색우유(시유)로 공장도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

3. 급식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가.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생중 극빈학생 또는 도서벽지의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생

나.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도서벽지의 불우초등학생을 추가 선정 가능

- 일반급식
 - 학교장이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유업체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시·도지사

나. 급식기간 : 연간 200일 기준(개학기간중에 급식)

다. 급식계획(일평균) : 5,000천명(보조급식 170천명, 일반급식 4,830천명)

라. 사업실시방법

- 보조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자부담으로 급식

마. '97 지원계획 : 6,630백만원(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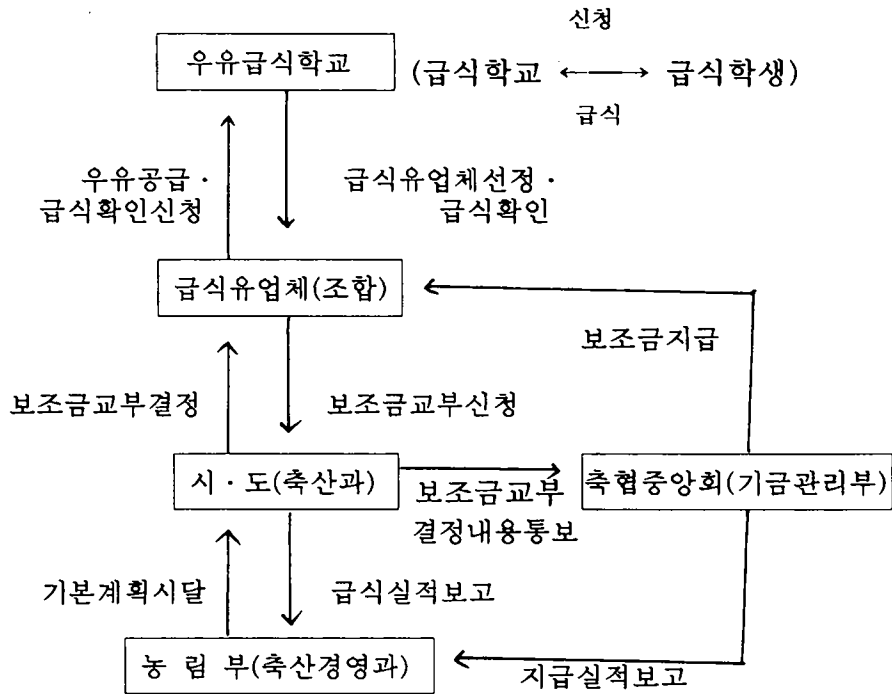
-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 <별표1> 참조

바. 급식지정품목 및 공급단가 : 백색시유(200ml) 195원

단, 도서벽지는 분유급식가능 : 22g 100원

※ 백색시유(원유 100%)가 아닌 가공유나 유산균발효유등의 공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 사업추진체계도



5. 급식학교 및 급식유업체 선정

- 급식학교 :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선정
- 급식유업체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시·도에서는 급식유업체등 안내)

6. 보조금 교부등 절차

- 보조신청(보조사업자) : 급식유업체(대표)
- 보조금 교부결정자 : 시·도지사
- 보조금 지급기관 : 축협중앙회장
- 보조금 신청·교부 및 지급절차등 : 『학교우유급식보조금지급지침』
(축영 51541-264; '94.8.2)에 의함.

7.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급식유업체가 급식중단 및 급식품목 변경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실시
 - 급식유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가공유·발효유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급식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시 급식유업체 변경등 시정조치
- 시·도지사는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류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그 내용을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보조금교부결정내역에 의하여 급식유업체의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오류·착오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나. 보고

- 시·도 및 축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보)	시·도	매익월 20일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우유급식보조금지급실적보고(월보)	축협중앙회	매익월 20일한	별지 제2호서식

다.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89~90)
- 시·도 :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축협중앙회 시·도지회
- 시·군 : 축산과(산업과)

[별지 제1호서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

○○ 시·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당월		개소	천명	천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누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 보조금액은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방비 보조등은 일반급식란에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실적보고(월)

1. 시·도별 보조금 지급실적

시도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천명	천원				

2.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유업체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천명	천원				

※ 보조금액 = 학생수 × 급식단가

[별표 1]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시·도별	'97 급식계획			보조금 배정액
	보조급식	일반급식	계(전체급식)	
	천명/일			천원
서울	13.9	1,086.1	1,100	543,600
부산	1.4	433.6	435	53,000
대구	7.2	277.8	285	278,500
인천	1.2	258.8	260	46,400
광주	3.7	151.3	155	145,900
대전	2.0	148.0	150	79,600
경기	7.8	827.2	835	305,000
강원	7.7	162.3	170	298,300
충북	11.6	143.4	155	450,900
충남	19.7	180.3	200	769,100
전북	35.5	189.5	225	1,385,700
전남	31.0	209.0	240	1,206,600
경북	20.2	269.8	290	789,000
경남	5.4	439.6	445	212,100
제주	1.7	53.3	55	66,300
계	170	4,830	5,000	6,630,000

※ ① 전체 급식계획은 시·도별 초·중·고등학생수 비율에 의해 배정함.

○ 자료 : '96 교육통계연보(교육부)

② 보조급식계획은 '96.1~7월까지 누계 실적비율에 의해 배정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1. 목적

- WTO 출범에 따른 배합사료산업과 축산물의 경쟁력제고
- 국제사료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가격의 안정도모
- 중소제조업체의 경영개선 지원

2. 추진방향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이 최대한 활용(회전)될 수 있도록 운용
- 중소제조업체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개소 63	-	63	63	63	315
사업비	백만원						
	계	-	-	50,000	60,000	-	-
	보조	-	-	-	-	-	-
	융자	-	-	50,000	60,000	-	-
	지방비 자부담	- -	- -	-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배경

- WTO출범에 따른 배합사료산업과 축산물의 경쟁력제고
- 국제곡물가격상승에 따른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
- GSM-102 자금 지원중단에 따른 자금지원

○ 지원대상자

- 축협중앙회(지역조합 및 계열화업체 포함)
- 한국사료협회 회원사
-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지원조건(융자조건)

- 연리 8%(재경원과 협의 확정), 1년거치 일시 상환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사료원료수입자금	-	백만원 60,000	-	-	60,0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축협중앙회 : 사료사업부
- 한국사료협회 : 업무부

다. 대상자선정기준

○ 선정기준

- 사료관리법에 의한 양축용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
- 용자후 1년이상 사료제조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자

○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이 축협 및 사협에 지원금액 배정('97.1.31까지)
- 축협 및 사협은 축협중앙회(축산발전기금)에 업체별 지원규모를 통보('97.2.15일까지)
- 대출희망 개별업체는 축협중앙회로부터 대출

라. 사업비지원방법(사업비 배정절차)

① 농림부

- 사협과 축협의 최근 2년간 배합사료(양축용) 생산실적 비율로 배정
- 사료협회회원사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배정비율을 50:50으로 함.

② 축협중앙회

- 중앙회공장, 지역조합 및 계열화업체는 배합사료(양축용)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이 배정

③ 한국사료협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배정액은 제1항의 비율에 의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내에서의 업체별 배정은 각각 배합사료(양축용) 생산실적에 따라 한국사료협회장이 배정

마. 구매자금의 운용

-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 자금을 수입사료원료구매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연간 3회이상 회전 운용토록 하여야 함.

바. 배정금액의 반납

- 축협중앙회장(수입자)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농림부장관이 배정한 구매자금중 용자지원 희망자가 없거나 사전 반납등으로 인하여 배정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축협중앙회장(축산발전기금)에게 통보하고 축협중앙회장은(축산발전기금) 회수금액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보고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대상자선정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구매자금 배정계획을 제출하고 축협중앙회장(축산발전기금)은 대출 실적을 매반기 종료후 2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감독

-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축협중앙회장과 한국사료협회장 및 기타 지원대상자에게 이 규정과 관련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함.

다. 기타

- 수입자금의 대출 및 상환절차등은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838호, '96.8.1)에 따름.
다만, 이 규정에 의한 대출은 축발기금운용규정 제1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대출 가능함.

6. '98년 사업신청안내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원료 수입자금의 계속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97.3.31까지 목적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98예산 요구액 및 산출내역, 기타 국제곡물가격 및 수급전망등을 우리부(축산경영과)에 제출하여야 함.

80	조 사 사 업(공공)
-1	(축산물가격 및 유통현황 조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의 정확한 수급 및 가격조사
- 국내 육류시장의 유통경로와 유통구조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육류의 유통개선

2. 추진방향

- 지역축협조합의 축산물 수급 및 가격조사의 기능 강화
- 육류의 유통경로 및 마진,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중심으로 방문 조사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합 계
사	계	273	110	218	242	1,452	2,295
업	보 조	273	110	218	242	1,452	2,295
비	자 담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조사품목

- 축산물가격조사는 산지 및 도매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육류유통조사는 한우고기, 젓소고기,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유통경로 및 유통구조 조사
- 산지가격 : 10개 축종(36개품목), 도매가격 : 4개 축종(4개품목)

나. 조사대상처

- 축산물가격조사처는 가축시장(80개시장), 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
- 육류유통조사처는 소비자(가계), 음식점, 식육도·소매업소

다. 조사기간 : '97.1~12

라. 조사내용

- 축산물 산지·도매가격 및 수급량 조사
- 육류의 유통량 및 유통구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바. '97 사업비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대 출	보 조		
계	-	백만원 218	-	-	218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02-500-2691)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조사부)

다. 사업시행

- 축산물가격조사는 축협중앙회장이 전국 조사지정 축협조합의 조사원의 활동비 및 가격조사 결과치 발표에 따른 인쇄비 지급
- 육류유통조사는 축협중앙회장이 국내 육류유통조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축산물가격조사가 실제 조사가격과 보고한 가격이 일치하는지 매일 점검
- 축협중앙회장은 육류유통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나. 보고·기타

보 고 내 용	보 고 기 간
축산물가격조사 축산물유통량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매 일 완료후 20일 이내

80 -2	조 사 사 업 (공공) (축 산 관 측)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 생산의 사전 조절과 가격안정 유도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양축농가에 대하여 장·단기 경영지표 제공

2. 추진방향

-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한 분석(계량적 요인 분석)
- 양축농가의 사육, 가격동향 및 사육의향 분석(비계량적 요인 분석)
- 장·단기 사육 및 가격동향등을 축산관측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분석 판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5개축종	5개축종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사 업 비	계	5,357	1,285	408	458	458	2,748
	보 조 자부담	5,357	1,285	408	458	458	2,748

5. '97년도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추진 배경
 - 미래의 불확실한 축산경기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예측·홍보함으로써 양축농가 자율의 수급조절 유도
 - 축산시책 및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측대상 : 한육우, 젓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
- 관측내용
 - 사육두수 및 가격·유통량 전망분석
 - 단기관측(향후 9개월 전망) 및 장기관측(향후 1~2년 전망) 병행 실시
- 지원내용
 - 축산관측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용비 및 자료발간 유인비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조사부)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사업비(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5개축종	458	458	458			
○ 고정자산비		10	10	10			
○ 기금사업비		448	448	44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조사부(전화 02-224-8331)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을 수립 추진

(2) 사업추진방법

◦ 축산관측

- 축협중앙회장은 축종별 관측협의회를 구성 운영 (5개분과 30명)

- 관측협의회 개최 : 년 4회(분기별 1회)

- 각종 통계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예측자료를 도출

- 개별모니터(5개축종, 양축농가 약 6,000명)의 사육동향 및 사육의향에 대한 우편설문조사와 현지방문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품목별 관측안 작성 단, 양축농가의 사육의향 반영(비계량적 요인 반영)

- 관측(안)을 축종별 관측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하여 홍보

◦ 축산관측결과 홍보 : 축산관측보를 통한 홍보 → 년 4회(2, 5, 8, 11월)

- 1회 발간부수

축종별	한육우	젓 소	돼 지	산란계	육 계	계
발행부수	70천부	25	30	7	7	139

- 관측보 배부체계

축협중앙회 : 농림부, 농촌진흥청등

축협도지회 → 시·도청, 농협등

축협회원조합 → 시·군청, 통계출장소, 농협, 양축가동

각도 농수산 통계사무소 및 도 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

<행정사항>

가. 축산관측 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종별 예측모델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관측기법 개발
- 축산관측을 위한 각종 국·내외 자료 수집 강화
- 축산관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추진
- 축산관측 홍보 강화
 - 개별농가 우편발송 확대
 - 전문지, TV, 라디오, 공중통신망(천리안, 하이텔등)을 이용한 홍보 추진

나.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축산관측결과를 회수별로 종합정리 및 분석평가

다. 보 고(축협중앙회장 → 농림부장관)

- 분기별 관측결과(관측보) : 발간후 7일 이내

80 -3	조 사 사 업 (공공) (축산물생산비조사)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 수급 및 가격등 축산시책 수립과 양축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자료로 활용

2. 추진방향

- 생산비조사 표본농가를 통한 기장조사 실시
- 농가의 기장 지도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생산비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7개축종	7	(계속)	(계속)	-	-
사 업 비	계	1,364	909	227	228	-	-
	보 조 자부담	1,364	909	227	228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추진 배경
 - '78년 4월에 표본설계를 시작으로 동년 11월부터 기장조사 착수
- 조사기구 및 업무담당
 - 축협중앙회(조사부) : 조사기획, 지도원의 교육훈련 및 지도, 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발간등의 업무추진
 - 지역축협 : ~전국 81개지역에 각 1명씩 지도원을 배치하여 조사농가의 기장지도와 경영일지 배부 및 수집 등의 업무담당
 - 표본농가 : 전국 81개지역의 810호 농가에서 매일매일의 경영상황을 경영일지에 기장
- 지원내용
 - 축산물생산비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수용비 및 자료발간 유인비등 필요비용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조사부)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사업비(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7개축종	228	228	228			
○ 기금사업비		228	228	22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사업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조사부(전화 02-224-8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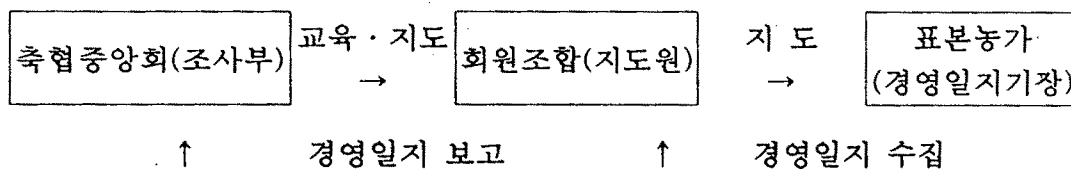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을 수립 추진

(2) 사업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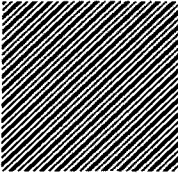
- 조사기간 : 전년 10.1~당년 9.30일까지
- 조사축종 : 번식우(송아지), 비육우, 젖소(우유), 번식돈(자돈), 비육돈, 산란계(계란), 육계
- 조사규모 : 7개축종, 전국 81개지역 810농가를 대상으로 기장조사
- 조사체계



<행정사항>

- '96년부터 농림부 농수산통계정보관실에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부터 동 조사가 정부지정통계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임
- 보 고(축협중앙회장 → 농림부장관)
 -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및 조사보고서 : '98. 3월말까지

Ⅲ. 소 득 원 개 발



여 백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정규모미만의 양축농가에게 사료구입비 및 동물약품구입비등 가축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축산경영비의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경영상태가 우수한 일정규모이상의 양축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등에게 사료구입비등 가축사양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저리로 지원하여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 재해를 입은 양축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하므로써 자금부족을 해소하여 재활기반을 구축

2. 추진방향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자금과 연계 지원하여 자금의 효율성 제고
-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자금이 실제 경영비절감에 쓰일수 있도록 유도
 - 지금까지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던 일반양축자금을 경영규모에 따라 구분 지원

3.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사업추진 경위
 - '82 : 축산진흥기금에서 157억원 지원 시작
 - '86 : 금융자금중 40%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한국은행의 “농수축산어음담보대출 취득규정 및 관련 세칙”
 - '88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 시작(차입금액 200억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가. 총괄

(단위 : 억원)

		'94	'95	'96	'97(예산안)	'98	2004까지
지원규모		4,000	4,000	4,200	5,200	6,000	10,000
재원별	재정자금 (신규)	1,208 (448)	1,416 (248)	1,724 (368)	2,382 (738)	2,990 (733)	5,000
	한은자금	832	624	416	208	-	-
	축협자금	1,960	1,960	2,060	2,610	3,010	5,000

나. 세부사업자금별 예산(안)

구분	일반경영자금	전업농경영자금	특수목적양축자금
○ 지원금액	○ 호당 1,000만원이내	○ 호당 1,000-5,000만원	○ 별도규정에 의함
○ 지원총예산	○ 3,100억원	○ 2,000억원	○ 100억원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현황

-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단기 지원
-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재해 양축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2) 지원자금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경영자금 : 일정규모미만의 양축농가
- 전업농경영자금 : 일정규모이상의 양축농가(기업농 제외), 단지, 영농조합법인등
- 특수목적양축자금 : 농림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 또는 정전, 화재등으로 인하여 기축, 축사시설등이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

(3) 지원기간 및 금리

- 1년 이내(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연장), 연리 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정책과 (02-504-9431-2)
- 시도 : 축협도지회
- 시군 : 시군축산계, 관할 축협(지역 및 업종) 조합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우선순위

- 일반경영자금
 - 축협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양축규모를 감안하여 축산분야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로서 경영비가 부족한 농가에 우선 지원
- 전업농 경영자금
 - 축협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축산분야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자, 축협이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참여 농가에 우선 지원
 -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은 공동 종축·사료구입, 공동사양관리, 공동판매하는 경우에 우선지원
- 특수목적 양축자금
 - 피해가 큰 농가(50%이상)를 우선 지원하되 일반(전업농)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도 추가지원 가능

(2) 일반경영자금 선정절차

- 읍자협의회 구성(7인)
 -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이하같음), 양축농가대표 4인, (후계자 1, 일반 3),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축협 1(전무 또는 상무)
- 대상자선정 절차
 -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자금배정액,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자금 지원계획 등을 관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홍보
 - 양축인은 읍자신청서를 작성, 관내 축산계장에게 신청
 - 축산계장은 “읍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 한후 그 결과를 축협조합장에게 제출
 - 축협조합장은 추천된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 및 게시판에 공개
- 사업비 지원
 - 지역축협은 공제불가, 본인에게 직접지급, 통장지급원칙 준수
 -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읍자대상사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

< 전업농경영자금 >

- 별도지침으로 시달

< 특수목적 양축자금 >

-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선정기준을 시달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정

< 행정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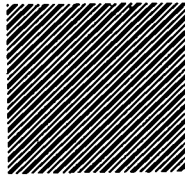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 축협조합장 책임하에 목적외 사용 여부등을 수시확인, 필요시 회수

나. 보 고 : 축협중앙회장은 읍자실행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97년도 요령에 준하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은 변동될 수 있음

IV. 가 축 개 량



여 백

82	소 정액생산 및 공급(공공)
-1	(한우개량단지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순수개량 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
- 우량종우 생산기반 구축,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

2. 추진방향

- 지역중심의 “ 개량단지 ” 와 농가중심의 “ 개량농가 ” 병행 추진
-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로 개량 촉진
- 정확한 개체능력 조사 및 기록 유지
- 한우능력검정사업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50개소	250	250	248		
사업비	계	157,900	67,045	7,500	13,901	13,206	56,248
	보조	112,900	22,045	7,500	13,901	13,206	56,248
	용자	45,000	45,000				
	지방비 자부담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배경

- 한우의 순수혈통을 보전하면서 우량 육용우로 개량하여 쇠고기 공급
 자원으로 육성
 - 1979 : 한우순수계통번식사업지구 확정(각 도당 1개소씩 8개지구)
 - 1988 : 한우개량단지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95 : 단지밖의 규모화된 한우번식 농가들 「개량농가」로 참여 허용
- 연도별 한우개량단지 조성 및 개량농가 참여 현황

	'79	'87	'88	'89	'90	'91	'92	'95	계
개량단지	개소 8	4	20	32	36	21	79	50	250
개량농가	천호 -	-	-	-	-	-	-	6	6

○ 도별 한우개량단지 조성 현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50 개소	11	27	23	34	25	42	44	44

(2) 사업내용

- 등록우 관리 : 개량단지(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
 중 심사에 합격된 등록우
-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개량단지(농가)에 대하여 교배종모우를 지정하여
 인공수정 실시

- 송아지생산 관리 : 등록우에 대한 지정종모우 정액으로 인공수정후 생산된 송아지의 신고, 확인 및 관리
- 송아지 등록 : 개량단지(농가) 등록우에서 계획교배로 생산된 후대축으로 심사에 합격된 송아지
-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 : 소규모 사육농가는 연차별 관리대상에서 점차적으로 제외
- 등록우 능력조사 : 등록우에 대한 발육조사 및 번식실태 조사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개량단지 지도원 인건비, 단지운영비 및 농가 조사사례비등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축산발전기금 사업비(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248개소	13,901	13,901	13,901			
◦ 보조사업비		13,402	13,402	13,402			
◦ 기금사업비		491	491	491			
◦ 고정자산비		8	8	8			

※ 보조사업비 : 인건비 6,312백만원, 단지운영비 2,002, 농가지원비 5,08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개량사업본부)
- 협조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전화 0455-63-8635)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 확정하여 추진

(2) '97사업계획

	단지(농가)운영	등록우 관리	인공수정	송아지 생산
개량단지	248개소	140천두	90	60
개량농가	8천호	60	50	35
계		200	140	95

(3) 사업추진방법

(가) 등록우 관리

- 관리대상 : 개량단지(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것
- 등록우 관리카드 작성·보존
 - 개량단지(농가) 관리조합에서는 개체별 등록우 관리카드를 PC로 작성 관리 하되 Back-Up 화일로 보존하여야 하며
 - 년 2회이상 농가에 개체별 등록우관리카드 자료를 제공
 - 이동, 도태등 관리제적우의 관리카드는 별도 보존(5년)
- 귀표부착
 - 대상, 시기 : 기존등록우, 신규등록우 및 기존귀표 탈락시 부착
 - 귀표종류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이 공급하는 개량단지용 바-코드 귀표
 - 부착방법 : 한우개량단지(농가) 등록우에 대한 귀표는 “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방식으로 개량단지 지도원이 부착

○ 등록우 자질관리

- 기존 관리우중 자질이 불량한 등록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개량단지 이외에서 매입된 기초등록우는 관리대상에 편입 불가
- 혈통등록우중 보통등록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한우개량농가 추가지정 및 정비

- 지정요건 : 1세이상 한우암소를 10두이상 사육하는 신규농가로써 심사결과 5두이상 등록된 농가
단, 총 소사육두수중 비육우 비율이 50%이상인 농가와 젖소 암소를 사육중인 농가는 제외
- 정비방법 : 기존 개량농가에 대하여 매년 6월중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농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나)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교배종모우 지정

- 개량단지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단지별로 등록우의 체형을 조사·분석하여 등록우 결점 보완 및 근친교배를 방지할 수 있는 종모우 3두를 지정하고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단, 고등등록우는 개체별 최적 종모우 지정
- 개량농가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심사결과 등록우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 종모우를 개체별로 지정하여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 기 타 : 개량단지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지정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 및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 인공수정

- 단지(농가)별 지정종모우 정액 공급
- 한우개량단지(농가) 전담수정사 지정 : 지정신청서 접수등 합리적인 지정 절차 이행으로 민원방지
- 등록우에 대해 지정종모우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야 하며 인공수정증명서 발급 및 인공수정대장 기록 비치

(다) 송아지생산·관리

○ 송아지생산·신고

- 등록우에 지정종모우 정액으로 인공수정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즉시 생시체중을 측정하여 어미소의 개량자료 조사표에 기재하여 조사사 레비 지급신청서와 함께 해당조합(또는 단지 지도원)에 송아지생산 신고

○ 송아지생산 확인

- 어미소의 등록여부(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 지정종모우 정액에 의한 수정 여부
- 수정일과 분만예정일 적합 여부
- 시술자와 수정상황, 농가 및 조합비치 관리카드 정비여부
- 개량자료 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한 측정 및 기재여부등

○ 생산된 송아지관리

- 후대축은 분만후 5일내에 확인하여 등록우 관리카드에 생산내역을 기록하고 3개월령이내에 심사하여 합격축은 혈통등록과 동시에 귀표부착후 관리대장에 등재
- 우량 후대축 매각방지를 위해 송아지생산 확인시 예비심사하여 합격이 가능한 후대축은 이동 억제토록 지도

(라) 송아지 등록

- 등록대상 : 한우개량단지 및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후대축으로 심사에 합격한 전두수

- 등록요령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시기

- 혈통등록 : 생후 3개월내에 실시하되 1개월 단위로 신청
- 보통등록 :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 고등등록 : 등록대상 농가가 있을 경우 수시 실시

- 귀표부착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이 공급하는 개량단지용 바-코드 귀표

(마)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

- 소규모 사육농가는 연차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규모화 촉진

	'96	'98	2000	2001
지원제외규모	1두사육농가	2두	3두	4두

- 개량정도가 낮은 기초등록우는 연차별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단지조성 6년차 부터)

	'96	'97	'98	2001
제외단지	'90조성단지 (36개소)	'91조성단지 (21개소)	'92조성단지 (79개소)	'95조성단지 (50개소)

(바) 등록우 조사사업

- 발육능력조사 : 송아지 생산시 조사사례비와 함께 농가가 작성한 개량자료 조사표의 내용을 사례비 지급시 당일 PC입력

- 조사내용 : 생시, 이유시, 6, 12, 18, 24, 36, 48, 60개월령 체중 및 체척치
- 조사보고 : '97년 2월중에 '96년도중의 등록우 발육내역을 PC에 입력하여 디스켓으로 축협중앙회에 보고

- 번식능력조사

- 조사내용 : 초종부일령, 초산일령, 번식간격, 수태당 종부회수등
- 조사보고 : '97년 2월중에 '96년도중의 등록우 번식내역을 PC에 입력하여 디스켓으로 축협중앙회에 보고

(사) 개량단지 및 개량농가 관리

- 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업무는 관할축협 사료판매조직을 이용하고 단지도원은 심사, 등록, 등록우의 발육 및 번식능력 조사지도, 기록유지등 개량업무에만 전념
- 지역축협은 등록우 이동방지와 세대축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 도종축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등의 협조를 받아 년 1회 이상 단지내 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실시

- 축협중앙회는 참여농가의 개량자료 조사편의를 위하여 리·동 단위에 배치되는 우형기 및 체척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달

(아) 사업관리 지도원 배치

- 관리두수 및 배치기준(전년 6월말 기준)

	201~400두	401~1,200두	1,201두이상	비 고
개량단지	1인	2인	3인	200두이하인 단지는 지정 취소
개량농가	0인	1인	2인	

※ 개량농가 관리두수는 조합관할지역내 관리두수 기준임

- 축협중앙회장은 배치기준에 의거 년말에 지도원 재 배치

(4) 사업비 지원방법

(가) 개량자료 조사사례비

- 지원대상 : 계획교배로 송아지를 생산한 등록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송아지 두당 인공유 100kg 지급
- 지원방법
 - 등록농가는 송아지생산시 개량자료 조사표, 송아지생산 신고 및 조사 사례비 지급신청서를 해당조합에 제출
 - 조합에서는 동 조사표 및 신청서가 지정종모우 교배등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후 인공유 지급
 -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10천원 상당의 어미소사료 추가지급

(나) 종축등록비

- 지원대상 : 신규등록 및 상위 등록우
- 지원기준

기초등록	혈통등록	보통등록	고등등록
3천원/두당	4	5	7

- 지원방법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농가에 무료로 등록을 실시하고 등록 실적에 의거 축협중앙회장과 정산

(다) 가축인공 수정료

- 지원대상 : 지정종모우에 의해 수정을 실시한 등록우
- 지원기준 : 1차수정에 한해 두당 12천원 지급
- 지원방법
 - 지역축협장은 전담수정사와 수정차순별(1차, 2차, 3차등)수정료 계약
 - 참여농가는 전담수정사에게만 수정 신청
 - 전담수정사는 수정신청 농가에 수정을 실시하고 농가가 보유중인 개량자료 조사표의 종부사항난에 수정기록을 기재한후 1차 수정인 경우에는 계약된 수정료 12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농가로부터 받음
 - 전담수정사는 수정결과를 축협에 매월통보하고 1차수정 해당농가로부터의 미정수 해당액(두당 12천원)을 지역축협과 정산

(라) 지도원 인건비 지원

- 개량단지 지도원 인건비의 간접지원을 위하여 용자지원된 450억원은 '96년 말로 전액 회수하고 직접보조방식으로 전환
-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매년 하반기에 평가표를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개량단지별 및 개량농가 관리조합별(지도원 배치 조합에 한함)로 순위를 결정
 - 평가표에는 등록우 관리두수중 보통 및 고등등록우 비율, 참여농가중 등록우 10두이상의 전업규모농가 비율, 민원발생 회수등을 포함시켜야함
 - 다음의 분류기준에 따라 개량단지 및 개량농가 관리수준을 결정한후 인건비 차등지원

분 류	분 류 기 준	인건비 지원비율
선도단지(조합)	상위 20% 이상	소요액의 100%
우수단지(조합)	상위 20~40%	소요액의 95%
일반단지(조합)	상위 40~60%	소요액의 90%
부진단지(조합)	상위 60~80%	소요액의 85%
불량단지(조합)	상위 80% 미만	소요액의 80%

※ 인건비 항목 : 본봉, 수당(직책, 직무, 협동, 특수업무, 가족, 년월차, 시간외), 상여금(정기, 특별), 보건단련비, 중식비, 퇴직급여충당금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단지운영 장비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 한 기준내용년 수 및 내용년 수범위기간 적 용	사후관리기간중에 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 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조합자담으로 구입대체 사업중단 및 사업폐지등 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 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 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세부사업추진계획서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별표 1]

개량자료조사표

가. 번식능력

등록번호					관 리 번호					생 년 월 일		
사육농가	주 소						성 명					
종부사항	1차		2차		3차		4차		5차			
	일 자	종 모 우 명	일 자	종 모 우 명	일 자	종 모 우 명	일 자	종 모 우 명	일 자	종 모 우 명		
분만상황	분 만 일 자			성 별			산 차			분만난이도		

나. 발육능력

	분 만 우								송 아 지	
	이유시	6개 월령	12개 월령	18개 월령	24개 월령	36개 월령	48개 월령	60개 월령	생 시	생 시
조 사 일 (예정일)		()	()	()	()	()	()	()		
체 중 체 고 십자부고 체 장 흉 폭 흉 심 요각폭 곤 폭 좌골폭 고 장 흉 위 전관위 (우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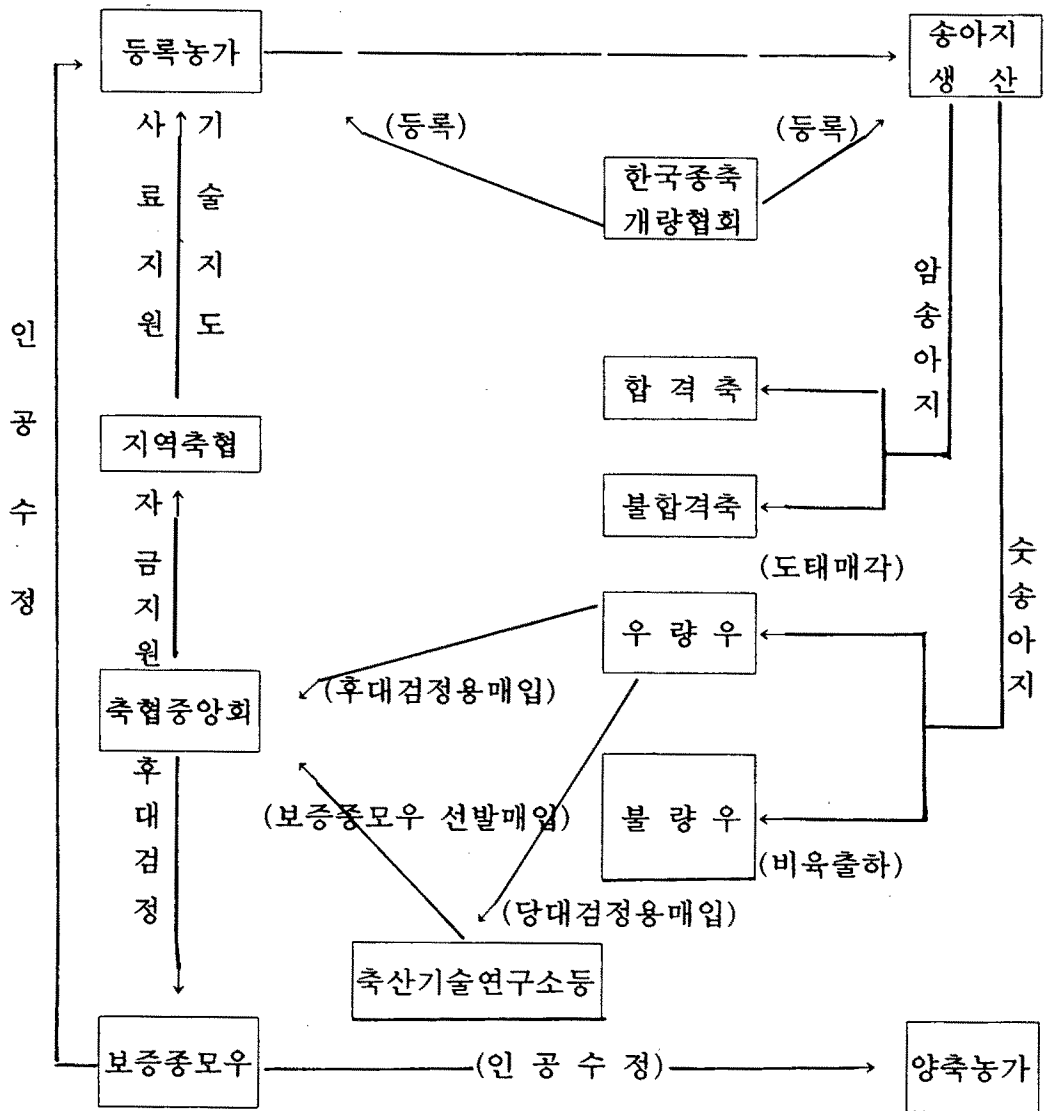
※ 소를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량자료조사표 작성요령 >

- 등록번호 : 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써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관리번호 : 단지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써 귀표를 확인하여 기재
- 생년월일 :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종부상황 : 처녀우는 최초 종부부터, 경산우는 최종 분만이후 금번 분만까지의 기간중 종부상황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기재 하되 쌍태일 경우는 암2, 수2, 암·수중 선택 기재
- 산 차 : 분만한 횟수를 기재 예) 초산, 2산, 3산 등
- 분만난이도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조사일자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할 연월일 기재
(예정일) : 본 조사표 배부시 해당 등록우에 대하여 농가에서 조사하여야 할 일자틀 지역축협에서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우형기, 체척기, 캘리퍼, 줄자를 이용한 측정치를 기재
 - 초산우 : 이유시부터 분만시 월령까지 해당하는 월령의 측정치를 기재
예) 26개월령에 분만했을 경우 이유시 6개월령, 12개월령, 18개월령, 24개월령의 측정치가 기재되어야 함
 - 경산우 : 전번 분만부터 금번 분만까지 해당하는 월령의 측정치를 기재
예) 26개월령에 초산을 하고 38개월령에 2산을 한 경우 36개월령 측정치만 기재
26개월령에 초산을 하고 35개월령에 2산을 한 경우 분만직후 측정치를 36개월령 기재
 - 송아지 : 분만된 송아지의 측정치를 기재하되 단태일 경우는 1칸만, 쌍태일 경우는 2칸 모두에 기재

[별표 2]

사업시행체계도



[별표 3]

연도별 한우개량단지 조성현황

		년 도 별			
		'79	'87	'88	'89
개소 도별	250	8	4	20	32
경 기	11	양평군 양동		포천군 창수·신북 가평군 설악	
강 원	27	양양군 강현	춘천시 동면·신북	홍천군 서석계 정선군 임계	평창군 대화·청일 군갑천·청일
충 북	23	청원군 오창		옥천군 청산 충주군 산최대	괴산군 청천초 진천군 평평
충 남	34	공주시 이인	예산군 산양	공주시 의당산 청양군 정산	부여군 외산·내산 서산시 갈성연곡동·전의 청양군 성운전동·전의
전 북	25	장수군 천천		남원군 보절 진안군 부귀치 순창군 쌍치	완주군 화산외 정읍시 산외
전 남	42	고흥군 두원	보성군 울어·겸백	해남군 삼산전 순천시 황전	진안군 칠량·평지 장흥군 동전·장도 구례군 구례·청동 화순군 화순·양양 화순군 화순·양양 화순군 화순·양양
경 북	44	의성군 금성		상주군 사별 예천군 지보 문경시 산일 경주시 일직	김천시 문성보 구미군 옥소 울진군 소근 봉성군 춘금단 성령군 남양 성령군 수산
경 남	44	울산시 상북	합천군 합천	남해군 남면 밀양시 단장	하동군 양곡 진해시 대유 의령군 차거 산청군 정남 고성군 남부 거창군 상부 합천군 상부

년 도 별			
'90	'91	'92	'95
36	21	79	50
		여주군, 평양군, 북하청, 내면, 운가양, 평평, 군단, 면월	여안군, 주성군, 대금, 신광, 양평군, 지제
원삼인고양, 주취제성구, 시시군군군, 부미기토동, 룬로린성면	양성주, 군군시, 손안문, 양흥막	춘평화삼, 친창친척, 시군군시, 동진상노, 상부, 서, 곡	남현둔, 면내내, 군군군, 월성성, 영고형, 덕면, 북, 근북현
영계음보, 동천성은, 군시군군, 심수소회, 천산이북	괴음제, 산성천, 군군시, 칠원백, 성남운	청옥충, 원천주, 군군시, 북이이, 이원, 류, 은동양, 보영단	소양산, 산동, 괴영, 양내, 봉안, 시군, 천천, 제옥
부흥서당금, 여성천진산, 군군군군, 은구판송북, 산향교산수	논연청, 산기양, 군군군, 광금장, 석남평	연홍보금예, 기성령산산, 서금남진대, 면, 마, 포, 산, 술, 공당서서천	면산봉, 동마비, 군군군, 기천양, 연서청, 리, 월, 라, 부, 부상청서
임무고남, 실주창원, 군군군시, 삼설고아, 계천수영	부순장, 안창수, 군군군, 상복계, 서홍남	완무입정, 주주실읍, 고무청옹, 산, 풍, 응, 동, 진장남	암림, 번구, 군군, 수창, 장순, 운, 덕, 리, 백신해
장영여완영진, 성암천도광도, 군군군군, 삼덕화완불입, 계진양도갑회	곡광고, 성양홍, 군군군, 주옥도, 곡룡덕	담여보강무영진, 양천성진안광도, 군군군군, 대들미군해묘지, 덕, 산, 려, 동, 제, 량, 산, 효지용운장유물화	강두탄해, 동포몽압, 시군군군, 주홍안안, 나고무신, 주, 사, 내, 산, 전, 승목북청성
경영고청울의, 주천령송진성, 시시군군, 산화덕진부다, 내산곡보면인	영청경, 일도주, 군군시, 신매서, 광전면	군영경고구예봉상, 위덕산령미천화주, 군군시, 령, 품, 성, 수, 천, 천, 야, 서	경기천양, 고장풍봉, 시시시군, 천향동성, 영포안의, 남, 문, 서, 름, 내용외수
울산거거남의, 산청창제해령, 시군군시, 두신가연서봉, 동동초초면수	창고합, 령성양, 군군군, 성구지, 산만곡	의창울통사하합진, 군군시시시군, 지계두도군진안이, 정, 성, 서, 산, 명, 교, 의, 반	산암보리, 대마양마, 군군군군, 안성동창, 함고하거, 개, 암, 선, 서, 초고장금
			합창남산, 천령해청, 군군군군, 수도전화현초양, 법청진회고생대, 군군시군군군, 안양산성해청천, 함밀마고남산합성

82 -2	소 정액생산 및 공급(공공) (한우정액 생산 공급)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보증종모우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므로써 한우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한우개량단지 및 검정기관 보유축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생산
- 당대 및 후대검정을 통해 우량 종모우 선발
- 선발된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및 정액생산·공급
- 한우개량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개소	1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사업비	계	113,184	30,208	8,150	10,791	10,791	53,244
	보조자 지방비 자부담	113,184	30,208	8,150	10,791	10,791	53,244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한우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암소와 숫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에 대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육능력검정 및 도체평가로 보증종모우선발
- 한우정액생산·공급
 -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개량단지등 양축가에 공급

(2) 지원내용

- 시설, 검정축 구입비등 고정투자과 인건비, 재료비등 소요자금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한우개량부)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사업비(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1개소	10,791	10,791	10,791			
○ 기금사업비		8,874	8,874	8,874			
○ 고정자산비		1,917	1,917	1,91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한우개량부)
- 협조기관 : 각 도종축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1-2081)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우개량부(전화 0455-63-8635)
- 시·도 : 도 종축장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계획 및 당·후대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 확정하여 추진
- 축협중앙회장은 후대검정에 공시할 후보종모우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당대검정기관의 검정개시 시기를 조정 추진 가능

(2) 사업추진방법[별표1]

(가) 당대검정

- 검정기관 : 축산기술연구소(종축개량부), 도 종축장, 축협 한우개량부
- 검정목표 : 당대검정 300두, 후보종모우 선발 40두
- 당대검정축 확보
 - 축산기술연구소(대관령, 남원) 및 축협한우개량부는 자체생산우에서 확보
 - 도 종축장은 한우개량단지 및 개량농가등에서 매입 또는 자체 생산우에서 확보
- 검정방법 및 검정성적 통보
 - 검정방법 : 한우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2-24호, '92.6.5)에 의하여 실시
 - 검정성적 : 검정기관장은 검정 완료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에 통보

○ 후보종모우 선발 및 확보

- 축협중앙회장은 당대검정기관장이 통보한 개체별 검정성적을 종합분석하여 후보종모우 선발
- 축협중앙회장은 선발된 후보종모우를 산지평균시세의 150%수준에서 매입

(나) 후대검정

○ 검정기관 : 축협중앙회 한우개량부, 축산기술연구소(종축개량부)

○ 검정목표 : 후보종모우 공시 40두, 후대검정 420두, 보증종모우 선발 20두

○ 후대검정용 숫송아지(검정대상축) 확보

- 축협 한우개량부는 자체 생산 보유축, 한우개량단지 및 개량농가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를 산지평균시세의 130% 수준에서 매입하여 확보

○ 검정방법 및 검정성적 평가

- 검정방법 : 한우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2-24호, '92.6.5)에 의하여 실시
- 성적평가 : 축협중앙회 한우개량부에서는 후대검정대상우의 성적을 후보종모우별로 종합 정리하여 분석·평가

○ 보증종모우 선발

- 가축개량협의회(한육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종모우별 검정성적을 심의·평가하여 보증종모우 선발

(다) 당·후대검정 사료의 생산·공급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검정사료 소요량을 축협 청주배합사료 공장에 신청

○ 동 사료공장은 한우검정요령중 농후사료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기준을 준수한 검정사료를 일괄·생산·공급

(라) 정액생산 및 공급

○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축협중앙회장(한우개량부)은 선발된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및 공급

- 축협중앙회장(한우개량부)은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함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비경혹색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민원방지

(3)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집행
- 축산기술연구소(남원지소)의 후대검정 비용에 대하여는 국고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축협중앙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간의 용역계약에 의거 집행
 - 축발기금부담 : 검정축구매관련 비용, 검정축사료비, 검정축관리인부임등
 - 국고 부담 : 소모성 비품비등
 - 검정축의 소유권은 축협중앙회(한우개량부)이며 검정종료된 도체는 판매하여 기금에 납입

(4) 한우능력검정 참여기관의 역할 조정

- 점차적으로 당대 및 후대검정기관의 교체 추진
 - 가축개량종합대책('93.12)에서 제시한 개량체계로 전환을 위한 예산확보등에 노력 경주
 - 축산기술연구소(종축개량부) : 후대검정을 위한 축사건축비, 검정축구입비, 검정사업비등
 - 축협중앙회(한우개량부) : 우량 종빈우 구입비등

- 검정참여기관의 검정측사 및 종빈우 완비시까지의 현행체계를 유지하여 추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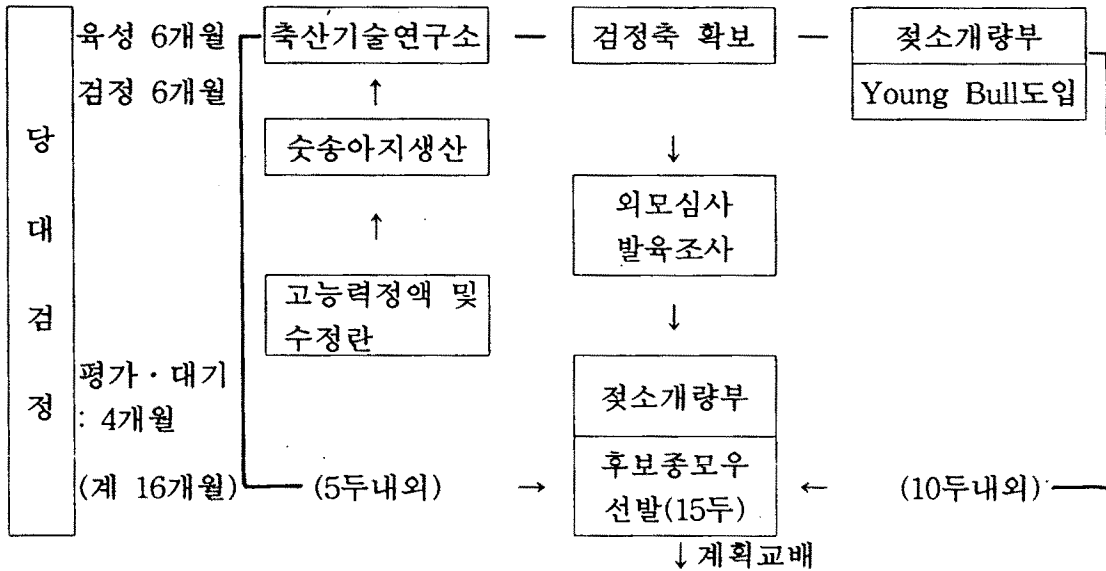
- 축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나.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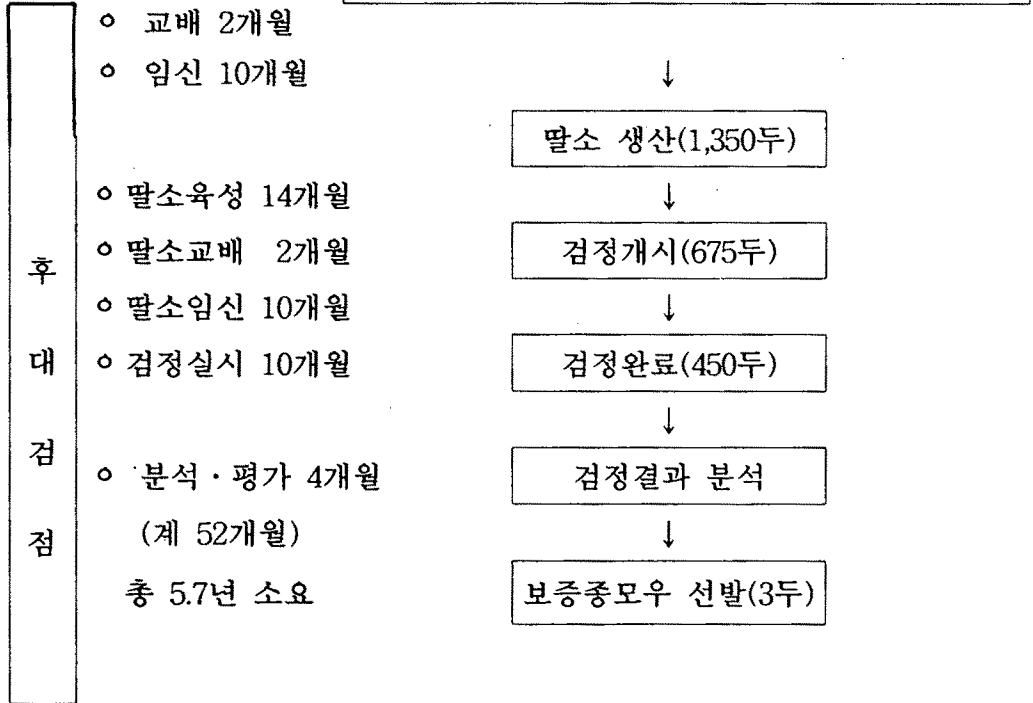
- 한우능력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완료후 1개월이내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 선발완료후 1개월이내
- 세부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별표 1]

< 단계별, 기관별 사업추진방법 >



축산기술연구소, 도종축장, 산유능력검정농가
교 배 빈 우 (4,500두)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82	소 정액생산 및 공급(공공)
-3	(젓소정액 생산 공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보증종모우 도입 및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므로써 젓소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국내 우량종빈우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생산
- 당대 및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도입 및 선발로 확보된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및 정액생산·공급
- 젓소산유능력검정 사업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개소	1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사업비	계	65,432	18,701	4,155	5,322	5,322	31,932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65,432	18,701	4,155	5,322	5,322	31,932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젓소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암소와 숫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암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심사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유능력검정으로 보증종모우 선발
- 젓소정액생산·공급
 -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개량단지등 양축가에 공급

(2) 지원내용

- 시설, 검정축 구입비등 고정투자와 인건비, 재료비등 소요자금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젓소개량부)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사업비(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계	보 조	용 자			
계	1개소	5,322	5,322	5,322				
◦ 기금사업비		3,519	3,519	3,519				
◦ 고정자산비		1,803	1,803	1,80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개량사업본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1-2081)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전화 02-359-9285)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 및 당·후대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 확정하여 추진

(2) 사업추진방법[별표1]

(가) 당대검정

○ 검정기관 : 축협중앙회 젖소개량부

○ 검정목표 : 당대검정 30두, 후보종모우 선발 15두

○ 당대검정축 확보

- 고능력 정액도입 및 수정란에 의한 국내 송아지생산·매입과 낙농선진국의 Young Bull 도입 확보

○ 검정방법 : 젖소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2-25호, '92.6.5)에 의하여 실시

○ 후보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점수, 발육상태, 정액성상 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젖소분과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발

(나) 후대검정

- 검정기관 : 축협중앙회 젓소개량부
- 검정목표 : 보증종모우 선발 3두
- 후대검정용 낭우(검정대상축) 확보
 - 젓소산유능력 검정우를 활용한 계획교배를 통하여 생산·확보
 - 축산기술연구소와 도 종축장은 각각 도립된 축군(Herd)으로 간주
- 검정방법 : 젓소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2-25호, '92.6.5)에 의하여 실시
- 보증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성적 및 외모심사 점수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젓소분과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여 선발

(다) 정액생산 및 공급

-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축협중앙회장(젓소개량부)은 선발된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및 공급
 - 축협중앙회장(젓소개량부)은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함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유전적결합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민원방지

(3)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집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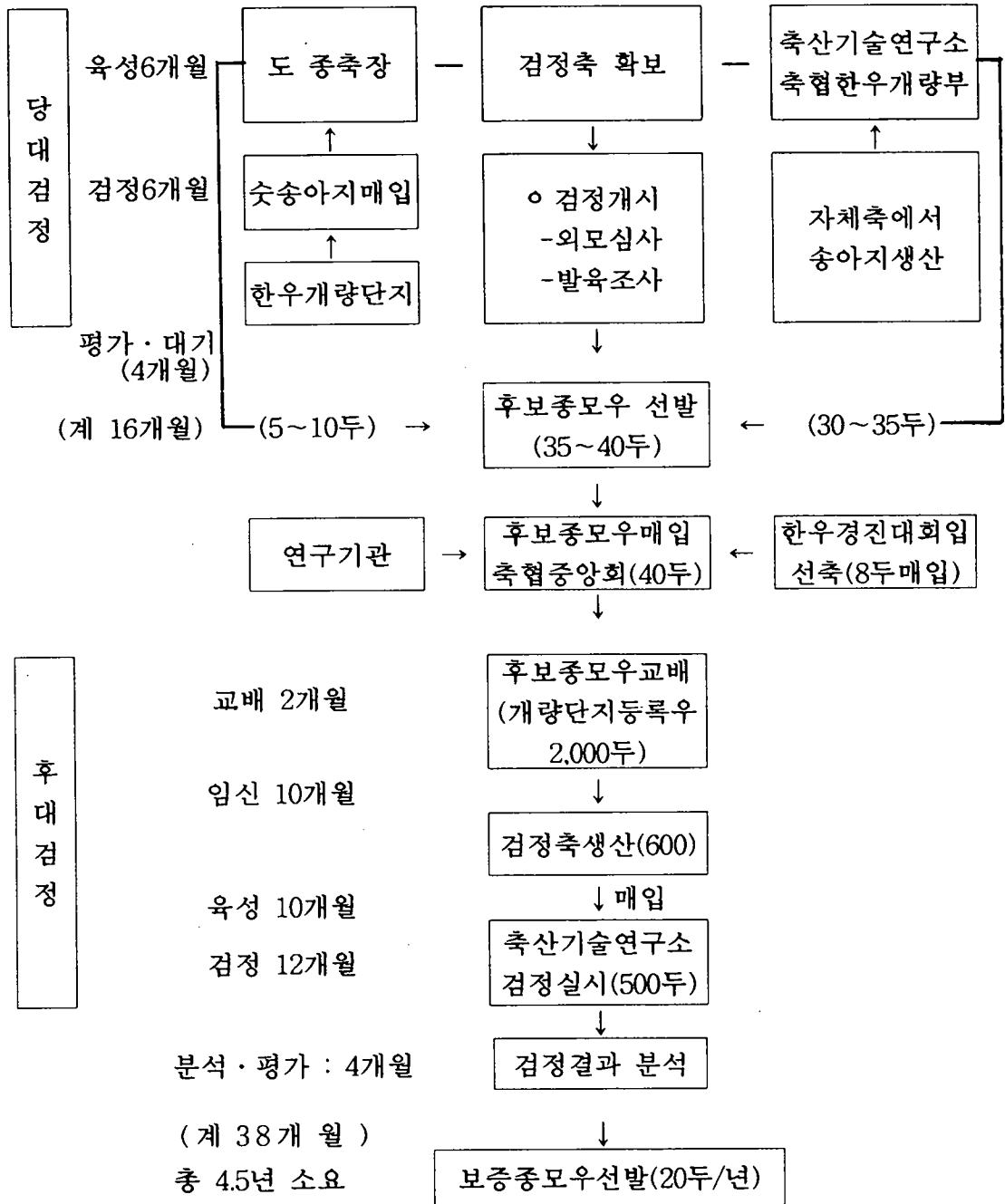
- 축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젓소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2-25호, '92.6.5)에 의거 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젓소능력검정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나. 보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젓소능력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완료후 1개월이내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 선발완료후 1개월이내
- 세부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별표 1]

< 단계별, 기관별 사업추진방법 >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82 -4	소 정액생산 및 공급(공공) (가축인공수정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도서벽지등 수정여건이 불리한 지역농가에 가축인공수정 보급

2. 추진방향

- 민간 수정사들이 기피하는 지역농가에 우선적으로 수정 실시
-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축협 소속 수정사의 인건비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15조(가축의 인공수정)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59명	88	25	23	23	-
사업비	계	2,399	2,168	114	76	41	-
	보조 자부담	2,399	2,168	114	76	41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민간수정사들이 기피하는 도서벽지등 수정여건이 불리한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지역축협 소속 가축인공수정사로 하여금 가축인공수정실시

(2) 지원내용

-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축협 소속 수정사의 인건비등 지원
 - 울릉군 수정사 인건비지원 포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지역축협(성장조합) 소속 가축인공수정사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보조사업비 계	23명	76	76	76			
○ 인건비 보조	22	70	70	70			
○ 울릉군 수정사 인건비	1	6	6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 협조기관 : 경북도 축산과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전화 0455-63-8635)
- 시·도 : 도청 축산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 확정하여 추진

◦ 사업추진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인공수정용 정액의 수요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종모우 확보 및 정액공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축협 소속 가축인공수정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세부집행요령을 작성하여 관련조합에 통보함
- 축협중앙회(한우·젖소개량부) 및 정액처리업자는 정액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함
- 가축인공수정사의 성실한 인공수정 실시
 - 소 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근친교배를 방지하고 암소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액 선정 기술
 - 인공수정을 실시한 가축인공수정사는 정액·인공수정증명서 발급에 철저를 기함
 - 시·도(시·군)은 인공수정실적을 파악하여 소 사육조절등 시책자료로 활용하고 익월 5일까지 상위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 지급
- 지급항목 : 본봉, 수당(직책, 협동, 특수업무, 가족, 년월차), 상여금(정기 및 특별), 보건단련비, 중식비
- 지원조건 : 1인당 지급항목 합계액의 20% 이내 보조지원
 - 울릉군 수정사의 경우는 50% 보조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관내 가축인공수정사업을 총괄, 지도감독함

나.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82 -5	소 정액생산 및 공급(공공) (가축개량신기술보급)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을 통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추진기반 구축
- 자가·인공수정기술 보급으로 소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자연종부 억제

2. 추진방향

- 가축인공수정기술 향상을 위한 수정사 보수교육 실시
- 소 수정란 생산·이식 및 가축인공수정기술 교육
- 실습위주의 교육실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15조(가축의 인공수정) 및 제17조(수정사의 교육)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5 건	4	3	5	4	4
사업비	계	6,341	1,046	143	966	598	3,588
	보조	5,623	696	143	598	598	3,588
	용자 자부담	718	350	-	368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의 종류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가축수정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제고를 위해 축산법(제17조)에 의한 교육
- 수정란생산 및 이식기술 교육
 - 수정란 이식 및 쌍자생산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교육
 - 돼지사육농가의 전업화·집단화에 따른 인공수정 보급 및 경영비절감을 위하여 교육실시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 교육
 - 농가의 규모화에 따른 자연종부 경향 억제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교육실시
-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 고능력 정액의 생산·보급을 통한 돼지개량 촉진 및 생산성 제고

(2) 지원내용

- 가축개량신기술교육 : 교육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소모성비용등 사업비지원
- 돼지인공수정센터설치 : 종모돈구입, 종돈사, 처리시설 및 장비등 융자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사 업 명	지원대상자	교육담당기관
○ 가축개량신기술교육사업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가축인공수정사협회	동 협회
- 수정란생산 및 이식기술교육	축협중앙회	축협, 축기연
-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교육	축협중앙회	축기연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축협중앙회	도지사
○ 돼지인공수정센터설치사업	축협중앙회	-

○ 지원조건

- 가축개량신기술교육 : 교육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축발기금에서 보조 지원

- 돼지인공수정센터설치 : 용자 70%이내, 자부담 30%이상

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기금사업비 계	1,735명	598	598	598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1,000	34	34	34			
○ 수정란생산 및 이식기술 교육	140	115	115	115			
○ 돼지정액 제조 및 인공수정기술 교육	100	21	21	21			
○ 소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	495	428	428	428			
용자 사업비							
○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	1개소	525	368	-	368	157	
합 계	-	1,123	966	598	368	15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사 업 명	시행기관	협조기관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가축인공수정사협회	-
○ 수정란생산 및 이식기술교육	축협중앙회	-
○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교육	축협중앙회	-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축협중앙회	도지사
○ 돼지인공수정센터설치사업	축협중앙회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전화 수원 0331-292-4511, 성환 0417-581-2081)
- 축협중앙회 가축개량본부(전화0455-63-8635), 중소가축부(전화02-224-8801)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전화 02-586-9408)
- 시·도 : 도 축산과 및 도 종축장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기관장은 협조기관장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축협중앙회장은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한후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

(2) 가축개량 신기술 교육계획

사 업 명	교육대상자	교육인원	교육기간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축산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정액처리업체 소속 수정사 축산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소 소속 수정사	1,000명	1회 8시간 이상
◦ 수정란생산 및 이식기술교육		140	
- 수정란생산기술	도 종축장 공무원	(30)	1회 12주 이상
- 수정란 이식기술	양축농가, 수정사, 수의사, 공직자등	(100)	1회 5일 이상
- 수정란 생산·이식기술	양축농가, 수정사, 수의사등	(10)	1회30일 이상
◦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교육	양축농가, 수정사, 수의사, 공직자등	100	1회 4일 이상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전업규모 소사육농가	495명(전북, 경북제외) (회당 15명)	1회 40시간 이상

(3) 사업추진방법

(가)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가축인공수정사는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의 교육통지에 의거 매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자는 1년이내에서 연기 가능함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교육과정, 교육이수증, 관련서류등 교육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 수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소, 시간등 교육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일 이전 1개월까지 교육대상자('97정기대상자, '96교육 연기자 및 불참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교육이수자가 소속된 정액등 처리업체 및 가축인공수정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함

(나) 수정란 생산 및 이식교육, 돼지인공수정교육

- 교육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은 교육계획 홍보로 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함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장이 교육이수증 발급

(다)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 축협중앙회장과 도지사간에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계약 체결
- 도지사는 교육계획 홍보 및 교육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함
- 각 도지사가 요청하는 교육용기자재는 품목, 수량등을 축협중앙회장이 일괄 구매하여 도지사에게 위탁관리
- 교육 실습용 한우암소(경산우)는 교육생 3명당 1두를 교육 개시 2주전에 축협중앙회장이 구입하여 도지사에게 관리 위탁하고 당년도 최종 교육이 완료된 때에 도지사는 축협중앙회장에게 반환하며 반환된 한우는 축협중앙회장이 판매하여 축발기금에 납입

○ 사업비 지원방법

- 소모성 재료비 및 수용비는 교육예정인원 및 예산단가에 의거 분기별로 개산불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에 정산

○ 도별 교육계획 및 소요예산

- 교육회당 15명씩 년 40시간이상(강의 10, 실습 30) 실시하되 교육담당은 강의의 경우 대학등 외래강사, 실습은 내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년 간 교육인원	교육회수	소요예산			
			기자재 구 입	한우암소 구 입	소모성 비 용	계
경 기	180 ^명	12 ^회	25,050 ^{천원}	10,000	62,550	97,600
강 원	45	3	25,050	10,000	17,550	52,600
충 북	45	3	25,050	10,000	17,550	52,600
충 남	90	6	25,050	10,000	32,550	67,600
전 남	60	4	25,050	10,000	22,550	57,600
경 남	60	4	25,050	10,000	22,550	57,600
제 주	15	1	25,050	10,000	7,550	42,600
계	495	33	175,350	70,000	182,850	428,200

(라) 돼지인공수정센터설치

- 축협중앙회장은 양돈조합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를 분석·평가 검토한후 적합한 대상자 선정

○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사업비에 대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 당해년도 융자액의 미집행, 집행된 융자액의 타용도 사용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여야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회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함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교육이수증 발급대상 등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대상자의 최근 2년간 교육이수 및 연기여부가 표시되어야 함
- 축협중앙회장은 돼지인공수정센터설치 양돈조합이 세부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등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교육용 기구 및 기자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사업주체 자담으로 구입 대체 사업중단 및 사업폐지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되었을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각 사업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세부교육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교육완료후 1개월이내

83 -1	종축등록 및 검정사업(공공) (종 축 등 록)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우량가축의 혈통보존 및 활용도 제고
- 가축개량에 대한 농가 인식도 제고

2. 추진방향

- 종축의 등록, 심사 및 검정사업의 확대 추진
-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개량교육·지도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사육자의 신청에 의거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등록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746천두	495	131	140	140	840
사업비	계	7,075	2,790	461	478	478	2,868
	보조자부담	7,075	2,790	461	478	478	2,868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종축(한우·육우, 젓소, 돼지)등록 및 부대사업
- (2) 사업대상 : 등록희망농가
- (3) 지원내용
 - 종축등록에 필요한 관리비, 사업비등 소요자금중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
- (4)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음자		
계	140천두	2,336	478	478		1,858	
◦ 보조사업비		2,336	478	478		1,85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1-2081)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한국중축개량협회장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 승인요청
- 종축등록방법 : 한국중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하여 실시
 - 등록요원 확보
 - 한국중축개량협회 등록요원, 등록물량 확대에 필요한 위촉등록요원 확보
 - 위촉등록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및 등록실무 교육
- 사업비 지원방법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등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교육으로 등록종축의 활용도 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계획교배방법 및 필요성, 종축의 이동신고 및 등록중의 인수인계등의 인수인계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교육용 차량 및 기자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사업주체 자담으로 구입 대체 사업중단 및 사업폐지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천분할 수 있음

나. 보 고(한국중축개량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종축등록 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83 -2	종축등록 및 검정(공공) (젓소산유 능력검정)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젓소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젓소개량을 위한 기반확충 및 인식도 제고
- 낙농경영 합리화 유도

2. 추진방향

- 축협 젓소개량단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산유능력검정을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으로 통폐합 추진
- 사업비는 검정소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두당 일정액 보조지원
- 젓소 후대검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625천두	70	25	40	70	420
사업비	계	21,415	4,931	424	1,220	2,120	12,720
	보조	17,815	1,331	424	1,220	2,120	12,720
	음자부담	3,600	3,600	(계속)	-	-	-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희망 검정소 및 농가에 대하여 “젓소산유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 상의 구비요건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정
-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결과 및 경영참고사항을 당해 농가에 신속히 통보
 - 검정소장은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서 설명 및 경영지도

(2) 사업추진방법 개선

-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 통폐합 및 확대 실시
 - 축협 젓소개량단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산유능력검정을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으로 통폐합
 - 축협중앙회(개량사업본부 젓소개량부)에서 보조금 지급등 사업관리
 - 검정사업대상자 및 검정두수 확대
 - 검정장비 및 요원을 갖춘 조합, 협회, 낙우회등 참여 범위 확대
 - 검정실적에 의거 두당 일정액의 검정사업비 보조지원으로 유료검정 활성화, 참여단체간 경쟁유발등으로 검정두수 확대 유도
- 젓소개량단지 등에 대한 지원방식 변경
 - 개량단지(23개소)중 보조단지와 자담단지의 구분을 폐지하고 능력검정 실적에 의거 일정액의 검정사업비 보조지원

(3) 지원내용 :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4)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검정업무를 수행중인 단체등 검정소
- 지원조건 : 검정우 두당 30천원 축산발전기금 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보조사업비 계	40천두	1,220	1,220	1,220			
○ 점정사업보조		1,200	1,200	1,200			
○ 고능력 점정우 평가대회		20	20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
- 협조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1-2081)
- 축협중앙회 젖소개량부(전화 02-359-9285)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산유능력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 점정방법 및 항목
 - 젖소 점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2-25호, '92.6.5)과 젖소산유능력검정 세부 실시요령에 의거 실시
- 사업비 지원방법
 - 점정결과 통보서상의 점정두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305일) 두당 30천원을 월별 분할 지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검정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검정소, 관련기관등에 배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사업주체 자담으로 구입대체 사업중단 및 사업폐지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검정참여기관등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젓소산유능력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종돈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고능력 종돈의 인공수정 활용으로 우수유전자 보급 확대
- 돼지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종돈업 등록업체의 출품종돈 능력검정
- 검정결과의 공표로 양돈농가의 종돈구매 편의 증진
- 능력검정 요원의 전문화 및 검정장비 확보
- 능력검정결과 우수종돈의 정액처리업체 활용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60천두	15	5	5	5	30
사업비	계	3,395	712	731	244	244	1,464
	보조 자부담	3,395	712	731	244	244	1,464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검정사업배경 및 계획

- 검정사업 배경
 -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돈의 선발 보급
 - 조기격리이유(SEW)병행 실시로 청정돈 공급
 - 돼지정액처리업체의 고능력종돈 활용 유도
- '97년도 검정계획
 - 검정소검정 : 3,240두(1검정소 1,800, 2검정소 1,440)
 - 농장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 검정소 검정돈사(제1, 2 검정소) 내·외부 시설보수비등 지원
- 돼지정액처리업체에서 능력검정소 검정돈을 구매할 경우 낙찰가격의 10%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한양돈협회(종돈능력검정소)
- 지원조건 : 검정소 시설 및 개보수 총사업비의 70% 축산발전기금 보조
고능력 인공수정 활용 검정돈 낙찰가격의 10% 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보조사업비 계	5천두	1,797	244	244		1,553	
○ 검정사업비보조		1,778	225	225		1,553	
○ 고능력종돈활용		19	19	1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대한양돈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1-2081)
-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전화 : 협회 02-553-3942, 제1검정소 0336-32-2426, 제2검정소 0595-83-1647)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대한양돈협회장은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 승인 요청
- 종돈검정방법 : 돼지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2-26호, '96.6.5)에 의하여 실시
- 사업비 지원방법
 - 검정돈사 시설보수비등 사업비지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이 보조금 지원
 - 고능력 종돈 인공수정 활용 지원
 - 돼지정액처리업 허가업체는 낙찰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종돈 인수
 - 대한양돈협회가 일괄하여 매월마다 관련서류(구매계약서, 종돈능력확인서등)를 첨부하여 축협중앙회장에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산전문지등을 통한 농장별 검정성적 공표
- 검정성적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고 혈통에 명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돈사(SEW) 및 기구등 취득 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능하는 사업주체 자담으로 구입 대체 사업중단 및 사업폐지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대한양돈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돼지능력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83 -4	종축등록 및 검정(공공) (닭 경제능력검정)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종계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우량 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지표 제공
-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의 병행 추진
- 검정방법의 공정화, 전문요원의 전문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계농가의 종계구입 편의 증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438천수	60	42	42	42	252
사업비	계	2,611	1,414	194	303	100	600
	보조자부담	2,611	1,414	194	303	100	6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검정사업계획

- 시·도지사에게 종계장 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사업과 일반검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 검 정 소 : 42천수(산란계 30, 육계 12)
- 일반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 검정사료비, 검정시설 및 장비등 검정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사)대한양계협회 닭능력검정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보조사업비 계	42천수	671	303	303		368	
◦ 검정사업비보조		284	100	100		184	
◦ 시설 개보수		387	203	203		18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시행기관 : 대한양계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1-2081)

◦ 대한양계협회(협회 02-588-7561, 검정소 0334-675-7139)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대한양계협회장은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 승인 요청

◦ 종계검정방법

- 닭 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87-42호, '87.8.21)에 의하여 실시

◦ 사업비 지원방법

- 검정사료비, 검정시설 및 장비등 사업비지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이 보조금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검정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별 계종별 검정성적을 공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계사 및 기구등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과 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사업주체 자담으로 구입 대체 사업중단 및 사업폐지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7닭경제능력검정 세부사업추진계획 : '97.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83	종축등록 및 검정(공공)
-5	(가축개량협의회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가축개량 전문가 활용으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 시책자문 및 사업평가를 통한 가축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

2. 추진방향

- 가축개량협의 전체회의 및 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전문분과위원회 운영
- 가축개량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업계전문가등으로 구성 운영
- 가축개량협의회 위원은 임기 2년 단위로 운영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37회	49	8	10	10	60
사업비	계	324	70	22	29	29	174
	보조 자부담	324	70	22	29	29	174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추진배경
 - 가축개량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도모
- 협의회 내용
 - 가축개량시책 및 기술자문
 - 가축개량사업 평가, 신기술 및 정보도입
 - 기타 가축개량과 관련된 사항
- 협의회 위원 선정
 - 축협중앙회장은 협의회 위원 선정시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지원조건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여비, 자료유인비, 위원수당등 소요경비 보조 지원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10회내외	29	29	29			
○ 기금사업비		29	29	29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 협조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전화 수원 0331-292-4511, 성환 0417-581-2081)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0455-63-8635)

다. 사업시행

◦ 축협중앙회장은 축종별(한육우, 젓소, 돼지, 닭) 및 가축개량정보 전문분과 위원회 구성 운영

◦ 협의회 안전, 개최시기 및 장소등은 축협중앙회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결정하여 협의회 개최

<행정사항>

◦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가축개량협의회 개최 결과 : 10일 이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1. 목 적

- 종돈수입 자유화에 대응한 국내산 종돈의 능력향상
-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의 생산·공급으로 양축농가의 질병피해 방지

2. 추진방향

- 원종돈(GGP)농장과 종돈(GP)농장의 분리 및 상호연계로 전문성 제고
-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Site)으로 질병감염기회 차단
- 2000년대 종돈소요 두수의 40% 수준을 전문종돈업체에서 공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8개소		3	5 (계속3)	8 (계속5)	8 (계속8)
사업비	계	157,463		15,158	31,376	45,957	64,972
	보조	-	-	-	-	-	-
	융자	99,983 (61,247)		7,686 (7,686)	19,368 (19,368)	29,918 (18,297)	43,011 (15,896)
	자부담	57,480 (40,866)		7,472 (7,472)	12,008 (12,008)	16,039 (11,055)	21,961 (10,331)

※ 사업비중 ()내는 '96~'97사업대상자 5개소분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전문종돈업체의 개념

- 종돈사육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원종돈(GGP)농장을 운영하면서 계약된 종돈(GP)농장에게 GP종돈을 공급하는 한편, 사양관리, 개량관리, 위생관리등을 협의·지도함으로써 능력이 우수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 및 모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
- 정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종돈업 등록업체중에서 원종돈농장을 선정하고 이들과 GP종돈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2~3Site)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전문종돈업체의 유형
 - 원종돈(GGP)농장 : (I형) 모계·부계 동시사육
(II형) 모계만 사육하고 부계는 계약 또는 수입충당
 - 종돈(GP)농장 : (I형) 1인이 2~3Site 단독경영
(II형) 다수인이 각각의 Site를 분담 경영

(2) 사업내용

- 원종돈농장과 종돈농장이 계약관계로 연계된 전문종돈업체 육성
- 격리조기이유(SEW) 방식도입 및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Site)을 위한 돈사건축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규모

- 지원대상 : 선정된 종돈업 등록업체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융자, 30% 자부담
- 융자조건 : 년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개소당 지원규모(최고한도)

(단위 : 백만원)

		사육두수	사업량	단 가	사업비	비 고
원종돈농장 (부계 50% 모계 50%)	원종돈사	676두	1,352평	850천원	1,149	음 자
	자 돈 사	1,920	420	1,000	420	음 자
	육성돈사	3,024	1,160	600	696	음 자
	원종돈구입		338두	2,000	676	자 담
	부대시설등				299	자 담
	계	5,620			3,240	
종돈농장	종 돈 사	3,310	6,620	850	5,627	음 자
	자 돈 사	9,600	2,110	1,000	2,110	음 자
	육성돈사	15,120	5,820	500	2,910	음 자
	종돈구입		3,310	800	2,648	자 담
	부대시설등				1,915	자 담
	계	28,030			15,210	
합 계		33,650			18,450	음자액은 최고한도 액임

- 원종돈사육두수 구성 : 큰암돼지 560두, 큰숫돼지 40, 후보암돼지 64
후보숫돼지 12
- 종돈사육두수 구성 : 큰암돼지 2,750두, 큰숫돼지 200, 후보암돼지 300
후보숫돼지 60
- 부대시설등 : 사무실, 창고, 직원숙소, 관리차량 및 장비등

(4) 전문종돈업체의 의무사항

- 각각의 원종돈농장 및 종돈농장은 별도로 격리된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 사육(2~3Site)을 하여야 하며, 자돈의 이유시기는 가급적 생후 2주령 이내로 하여 모체감염을 방지
- 원종돈농장은 종돈관리전산시스템 도입 및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종돈농장에 종돈관리, 위생관리 및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실시
- 종돈농장은 질병오염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종돈농장이 종돈공급을 할 수 없는한 계약기간중에는 원종돈농장으로부터 종돈공급을 받아야함
- 원종돈 및 종돈농장은 하이브리드(Hybrid)종돈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원종돈농장은 육성돈사의 일부에 검정시설을 갖추어 생산된 자돈두수의 20% 이상을 검정소 검정 또는 농장검정하여야 함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읍 자		
계	5개소	31,376	19,368		19,368	12,008	
○ '96사업대상자	3	20,448	11,621		11,621	8,827	
○ '97사업대상자	2	10,928	7,747		7,747	3,181	

- '96대상자 : 다비육종그룹, 선진육종그룹, 활천농장그룹
- '97대상자 : 삼화육종그룹, 축협중앙회 그룹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3)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발부(전화 0417-581-2081)
- 시·도 : 도 축산과

다. '98사업대상자 선정

(1) '98사업대상자(사업량) : 3개소

(2) 신청 자격요건

- 축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일 현재 시·도지사에게 종돈업 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96. 6월현재 종돈 200두이상을 사육중인 자로써
- 원종돈 큰암태지 200두이상 사육을 계획하면서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종돈(2.5년 동안 원종돈 큰암태지 1두당 종돈 10두 분양기준)의 60%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종돈농장을 5년이상의 종돈 공급 및 인수계약에 의거 확보 한자

- 단, 계약된 종돈농장수(3개소이상)의 50%이상이 종돈업 등록업체여야함
- 하이브리드(Hybrid)종돈을 사육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자는 제외

(3) 신청절차

- 본 사업취지에 동의하여 원종돈(GGP)농장을 경영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부를 작성하여 '97. 2.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 본인 및 종돈(GP)농장 참여 동의자의 돼지사육현황
(품종별, 세대별, 성장단계별 돼지사육, 용도별 돈사보유 포함)
 - 본인 및 종돈(GP)농장 참여 동의자의 사업계획서
(세대별, 성장단계별 돼지사육 및 돈사건축, 년차별 투자계획 포함)
 - 종돈(GP)농장 희망자의 참여 동의서
-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분석·평가한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97.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 추천
 - 검토의견서 1부
 - 사업계획서 2부
 - 신청자 및 참여동의자가 종돈업 등록업체일 경우 종돈업등록증 사본 및 성별 종돈등록 현황

(4) 선정절차

- 장관은 '98년도 사업참여 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가축개량총괄기관장에게 송부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전문종돈업육성사업대상자 선정지침(축정51530-199, '96. 3.15)을 참고하여 신청업체 심사표를 확정후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감안한 선정순위를 정하여 '97. 5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 보고
 - 전문종돈업육성사업 대상자 심사결과 보고(종축51530-377, '96.4.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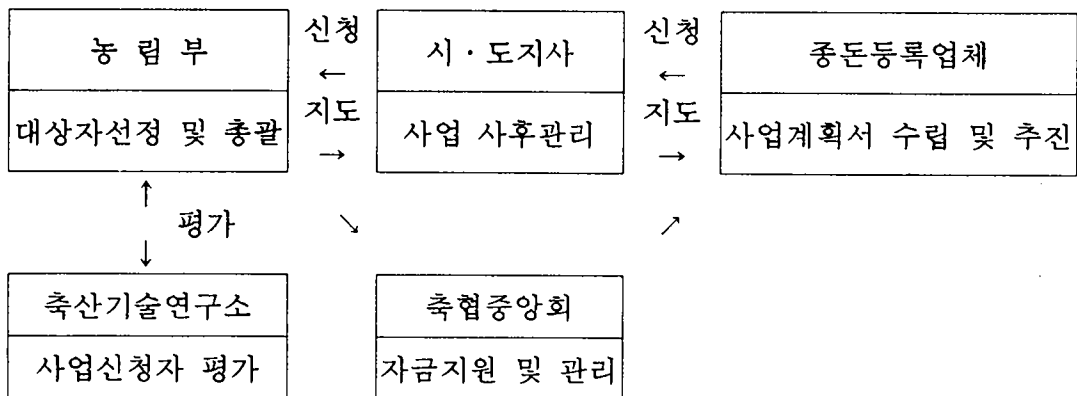
- 장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의 선정순위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97.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단, GGP모돈두수가 너무 과도할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축소할 수 있으며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선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 체계



(2)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원종돈농장 및 종돈농장의 2~3단계 분리사육을 위한 돈사 건축비 지원
 - 기존돈사 활용부문에 대하여는 지원단가의 80%이내에서 내부구조 개 보수비 지원
 - 폐수처리시설은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부지구입비, 원종돈 및 종돈구입비, 부대시설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 업체별 융자액 산정

-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종모돈, 종빈돈, 후보돈, 육성돈, 자돈의 상시사육두수를 확정하고 다음의 두당융자액을 곱하여 산출 단, 신청액이 적을 경우 신청액을 인정함

	종모돈, 종빈돈, 후보돈	육성돈	자돈
두당 융자액	1,700천원	192 (230)	219

※ ()내는 원종돈(GGP)농장분임

◦ 사업비 지원방법

- 선정된 업체별 총융자액은 3개년에 걸쳐 분할지원을 원칙으로 함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단, '96사업대상자는 4개년에 걸쳐 분할 지원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30%, 4년차 20%)
- 농림부장관은 해당년도 융자액의 미집행, 집행된 융자액의 타용도 사용, 의무사항 불이행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사후관리지침

◦ 사후관리 기관

- 농 립 부 : 사업총괄, 소요예산 확보 및 자금배정
- 축산기술연구소 : 세부사업 추진계획 승인, 종돈개량 체계 확립등 기술적인 사항
- 도 지 사 : 소요예산신청, 사업진도확인, 각종 인·허가등 행정적인 사항

○ 사후관리 기간

- 사업대상자 확정일부터 사업완료후 5년간
단, 도지사는 사업대상자 확정부터 사업완료시까지

○ 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승인

- 선정된 사업대상자(GP농장을 포함하며 이하같음)는 사업장소, 사업량, 사업비 및 융자금 소요시기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산기술 연구소(중축개발부)에 승인 요청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당초 제출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와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전문 종돈업체의 의무사항이행 등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그룹별 및 GGP농장, GP농장별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승인
-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한 축산기술연구소장은 GGP농장 및 GP농장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도지사와 장관에게 승인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1부를 송부
- 기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상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소요예산의 신청·확보 및 배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 2년차부터('96사업대상자는 사업 3년차부터)의 월별, 분기별 소요예산을 전년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요예산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단,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사업 1년차 소요예산은 세부사업추진계획서에 의거 직접 예산에 반영함
-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승인 받은 사업대상자로서 '97사업대상자는 부지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사업 1년차분의 분기별 소요예산과 '96사업대상자는 사업 2년차분의 분기별 소요예산 배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사실확인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농림부장관에 소요예산 배정 요구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조치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추진실적, 애로사항등이 포함된 “전문종돈업육성 사업 추진실적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상기 서식에 의거 매분기 실적을 익월말까지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매분기 추진실적을 현지 확인하고 사업진도를 사업대상자 및 자금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원활한 융자금 대출이 되도록 조치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사업완료후 5년동안 년1회이상 사업대상 그룹별로 당초 승인된 세부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종돈개량 및 질병방역 체계확립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자 점검결과 지원자금의 타용도 사용, 의무사항 불이행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자금배정 중단 또는 취소하고 기 지원자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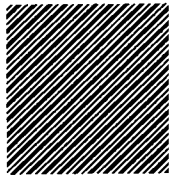
(2) 기타사항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 대표 및 도·시군 축산과장, 축협중앙회, 종돈개량 전문가 등으로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 동 협의회는 추진방향 설정, 애로사항 해소, 종돈개량 촉진, 질병방역 등을 위한 방안등을 협의결정하여 사업대상업체 지도 등 필요한 조치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세부 사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우리부와 협의후 시행

나. 보고

- '98사업대상자 추천(시·도지사 → 장관) : '97. 3월말까지
- '98사업대상자 심사결과보고(가축개량총괄기관 → 장관) : '97. 5월까지
- 사업추진실적(사업대상자→시·도지사, 가축개량총괄기관) :매분기 익월말까지

V. 기 타 사 업



여 백

85 수의기술교육관 건립(공공)

※ 이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 입니다.

1. 목 적

- 전문조직의 선진기술교육을 통한 기술수준향상으로 외래성 질병검색 및 불량 수입품의 수입규제 강화로 국민보건 위해방지
- 수의사의 윤리교육강화로 사명감 및 직업의식 고취

2.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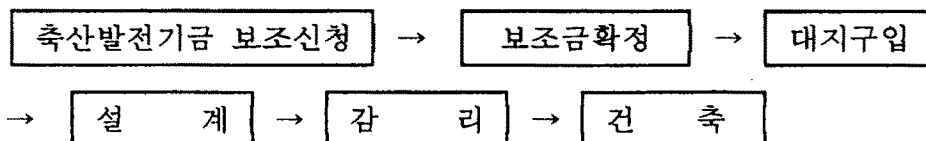
- 국민보건위생 보호차원에서 수의사의 자질향상 필요성 대두
- 따라서 수의사법 개정('94. 3. 24)시 수의사는 법정연수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문화(년 10시간)
- '98년부터 수의과대학 교육연한 연장(현행 4년 → 6년)에 따른 기존수의사 자질향상 필요
-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축산물요구로 유해잔류물질검사등 정밀검사 강화에 따른 선진기술 습득필요

3. 근거법령

- 수의사법 제34조

4. 사업추진계획

- (1) 사업기간 : '97. 1 ~ 12월
- (2) 사업수행주체 :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 (3) 사업집행절차



5. 지원규모 및 조건

(1)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총 계	대지구입비 (자 담)	건 축 비			
			보 조	자 담	소계	
수의사기술교육센터	2,300	1,100	600	600	1,200	

※ 지원조건 : 건축비의 50% 보조(축산발전 기금)